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 賦課體系 改善方案 研究

-市·郡 統合地域을 中心으로-

金 基 玉
魯 仁 喆
柳 美 女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1977년 職場醫療保險제도의 도입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의 醫療保險制度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989년 全國民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勤勞者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職場醫療保險과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 醫療保險制度가 財政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農漁民과 都市自營者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地域醫療保險組合 중에는 정부의 支援에도 불구하고 財政적으로 어려운 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地域醫療保險의 財政安定이 우리나라 醫療保險制度의 安定的인 定着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市·郡間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33個 市와 32個 郡을 33個 市로 統合하는 행정구역 改編方針을 정하고 199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行政區域의 改編에 따라 현재 市와 郡組合으로 운영되는 地域醫療保險組合도 統合되어 하나의 統合된 市醫療保險組合이 될 것이므로, 市와 郡組合에서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던 保險料 賦課體系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調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政策課題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本 研究는 1995년부터 統合되는 市·郡地域醫療保險組合을 中心으로, 地域醫療保險의 保險財政에 큰 영향을 미치는 保險料賦課體系의 合理的인 改善方案 모색을 위해 試圖되었다.

그 동안 醫療保險에 관한 많은 研究가 있었지만, 被保險對象者들에 대한 精確한 所得과악의 어려움으로 복잡한 保險料 賦課體系를 적용하고 있는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賦課體系에 관한 深層의인 研究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統合되는 市·郡地域醫療保險組合을 중심으로 하여 保險料 賦課體系의 改善方案을 제시한 本 研究의 結果는 이 分野의 政策

樹立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關聯分野 學者들과 政策擔當官들의 一讀을 권하고 싶다.

本 研究는 本 研究院의 金基玉 責任研究員, 魯仁喆 研究委員, 그리고 柳美女 研究員에 의해 完成되었다.

한편, 研究陣들은 報告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保健福祉部 關係官, 자료수집 및 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地域醫療保險組合 및 醫療保險聯合會 組合電算課 담당자들과 本院 申昌雨 電算員에게 感謝하며, 原稿를 읽고 귀중한 助言을 해 준 本院의 曹在國 研究委員과 李忠燮 責任研究員에게도 謝意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著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本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 長 延 河 清

目 次

第 1 章 序 論	15
第 1 節 研究의 必要性	15
第 2 節 研究의 目的 및 內容	17
第 2 章 現行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賦課體系	19
第 1 節 醫療保險의 保險料	19
1. 社會保險의 保險料	19
2. 醫療保險의 保險料特性	21
第 2 節 保險料 賦課對象	22
1.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 賦課原則	22
2. 保險料 賦課對象	23
第 3 節 保險料 賦課方式	25
1. 總保險料 賦課目標額	25
2. 基本保險料와 能力比例保險料의 配分	27
3. 保險料의 等級調整	34
4. 保險料의 減免	34
5. 保險料의 納付	35
第 3 章 統合對象 醫療保險組合의 現況	36
第 1 節 一般現況	36
1. 適用人口現況	36
2. 組合規模	38

第 2 節 財政現況	41
第 3 節 保險料 賦課現況	44
1. 賦課要素別 保險料比率	44
2. 基本保險料의 分布	47
3. 能力比例保險料	48
4. 世帶當保險料	54
第 4 節 保險料 移轉效果 分析	59
第 4 章 統合時 保險料賦課體系 改善方案	63
第 1 節 基本保險料 改善方案	64
1. 基本保險料 廢止方案	64
2. 世帶當保險料 廢止方案	71
3. 被保險者當保險料 廢止方案	73
4. 基本保險料 改善方案에 따른 保險料移轉效果	76
第 2 節 同一 등급데이블의 適用方案	82
1. 市組合의 保險料가 郡組合보다 크게 높은 地域(남원시·군)	83
2. 市組合의 保險料와 郡組合의 保險料가 비슷한 地域(공주시·군)	104
3. 郡組合의 保險料가 市組合보다 높은 地域 (삼척시·군)	124
第 5 章 要約 및 結論	142
參考文獻	155
附表 및 附圖	157
附錄	197

表 目 次

<表 2-1> 所得 및 財産資料 把握率과 標準配分率	27
<表 2-2> 所得比例保險料 配分額 決定時의 加重值	29
<表 2-3> 申告所得 現況	30
<表 2-4> 其他所得의 等級區間 및 等級別 保險料(옥구군, 남원군)	33
<表 3-1> 統合對象 市·郡 地域醫療保險組合	37
<表 3-2> 統合對象地域의 適用人口 現況	38
<表 3-3> 統合對象 地域醫療保險組合의 適用人口規模別 現況:1993 ...	39
<表 3-4> 統合對象 市組合의 世帶數 및 被保險者數 現況	39
<表 3-5> 統合對象 郡組合의 世帶數 및 被保險者數 現況	40
<表 3-6> 새로운 統合市組合의 世帶數 및 被保險者數	40
<表 3-7> 統合前·後 組合의 規模	41
<表 3-8> 統合對象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財政收支 現況:1991-1994 ..	42
<表 3-9> 統合對象組合의 財政赤字 現況	43
<表 3-10> 賦課要素別 保險料比率 : 1994	44
<表 3-11>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賦課資料別 保有 比率:1994.6.現在 ..	46
<表 3-12> 所得·財産의 課稅資料 保有世帶 比率	46
<表 3-13> 統合對象 市地域組合의 基本保險料 現況	47
<表 3-14> 統合對象 郡地域組合의 基本保險料 現況	48
<表 3-15> 賦課資料別 評價率	50
<表 3-16>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 保險料額 算定(예시)	52
<表 3-17> 所得比例保險料의 最上·下等級 保險料 分布(시/군)	54
<表 3-18> 財産比例保險料의 最上·下等級 保險料 分布(시/군)	54
<表 3-19> 月平均 保險料크기별 組合 分布	55
<表 3-20> 組合別 保險料 比較	57
<表 3-21> 階層別 保險料 및 保險給與	60

<表 4-1> 基本保險料 廢止時 保險料減少世帶:대안 1(남원시)	66
<表 4-2> 基本保險料 廢止時 保險料增加世帶:대안 1(남원시)	66
<表 4-3> 基本保險料 廢止時 保險料 變動:대안 2(남원시)	68
<表 4-4> 被保險者當 保險料廢止案(1)(남원시)	74
<表 4-5> 世帶員數別 月保險料(남원시)	75
<表 4-6> 被保險者當 保險料 廢止案(2)(남원시)	75
<表 4-7> 階層別 保險料 및 保險給與:대안 1	76
<表 4-8> 階層別 保險料 및 保險給與:대안 2	78
<表 4-9> 保險料 移轉率 變化	80
<表 4-10> 能力比例保險料의 適用世帶 比率(남원시)	85
<表 4-11> 所得 및 財産資料 現況(남원시·군):1994년 6월 말 현재	86
<表 4-12>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金額 및 保險料(남원시·군)	88
<表 4-13> 2가지 所得資料의 동시보유세대(남원군)	89
<表 4-14>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金額 및 保險料(남원시·군)	90
<表 4-15> 現行 남원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增減額(1)	93
<表 4-16> 現行 남원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減少 세대 분포(1)	94
<表 4-17> 現行 남원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增加 세대 분포(1)	95
<表 4-18> 現行 남원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增減額(2)	96
<表 4-19> 現行 남원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減少 세대 분포(2)	96
<表 4-20> 現行 남원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增加 세대 분포(2)	97
<表 4-21> 現行 남원시保險料 賦課基準 및 調整評價率 적용시 남원 郡組合 保險料增減額	99
<表 4-22> 現行 남원시保險料 賦課基準 및 調整評價率 적용시 남원 郡조합 保險料 減少 세대 분포	99

<表 4-23> 現行 남원시保險料 賦課基準 및 調整評價率 적용시 남원 군조합 保險料 增加 세대 분포	100
<表 4-24> 現行 保險料와의 差額別 保險料增減額(남원군)	100
<表 4-25> 同一賦課基準 적용시 남원시·군의 保險料變動	103
<表 4-26> 同一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減少世帶(남원시·군)	103
<表 4-27> 同一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크기별 保險料增加世帶	104
<表 4-28> 공주시·군 地域醫療保險組合 所得 및 財産資料 現況	107
<表 4-29> 所得·財産 適用世帶 比率(공주시·군):1994년 6월말기준	108
<表 4-30>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金額 및 保險料(공주시·군) .	109
<表 4-31>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金額 및 保險料(공주시·군) .	110
<表 4-32> 現行 공주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공주군조합 保險料增減額(1)	113
<表 4-33> 現行 공주시조합의 賦課基準 적용시 공주군조합 保險料 減少 世帶分布(1)	114
<表 4-34> 現行 공주시조합의 賦課基準 적용시 공주군조합 保險料 增加 世帶分布(1)	114
<表 4-35> 現行 공주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공주군조합 保險料 增減額(2)	115
<表 4-36> 現行 공주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공주군조합 保險料 減少 世帶分布(2)	116
<表 4-37> 現行 공주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공주군조합 保險料 增加 世帶分布(2)	116
<表 4-38>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金額 및 保險料(통합공주시)	118
<表 4-39>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금액 및 保險料(통합공주시)	119
<表 4-40> 同一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크기별 保險料減少世帶 :제1안(공주시·군)	120
<表 4-41> 同一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크기별 保險料增加世帶 :제1안(공주시·군)	121
<表 4-42> 同一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크기별 保險料減少世帶 :2안(공주시·군)	123

<表 4-43> 同一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크기별 保險料增加世帶 :제2안(공주시·군)	123
<表 4-44> 所得 및 財産資料 現況(삼척시·군)	126
<表 4-45> 所得·財産 適用世帶 比率(삼척시·군)(1994.6월말기준) ...	127
<表 4-46>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金額 및 保險料(삼척시·군) ...	127
<表 4-47>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金額 및 保險料(삼척시·군) ...	128
<表 4-48> 其他所得 等級 및 區間別 保險料(삼척시·군)	129
<表 4-49> 現行 삼척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군조합 保險料 增減額	133
<表 4-50> 現行 삼척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군조합 保險料 減少 世帶分布	133
<表 4-51> 現行 삼척시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군조합 保險料 增加 世帶分布	134
<表 4-52> 現行 삼척군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시조합 保險料 增減額	135
<表 4-53> 現行 삼척군조합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시조합 保險料 減少 世帶分布	135
<表 4-54> 現行 삼척군조합의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시조합 保險料 增加 世帶分布	136
<表 4-55>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금액 및 保險料(통합삼척시)	137
<表 4-56> 同一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크기별 保險料減少世帶 :제1안(삼척시·군)	139
<表 4-57> 同一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크기별 保險料增加世帶 :제1안(삼척시·군)	139
<表 4-58> 同一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크기별 保險料減少世帶 :제2안(삼척시·군)	140
<表 4-59> 同一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크기별 保險料增加世帶 :제2안(삼척시·군)	140

圖 目 次

<圖 2-1> 保險料 配分 基本模型	26
<圖 4-1> 基本保險料 廢止時 保險料 增減世帶比率(대안1)(남원시)	68
<圖 4-2> 基本保險料 廢止時 保險料 增減世帶比率(대안2)(남원시)	70
<圖 4-3> 世帶當 保險料 廢止時 保險料 增減世帶比率(남원시)	72
<圖 4-4> 所得크기별 世帶比率(남원시·군)	91
<圖 4-5> 財産크기별 世帶比率(남원시·군)	91
<圖 4-6> 世帶當 保險料(남원시·군)	92
<圖 4-7> 統合前·後 所得等級區間 및 保險料(남원시)	102
<圖 4-8> 統合前·後 財産等級區間 및 保險料(남원시)	102
<圖 4-9> 所得크기별 世帶比率(공주시·군)	111
<圖 4-10> 財産크기별 世帶比率(공주시·군)	112
<圖 4-11> 世帶當 保險料(공주시·군)	112
<圖 4-12> 統合前·後 所得等級區間 및 保險料(공주시·군)	121
<圖 4-13> 統合前·後 財産等級區間 및 保險料(공주시·군)	122
<圖 4-14> 所得크기별 世帶比率(삼척시·군)	130
<圖 4-15> 財産크기별 世帶比率(삼척시·군)	131
<圖 4-16> 世帶當 保險料(삼척시·군)	131
<圖 4-17> 統合前·後 所得等級區間 및 保險料(삼척시·군)	138
<圖 4-18> 統合前·後 財産等級區間 및 保險料(삼척시·군)	138

附表 및 附圖

<附表 I -1> 被保險者 現況 : 1993年 12月 31日 現在	161
<附表 I -2> 基本保險料 現況 : 1994年 7月 末 現在	165
<附表 I -3> 世帶當 月保險料	166
<附表 I -4> 統合對象地域의 賦課要素別 評價率	167
<附表 I -5> 賦課要素別 保險料 賦課 比率 現況	169
<附表 I -6> 1等級 및 30等級의 等級區間別 保險料:1994年 7月 末	189
<附表 II -1> 基本保險料 廢止 및 能力比例保險料 加算(공주시)	190
<附表 II -2> 基本保險料 廢止 및 能力比例保險料 加算(공주군)	191
<附表 II -3> 世帶當保險料 廢止 및 能力比例保險料 加算(남원시)	191
<附表 II -4> 世帶當保險料 廢止 및 能力比例保險料 加算(공주시)	192
<附表 II -5> 世帶當保險料 廢止 및 能力比例保險料 加算(공주군)	192
<附表 II -6> 被保險者當 保險料 廢止案(1) (공주시)	193
<附表 II -7> 被保險者當 保險料 廢止案(1) (공주군)	194
<附表 II -8> 被保險者當 保險料廢止案(2) (공주시)	195
<附表 II -9> 被保險者當 保險料廢止案(2) (삼척시)	196
<附表 II -10> 被保險者當 保險料廢止案(2) (공주군)	196
<附表 III -1> 世帶員數別 保險料(공주시)	197
<附表 III -2> 世帶員數別 保險料(공주군)	197
<附表 III -3> 世帶員數別 保險料(남원군)	198
<附圖 1-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남원시·남원군)	171
<附圖 1-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남원시·남원군)	171
<附圖 2-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상주시·상주군)	172
<附圖 2-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상주시·상주군)	172

<附圖 3-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안동시·안동군)	173
<附圖 3-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안동시·안동군)	173
<附圖 4-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제천시·제천군)	174
<附圖 4-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제천시·제천군)	174
<附圖 5-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원주시·원주군)	175
<附圖 5-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원주시·원주군)	175
<附圖 6-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정주시·정읍군)	176
<附圖 6-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정주시·정읍군)	176
<附圖 7-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김제시·김제군)	177
<附圖 7-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김제시·김제군)	177
<附圖 8-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군산시·옥구군)	178
<附圖 8-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군산시·옥구군)	178
<附圖 9-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공주시·공주군)	179
<附圖 9-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공주시·공주군)	179
<附圖 10-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미금시·남양주군)	180
<附圖 10-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미금시·남양주군)	180
<附圖 11-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점촌시·문경군)	181
<附圖 11-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점촌시·문경군)	181
<附圖 12-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충주시·충원군)	182
<附圖 12-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충주시·충원군)	182
<附圖 13-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강릉시·명주군)	183
<附圖 13-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강릉시·명주군)	183
<附圖 14-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나주시·나주군)	184
<附圖 14-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나주시·나주군)	184
<附圖 15-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진주시·진양군)	185
<附圖 15-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진주시·진양군)	185

- <附圖 16-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삼척시·삼척군)186
- <附圖 16-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삼척시·삼척군)186
- <附圖 17-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마산시·창원군)187
- <附圖 17-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마산시·창원군)187
- <附圖 18-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포항시·영일군)188
- <附圖 18-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포항시·영일군)188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必要性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의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醫療保險制度는 점차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公敎醫療保險을 실시하고, 1981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연가입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醫療保險의 受惠대상자를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醫療保險을 社會保險 방식을 根幹으로 적용이 용이한 근로자 계층부터 우선 실시해 온 관계로 상대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農漁民이나 도시 자영자 등에 대한 醫療保險의 확대실시가 커다란 당면과제였으나, 마침내 1988년 1월 전국의 134個郡에 農漁村地域醫療保險이 실시되었고, 이어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醫療保險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醫療保險이 도입된 지 12년만인 결코 길지 않은 역사 속에 全國民醫療保險이 달성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醫療保險制度는 보험의 운영자인 保險者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職場醫療保險,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 醫療保險과 地域醫療保險으로 나눌 수 있다. 職場醫療保險은 1977년 실시 초기에는 單位組合으로 조직된 單獨醫療保險組合 494개,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共同醫療保險組合 19개로 총 513개 의료보험조합이 설립 운영되었으나,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소규모조합의 統廢합 결과 1988년 이후 71개 단독 조합과 83개 공동조합으로 총 154개 직장의료보험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 醫療保險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단일보험자로서 전국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1989년 全國民醫療保險이 실시될 당시에는 행정구역인 市·郡단위로 설립되어, 117

개 도시지역조합과 137개 농어촌 조합의 총 254개 組合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1990년 1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0개 시·군(1시 9군)이 22개 시·군(12시 10군)으로 분립되고 1992년 1개군(고양군)이 시(고양시)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1989년 254개 조합이었던 지역의료보험조합도 1994년 현재 130개 都市醫療保險組合과 136개 農漁村醫療保險組合으로 12개 조합이 증가하여 총 266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행정구역상 문지역이 市로 승격함에 따라 새로운 市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수도 증가되어 왔다.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존의 郡조합으로부터 새로운 市조합이 분립인가 되어 독립적인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고 업무를 개시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의 집중 방지, 市·郡間의 격차 해소 등의 이유로 전국 33개시· 32개군을 33개시로 統合한다는 행정구역 개편방침을 정하고 1995년 1월부터 施行에 들어가게 되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被保險者의 자격관리를 근무하는 사업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職場醫療保險과 전국적으로 단일조직이 管理하는 公敎醫療保險의 대상자들은 現行 제도의 적용방식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地域醫療保險對象者 즉, 비임금소득자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市·郡·區 지역조합이 관할하게 되어 있으므로(醫療保險法 제12조), 행정구역 개편으로 2개의 市·郡이 統合되어 하나의 統合市가 되면, 현재 각각 市와 郡組合에서 관할하던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는 당연히 통합되는 하나의 統合市醫療保險組合의 適用對象者가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保險料의 賦課이다. 즉,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의료보험의 保險料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保險料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역실정에 알맞는 부과기준을 정해 주민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¹⁾ 따라서, 市의료보험조합과 郡의료보험조합은 保險料 賦課要素는 동일하나,²⁾ 保險料 부과대상이 되는 所得과 財

産의 종류 및 평가율, 능력비례 保險料의 등급구간금액 및 등급간 保險料, 부과방식 등의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시·군 통합에 의해 統合市 醫療保險組合이 설립되면 지금까지 시조합과 군조합에서 각기 달리 적용하여 오던 保險料 賦課體系는 統合市의 기준에 맞추어 새로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第 2 節 研究의 目的 및 內容

農漁民과 自營者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地域醫療保險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保險財政의 안정이다. 1989년 지역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된 이후 1990년에는 전국 지역의료보험조합 254개 가운데 136개 의료보험조합이 赤字를 기록하였으나,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과 조합의 업무가 정착됨에 따라 赤字組合數는 1991년 1개, 1992년 7개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3년 말 현재 赤字組合數는 다시 15개로 증가하였으며 赤字額도 22억원에 달하고 있다.³⁾ 이러한 추세는 1994년 醫療保險酬價引上에 따라 한층 가속화될 전망으로 지역의료보험의 財政安定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의료보험의 財政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保險料收入과 保險給與費를 들 수 있다. 1990년 이후 수행된 몇가지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에 관한 研究(노인철 외, 1991; 권순원 외, 1991; 김한중 외, 1992)에서는 財政赤字의 요인으로 保險給與費의 증가, 낮게 설계된 保險料 수준, 保險料 부과시 기초자료미비에 따른 가구당 불평등 부과 문제, 보험료산출방식의 문제, 保險料 부과정수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의료보험의 특수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

1) 보건사회부, 『1990년도 地域醫療保險 保險料 賦課指針』, 1990. 6.

2) 현재 地域醫療保險 保險料의 부과요소는 能力比例保險料(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와 基本保險料(세대당 기본보험료와 피보험자당 기본보험료)로構成되어 있다.

3) 의료보험연합회, 『'93 地域醫療保險組合 決算現況』, 1994. 9.

해서는 합리적인 保險料 賦課徵收體系의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農漁村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일원으로서, 1995년부터 통합되는 65개 市·郡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保險料 부과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되었다. 따라서, 地域醫療保險 전체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통합되는 일부지역조합의 保險財政 및 統合時 제기되는 保險料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第2章에서는 現行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賦課體系와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第3章에서는 통합대상이 되는 65개 市·郡조합의 保險財政 및 保險料 賦課現況 및 保險料 移轉效果를 분석하였으며, 第4章에서는 統合時 적용할 수 있는 基本保險料의 改善方案과 保險料 賦課의 代案에 대해 6개 市·郡지역의료보험조합의 現行 保險料 부과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保險料賦課資料를 이용하는 분석의 경우에는 現行 保險料 賦課時 內在되어 있는 所得과악의 불완전성, 保險料 부과자료의 미비 및 신고자료 신뢰성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保險外的인 制約要因들은 조세제도의 정비등에 따라 점차 해결되어질 문제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현재 조합이 가지고 있는 부과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第 2 章 現行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賦課體系

第 1 節 醫療保險의 保險料

1. 社會保險의 保險料

원래 保險制度는 우발적 사고에 따르는 경제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같은 목적을 가진 다수의 經濟主體가 모여서, 大數의 法則을⁴⁾ 이용하여 일정기간내 發生하는 事故 確率, 약정금액의 지불에 필요한 總資力 등을 예측하고, 그 금액을 個個의 주체가 위험률에 맞추어 공정하게 분담하고 공동의 備蓄金을 만들어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共同의 기금에서 지불함으로써, 個個의 경제주체는 비교적 소액의 釀出로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경제적 부담의 제거 및 輕減을 꾀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보험제도라는 틀 안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공동의 備蓄金으로 부담 또는 釀出하는 금액이 일반적인 의미의 保險料이다.

일반적으로 私保險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따라 保險料가 부과된다. 첫째, 각 가입자가 拂入할 保險料는 그가 受取할 보험금의 수학적 기대치에 해당하는 공평한 계산에 따라 선택에 의해 정해지며(給付反對給付均等의 원리), 둘째, 사고발생의 확률에 따라 保險料를 공정하게 부담하며(保險技術 公平의 원칙), 셋째, 釀出된 保險料의 총액은 전체 지불에 필요한 액수에 맞게 부과(收支相等의 원칙)하도록 하고 있다. 私保險의 保險料는 이와 같은 3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산출된 위험부담에 맞는 「純 保險料」에 영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附加保險料」를 加算하여, 예컨대

4) 大數의 法則(The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하면 어떤 危險에 대하여 그 관찰대상을 늘리면 늘릴수록 혹은 관찰도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보다 정확히 위험(risk)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함.

「營業保險料」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保險料는 공동비축을 위한 分擔釀出金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법률적인 관계에서 보면 保險料는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雙務契約에서 보험자가 보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위험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수라고 하겠다.

社會保險은 보험제도가 갖는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해서 사회보장의 실현을 도모하는 制度이다. 따라서 社會保險의 保險料는 사회보험의 특수성에 따르는 獨自의 성격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保險料와 공통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社會保險의 保險料가 가지는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도 일반보험 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의 제거 또는 輕減을 위해 보험의 방법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保險料도 경제적인 의미로는 공동비축을 위한 釀出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社會保險의 保險料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報酬가 아니라, 法的으로 保險者의 징수금으로서 이것을 擔保하기 위해 보험자에게는 保險料의 강제징수권이 부여되고 있는 이외에도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한 징수방법에 의해 收納의 확보를 꾀하고 있다.

둘째, 社會保險의 保險料는 원칙적으로 所得 또는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되며 給與는 균등하다. 물론 총체로서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액이 부과되며, 소요액의 산정에는 위험률 기타 보험기술적 요소가 감안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개개인에 부과되는 保險料에는 「給付反對給付均等의 원리」와 「保險技術公平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반환하지 않는 寄與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에서는 釀出은 원칙적으로 부담능력에 맞게 부과되며 급여는 균일하게 행하여지므로, 사회보장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所得再分配效果가 실현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社會保險의 保險料는 所得 또는 부담능력에 맞추어 賦課되지만

표준적인 受益의 정도와 관련하여 일정액의 最高限度額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保險料의 감면조치가 講究되고 있다. 따라서 保險料에 의해서 필요한 급부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부담금, 보조금, 貸付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또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管理運營費에 대한 국고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있어서 保險料는 保險財政의 수입면에 있어 大宗을 이루고는 있으나 私保險의 保險料가 보험경제의 財源에서 유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2. 醫療保險의 保險料特性

醫療保險은 疾病이라고 하는 위험에 대처하여 생활기반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형성하고 保險料 등으로 基金을 조성하여 가입자 또는 그 가족이 건강상 위험을 당하게 된 때, 의료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사회적 제도라 할 수 있다.⁵⁾

이처럼 질병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醫療保險制度에도 사회보험 방식과 私保險(민간보험)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醫療保險을 社會保險方式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醫療保險에의 가입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상 기준을 충족하는 적용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給與水準도 私保險에서의 기여비례 보상이 아니라 모든 피보험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균등급여이다.

의료보험에서의 保險料는 의료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리운영비 등) 중 國庫負擔金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며,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

5) 보건사회부, 『醫療保險 保險料賦課 및 給與의 適正化方案 研究』, 한림대학사회학연구소편, 1987, p.4.

에서 保險料를 부과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사안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의료보험은 질병·분만 등의 보험사고에 대한 급여가 비교적 단기간에 실시되므로, 長期保險이 아니라 短期保險이며 실지 부과에 있어서도 적립방식이 아니고 매년도별로 소요액을 추정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賦課한다. 그러나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현금지출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액의 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

둘째, 社會保險의 형식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被保險者에게 보험선택의 자유가 없고, 따라서 保險料 부담도 강제적이므로 被保險者의 保險料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부과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保險料 負擔이 被保險者의 家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명백하지 않으며, 특히 被保險對象者들의 所得과악이 곤란한 지역의료보험의 경우는 합리적인 保險料의 부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第 2 節 保險料 賦課對象

1.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 賦課原則

職場 및 公·敎醫療保險의 保險料부과가 標準報酬月額이라는 객관적 부담능력에 따른 保險料의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료보험은 設立當初부터 피보험자의 정확한 所得과악이 어렵고, 더욱이 所得이 낮은 低所得世帶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등 保險料賦課에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소요되는 保險給與費를 충당하기 위해 복잡한 保險料賦課方法을 택하고 있다. 즉, 지역의료보험의 保險料부과에서는 應益原則에 입각한 基本保險料와 應能原則에 따른 能力比例保險料를 동시에 賦課하고 있다.

社會保險의 保險料는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라 賦課하고 給與는 균등

하게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에서 應能原則만에 입각한 保險料의 賦課·徵收는 所得과악이 미비하고 부정확한 現時點에서는 所得 및 財産자료가 노출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保險料가 부과되는 등 保險料 부담의 불공평을 확대시킨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受益發生確率이 개개인에게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應益原則의 부가적인 채택은 현재와 같은 지역실정에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진다.

한편, 지역의료보험의 受益者는 피보험자 개인이므로 피보험자가 많은 세대가 피보험자가 적은 세대보다 應益負擔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은 合理的이라 할 수 있다. 단 被保險者當 保險料가 과중하게 부과될 경우, 所得이 적음에도 被保險者數가 많은 세대에 대해 과다한 保險料가 부과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것을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세대당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 세대 구성원수의 偏差가 적어지면 세대당 保險料는 그 존재이유가 없어지며, 또한 所得자료가 정확히 밝혀지면 基本保險料를 부과할 근거도 없어지므로 基本保險料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⁶⁾

2. 保險料 賦課對象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는 (世帶, 被保險者數, 所得, 財産)에 대해 賦課하고 있다. 이 중 세대 및 被保險者數는 保險料 부과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이므로 被保險者와 組合間의 마찰의 소지가 적다. 그러므로 지역의료보험에서 세대 및 피보험자에 대해 부과하는 基本保險料는, 이 부분에 대한 부과가 他保險制度와 비교할 때 衡平性, 賦課의 妥當性 등의 정책적 문제는 있지만, 조합의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能力比例保險料 부분에 비하여 주민과의 마찰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基本保險料 중 被保險者當 保險料는 被保險者數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低所得者이면서

6) 따라서 본 研究에서는 基本保險料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世帶當 保險料를 폐지하는 방안, 被保險者當 保險料를 폐지하는 방안, 기본보험료 전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檢討해 보았다.

被保險者が 많이 속한 세대의 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다.⁷⁾

被保險者の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能力比例保險料는 所得과 財産에 대해 부과하며, 課稅資料에 의해 파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課稅資料에 의해 파악되는 所得은 國稅인 종합所得稅資料와 內務部소관의 地方稅인 農地稅, 토지·건물분 재산세, 자동차세 자료가 있다. 所得稅法上 綜合所得에는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利子所得,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事業所得, 勤勞所得이 포함된다(소득세법 제4조). 地方稅인 농지세의 대상이 되는 農地所得은 農地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所得으로, 收入金額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所得이다(지방세법 제197조).

그러나, 課稅資料에 의해 파악되는 부과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事業所得에 대한 課稅資料가 실제 所得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의료보험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종사자수 5인 미만 自營業者の 綜合所得 자료는 대부분이 課稅所得을 推定한 事業所得 자료라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실지 所得은 과세자료와 큰 차이가 나며, 과세자료상 所得은 실지 所得보다 대단히 낮게 나타나게 된다.⁸⁾ 예를 들어 상공자영업자의 課稅資料는 조사된 실지소득보다 약 4배, 農業自營業者の 경우는 약 3배의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김영모, 1988)도 있다. 따라서 課稅資料를 근거로 부과되는 保險料 역시 정확한 부담능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農地稅 臺帳에 근거한 農地所得 把握이 거의 불가능하다. 농어민

7) 일본의 國民健康保險에 있어서는 低所得世帯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당보험료 및 세대당보험료액을 減免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社會保險實務研究所, 1977 : 586~589).

8) 사업자는 전년도 收入金額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복식장부,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경우는 간이장부, 1억5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日記帳 형태로 장부를 작성하여, 증빙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 매년 事業所得을 관할세무서에 申告하게 되어 있다. 地域醫療保險適用 대상자인 自營業者は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자로 기장정리를 하지 않거나 과세특례자이다. 사업자가 帳簿를 첨부하지 않고 申告하는 경우는 推計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데, 현실적으로 실지 賣出額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게 된다.

의 所得자료의 파악은 地方稅인 농지세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農地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 대해 農地稅臺帳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이 매년 인상되어(1994년 현재는 연 560만원) 농지세를 납부하는 世帶가 줄어들고 있으며, 農地稅 대장의 작성의미도 쇠퇴하고 있다. 따라서 醫療保險組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세 부과자료는 극히 적으며, 실무적으로는 조합에서 農地所得을 나름대로 推計해서 사용하고 있는 등 정확한 所得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賦課資料로 사용하는 稅務資料와 현실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활용하고 있는 課稅資料로는 國稅資料인 綜合所得세 자료와 地方稅資料인 農地稅, 財産稅(土地, 建物) 資料가 있다. 綜合所得은 매년 6월이 되어야 그 前年度의 所得이 확정되고, 의료보험조합에서는 그 다음해의 보험료부과에 이 課稅資料를 반영하게 되므로, 保險料 賦課時의 현실과 課稅資料水準과는 시간적으로 약 2년간의 차이가 있다.

第 3 節 保險料 賦課方式

1. 總保險料 賦課目標額

地域醫療保險組合은 매년 保險料를 부과하기 위해 總保險料 賦課目標額을 산정하고, 總保險料 賦課目標額이 정해지면 이를 世帶 및 被保險者에 대한 基本保險料와 所得, 財産 및 자동차에 대한 能力比例保險料로 배분한다.

總保險料 賦課額은 組合이 매년 의료기관분포, 受診率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보험급여비 지출예상액과 保險料 국고부담금, 豫備費 등을 추계하여 결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等式에 의해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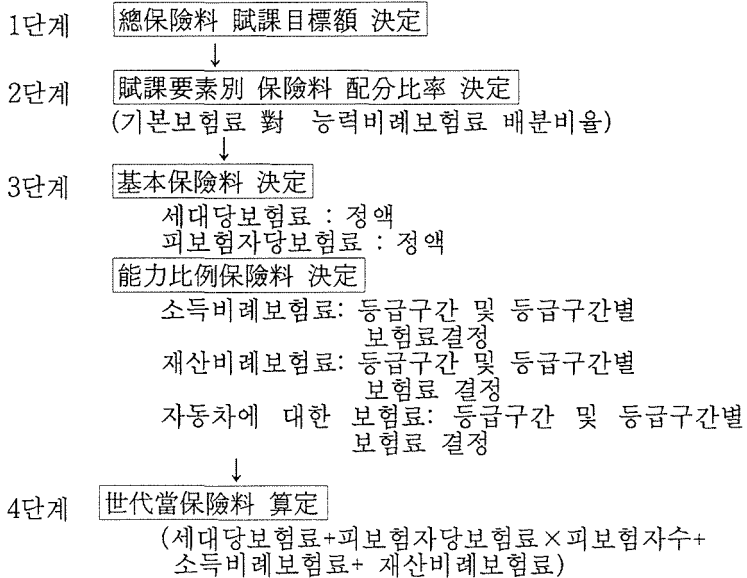
총보험료 부과목표액

$$= \frac{[(\text{법정급여비} + \text{부가급여비}) - \text{보험료 국고부담금}]}{\text{정수율}} + \text{준비금적립금} + \text{예비비}$$

위 等式⁹⁾에서 年間 保險給與費는 연간 법정급여비와 연간 부가급여비를 합한 금액이며, 연간 법정급여비는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에 被保險者數를 곱하고, 연간 부가급여비는 1인당 장제비에 사망률, 被保險者數를 곱하여서 구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2-1>과 같다.

<圖 2-1> 保險料 配分 基本模型



9) 이 때 管理運營費는 전액 國庫支援되므로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保險料 國庫負擔金'은 국고부담금 중 保險料收入을 지원하는 데 한정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2. 基本保險料와 能力比例保險料의 配分

基本保險料와 能力比例保險料는 所得과 財産의 파악률(所得이나 財産 資料가 있는 세대 비율)에 따라 配分率이 결정되는데, 이 配分率은 지역 주민의 所得이나 財産水準에 따라 조합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表 2-1 참조).

<表 2-1> 所得 및 財産資料 파악률과 標準配分率

(單位 : %)

소득·재산파악율 ¹⁾		50이하	60	70	80	90	90초과
배 분 율	계	100	100	100	100	100	100
	능력비례보험료	40	50	60	70	80	90
	기본보험료	60	50	40	30	20	10

註: 1) 소득· 재산의 파악율은 전체 세대수 중 소득이나 재산자료가 1개 이상 있는 세대수의 비율을 말함.

資料: 보건사회부, 『1990년도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부과지침』, 1990.

그리고 保險料 賦課時 조합에서 파악할 수 있는 所得과 財産의 부과 資料가 많아질수록 能力比例保險料의 배분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 基本保險料

基本保險料는 배분총액 중 75%는 被保險者當保險料로, 25%는 世帶當 保險料로 배분하여 被保險者當保險料 總額이 世帶當保險料 총액의 3배 정도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는 被保險者當保險料 배분총액을 전체 被保險者數로 나누어 산정하고, 世帶當保險料는 세대당 배분총액을 전체 적용세대수로 나누어 定額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피보험

자 1인당 보험료 및 세대당 保險料는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能力比例保險料

能力比例保險料는 피보험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부과하는 應能原則에 따라 부과되며, 所得比例保險料와 財産比例保險料,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能力比例保險料의 부과 대상이 되는 세대별 所得 및 財産은 조합원 및 피보험자에게 속한 全所得 및 財産으로 하며, 세대원 중 피보험자가 아닌 조합원의 所得 및 財産이 있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일부를 賦課對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1) 所得 및 財産比例保險料의 配分

能力比例保險料 중 자동차에 대한 부과액을 제외하고 저소득 世帶등에 대한 輕減額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所得比例保險料와 財産比例保險料를 配分하는데, 所得比例保險料의 배분액을 먼저 결정한다. 所得比例保險料 배분액은 能力比例保險料 배분총액에 所得比例保險料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所得比例保險料 배분율은 세대당 연평균 소득금액에 따른 가중치와 소득과약률이 동시에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 즉, <表 2-2>와 같이 세대당 연평균 소득금액이 많아질수록 소득비례 保險料의 가중치도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所得比例保險料 배분액을 결정하기 위한 加重値가 <表 2-1>과 같이 결정되면, 능력비례 배분액의 총액 중 所得比例保險料와 財産比例保險料의 배분액은 다음 방식에 의해 정해진다.

소득비례보험료 =

$$\text{능력비례보험료 배분총액} \times \frac{\text{소득과약률} \times \text{가중치}}{(\text{소득과약률} \times \text{가중치}) + \text{재산과약률}}$$

10) 보건사회부, 『1990년도 地域醫療保險 保險料 賦課指針』, 1990. 6. p.31.

재산비례보험료 = 능력비례보험료 배분총액 - 소득비례보험료

財産比例保險料의 배분액은 能力比例保險料의 배분총액에서 所得比例保險料를 제외한 금액이다.

<表 2-2> 所得比例保險料 配分額 決定時の 加重値

세대당 연평균 소득금액(만원) ¹⁾	100이하	101~150	151~200	201~250	251이상
소득비례보험료의 가중치	1.00	1.25	1.50	1.75	2.00

註: 1) 세대당 연평균 소득금액은 課稅資料所得과 申告所得으로 구성되며, 각각 評價率을 적용한 금액임.

資料: 보건사회부, 『1990년도 地域醫療保險 保險料 賦課指針』, 1990.

2) 評價率

能力比例保險料 부과 대상이 되는 所得 및 財産자료는 課稅資料에 의하여 파악함을 원칙으로 하되, 課稅資料에 나타나지 않는 所得·財産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를 받아 이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地域醫療保險組合에서의 保險料賦課時 이용하는 보험료부과자료는 所得자료로서 農地所得, 綜合所得, 勤勞所得 등의 課稅資料와, 被保險者가 자진신고한 신고소득자료가 있으며, 財産자료로는 財産稅課稅資料(토지·건물) 및 其他所得(전·월세) 자료, 자동차에 대한 자료 등이 있다. 그런데 과세표준액은 동일해도 소득원이 다른 경우는 실제 所得 수준이 같지 않다는 주민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각 조합별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所得의 종류에 따라 評價率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

적으로 綜合所得 課稅資料에 나타난 事業所得 100만원 소득자는, 農地所得이나 勤勞所得 100만원 소득자보다 실질적으로 高所得者라고 인식된다. 따라서 現物所得인 農地所得보다는 現金所得인 事業所得에 더 많은 保險料가 부과되고, 課稅資料가 비교적 정확한 勤勞所得이나 農地所得보다는 부정확한 事業所得에 많은 保險料가 부과되도록 農地所得과 勤勞所得, 年金 등의 소득에는 일정률의 評價率(20~80%)을 적용하여 평가절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被保險者の 所得에 대한 課稅資料가 없거나, 課稅資料가 있더라도 너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조합은 被保險者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소득금액을 근거로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소득의 경우는 課稅資料가 있는 세대의 課稅所得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課稅所得과 신고소득의 衡平性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신고소득에 일정률의 評價率을 적용하여 평가절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소득 자체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거의 없어서 신고소득 자체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다.

각 조합이 가지고 있는 신고소득자료는 <表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에 따라 신고소득자료의 有資料世帶 비율과 소득범위, 신고소득의 평균금액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시 조합간 신고소득의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表 2-3> 申告所得 現況

지역	유자료세대비율	소득범위	평균금액
공주시	61.9%	30만원 ~ 2,000만원	201만원
공주군	37.5%	10만원 ~ 700만원	131만원
남원시	62.2%	12만원 ~ 120,020만원	170만원
군산시	74.5%	40만원 ~ 5,400만원	326만원
옥구군	60.3%	10만원 ~ 120만원	30만원

資料: 각 조합 내부자료.

能力比例保險料의 또 다른 부과요소인 財産比例保險料의 賦課資料인 財産價額이나 기타자산(전·월세액)에 대해서도 評價率을 적용한다. 財産比例保險料 중 財産稅 과세표준인 토지와 건물의 財産價額에 대해서는 소수의 조합(예, 김제군 의료보험 조합은 재산가액에 70% 평가율 적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조합에서 별도의 評價率을 적용하지 않고 財産價額의 100%를 保險料 부과등급기준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재산보유실태와 생활수준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월)세 보증금이 높은 경우는 전(월)세 세대의 생활수준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보다 높을 수도 있으므로 이들 세대와 재산보유세대와의 衡平性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財産比例保險料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이 일정수준이상인 세대에 대해서는 전(월)세보증금에서 일정금액(전세보증금 기초공제액 500~2,000만원, 월세의 경우는 환산계수 0.03~0.04로 나누어 전세보증금으로 평가함)을 뺀 나머지 금액을 財産價額으로 보고 기타자산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保險料는 자동차의 세액 또는 배기량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保險料를 免除하고,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免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能力比例保險料의 等級決定

能力比例保險料인 所得 및 財産比例保險料는 소득금액이나 재산가액에 대해 일정률의 保險料率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나 재산가액을 몇개의 등급(현재 30등급)으로 나누고, 類似한 소득액이나 재산금액을 같은 등급으로 간주하는 等級別 保險料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의 保險料 부과자료로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원천적으로 누락되

거나 과소추계되어 실지 所得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확한 所得에 일정한 保險料率을 직접 적용한다는 것은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급별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等級間 保險料 부과방식은 等級區間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低所得世帶의 保險料 부담이 과중하게 되거나, 같은 금액의 所得者라 할지라도 조합에 따라 부담하는 保險料의 액수는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能力比例保險料의 등급은 所得계층간 保險料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의거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급결정시 세대별 最高保險料 수준(피보험자 4인 기준, 자동차에 대한 保險料 제외)은 조합 평균보험료의 5~7배 수준이 되도록 결정한다.

最高等級의 하한금액은 최고등급 保險料가 조합에서 정한 수준이 되도록 결정한다. 즉, 능력비례 최고등급보험료를 부과기준율로 나누어 산정한 최고等級표준소득금액을¹¹⁾ 감안하여 최고等級구간 하한금액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표준소득금액은 해당 等級 상하한 금액의 평균치를 의미하고, 賦課基準率은 요소별 부과목표액(소득비례배분액 및 재산비례 배분액)을 세대별 표준소득금액의 합계로¹²⁾ 나누어 구한 率이다.

1등급 구간의 상한금액은 1등급 보험료가 1等級 표준소득금액을 부과기준율에 곱하여 얻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결정하는 데, 1등급에 해당하는 세대비율이 요소별 保險料 부과대상세대의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

1등급 구간의 상한금액과 최고등급의 하한금액이 결정되면, 그 사이의 等級別 금액은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일정률로 금액 구간폭이 넓어지도록 구간 상한금액에 증가율을¹³⁾ 곱하여 결정하고, 각 등급 상·하한 금액은 10

11) 표준소득금액=등급 하한금액+(차하위등급 상한금액-차하위등급 하한금액)×1/2

12) 세대별 표준소득금액 합계= $\sum_{1}^{30}$ (등급별 표준소득금액×등급별 해당세대수)

만원 단위로 하되, 10만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등급구간이 결정되면 等級間 상·하한 금액의 평균치인 표준소득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등급별보험료를 구하는데, 등급별 보험료는 100원 미만은 절상한 100원 단위로 한다.

能力比例保險料의 하나인 其他所得(신고소득)은 대부분의 조합에서 評價率을 적용한 후 所得比例保險料의 등급구간에 포함하여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에서는 其他所得에 대한 등급구간을 별도로 정하여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表 2-4> 其他所得의 等級區間 및 等級別 保險料(옥구군, 남원군)

等級	옥구군		남원군	
	연간소득금액 (만원)	월보험료 (원)	연간소득금액 (만원)	월보험료 (원)
1	1.0~15.0	1,000	1.0~30.0	700
2	15.1~20.0	2,000	30.1~70.0	1,300
3	20.1~25.0	3,000	70.1~130.0	2,300
4	25.1~30.0	4,000	130.1~200.0	3,400
5	30.1~35.0	5,000	200.1~300.0	4,500
6	35.1~45.0	6,000	300.1~450.0	5,600
7	45.1이상	7,000	450.1이상	6,800

資料: 각 의료보험조합 정관

대부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非營業用 자동차가 생활수준을 반영한다고 보고 能力比例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는 차종 또는 연간세액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일정액을 부과하되, 5등급인 최고等級保險料가 8,000원 이내가 되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부과한다.

$$13) \text{ 증가율} = \frac{(\text{등급수}-2)}{\sqrt{\text{최고등급 하한금액}/1\text{등급 상한금액}}}$$

그리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대한 保險料를 免除하고, 화물자동차는 非營業用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영세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定款에 규정을 두면 保險料를 免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保險料의 等級調整

地域醫療保險組合은 保險料의 等級을 定期的으로 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保險料의 定期等級調整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말 실시하며, 調整된 等級은 다음년도 1월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매년 1~3월 중에 조사가 가능한 農地所得 자료를 당해년도 保險料등급조정에 반영시킬 경우에는 農地所得에 대한 조사결정이 완료된 3~4월부터 調整된 등급을 적용할 수도 있다.

保險料等級 調整時에는 다음 연도 보험급여 재정을 추계 분석하여 새로운 부과자료만을 변경 적용할 것인지 나아가 保險料 인상요인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 변경까지 할 것인지 판단하여 조정을 한다.

조합은 매년 말 실시하는 定期 保險料 등급조정 이외에도, 수시로 所得·재산자료를 수집한 時點부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 자료에 의한 保險料의 등급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個別世帶에 대하여 새로운 課稅資料가 발생될 때마다 이를 保險料 등급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4. 保險料의 減免

지역의료보험은 定期的인 급여를 받는 직장이나 공·교의료보험에 비하여 소규모 자영자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保險料 부담능력이 취약한 低所得世帶를 많이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생활보호대상자와 類似한 低所得世帶에 대하여는 保險料를 輕減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低所得世帶에 대한 保險料의 輕減은 總 適用對象世

帶의 5% 이내로 하되 세대별 保險料額의 50% 이내에서 輕減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保險料 輕減對象世帶의 선정기준 및 保險料 輕減率은 組合 定款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低所得世帶 이외에 의료기관 이용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급여기회에 제한을 받는 奧·僻地 주민에 대하여도 保險料를 輕減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保險料의 輕減은 마을 단위로 하는데, 總適用世帶의 2% 범위내의 세대에 대해서 세대별 保險料額의 50% 이내 금액을 輕減할 수 있다.

低所得世帶 및 奧·僻地 주민의 保險料 輕減에 따른 추가소요 재정은 能力比例保險料에서 충당한다.

5. 保險料의 納付

保險料는 매월 納付를 원칙으로 세대 단위로 賦課되며 조합원인 世帶主 또는 被保險者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의료보험법 제52조 및 제54조, 제55조). 被保險者가 保險料를 滯納(대통령령이 정하는 保險料 부담능력이 없는 자 제외)한 경우에는 被保險者 및 被扶養者에 대하여 保險料를 完納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停止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停止할 수 있는 체납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조합의 定款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의료보험법 제41조 7항,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5조 2항).

第 3 章 統合對象 醫療保險組合의 現況

第 1 節 一般現況

1. 適用人口現況

1995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統合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경기도 미금시·남양주군을 비롯한 65個 市·郡組合(33개 시조합, 32개 군조합)으로, 전체 지역의료보험조합 266個(130개 시조합, 136개 군조합)의 약 24%에 해당한다(통합대상 지역 및 명칭은 表 3-1 참조). 통합 시조합의 명칭은 대부분 시조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남양주시, 아산시, 보령시, 문경시, 통령시, 거제시 등은 통합 전 군조합의 명칭을 통합 후 통합 시의료보험조합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통합되는 지역은 경상남도의 창원군이 일부는 마산시로, 나머지 일부는 창원시로 통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個 市와 그 市를 둘러싸고 있는 1個 郡이 통합되어 1개의 廣域市가 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統合對象 지역의료보험조합은 組合數로는 전체 지역조합의 24%를 차지하지만, 統合組合의 세대 및 적용인구수는 전체 지역의료보험 대상세대의 14.1%(930,428세대)와 전체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의 14.6%(3,117,762명)에 해당한다(表 3-2 참조).

이를 시·군지역조합별로 보면, 통합되는 시조합은 전체 시조합의 10.9%이고 군조합은 전체 군조합의 23.8%에 해당하며, 適用人口數로는 시조합의 11.4%, 군조합은 23.8%이다.

統計

<表 3-1> 統合對象 市·郡 地域醫療保險組合

도	시·군명	통합시조합명칭
경기 강원	미금시-남양주군	남양주시의료보험조합
	춘천시-춘천군	춘천시의료보험조합
	원주시-원주군	원주시의료보험조합
	강릉시-명주군	강릉시의료보험조합
	삼척시-삼척군	삼척시의료보험조합
충북	충주시-충원군	충주시의료보험조합
	제천시-제천군	제천시의료보험조합
충남	온양시-아산군	아산시의료보험조합
	서산시-서산군	서산시의료보험조합
	대천시-보령군	보령시의료보험조합
전북	군산시-옥구군	군산시의료보험조합
	정주시-정읍군	정읍시의료보험조합
	남원시-남원군	남원시의료보험조합
전남	김제시-김제군	김제시의료보험조합
	순천시-송주군	순천시의료보험조합
	나주시-나주군	나주시의료보험조합
경북	포항시-영일군	포항시의료보험조합
	경주시-경주군	경주시의료보험조합
	안동시-안동군	안동시의료보험조합
	구미시-선산군	구미시의료보험조합
	영주시-영풍군	영주시의료보험조합
	점촌시-문경군	문경시의료보험조합
	경산시-경산군	경산시의료보험조합
	상주시-상주군	상주시의료보험조합
	김천시-금릉군	김천시의료보험조합
	창원시-창원군 일부	창원시의료보험조합
경남	마산시-창원군 일부	마산시의료보험조합
	진주시-진양군	진주시의료보험조합
	통무시-통영군	통영시의료보험조합
	장승포시-거제군	거제시의료보험조합
	밀양시-밀양군	밀양시의료보험조합

<表 3-2> 統合對象地域의 適用人口現況(1993. 12. 31 현재)
(單位 : 세대, 명, %)

구 분	세 대 수			인 구 수		
	지역의보 전체(a)	통합대상 지역(b)	b/a	지역의보 전체(a)	통합대상 지역(b)	b/a
시조합	4,940,532	540,543	10.9	15,737,782	1,787,912	11.4
군조합	1,639,561	389,885	23.8	5,583,990	1,329,850	23.8
계	6,580,093	930,428	14.1	21,321,772	3,117,762	14.6

資料 : 의료보험연합회, 『'93 지역의료보험조합결산현황』, 1994. 9.

2. 組合規模

統合되는 市地域組合의 被保險者數 현황을 <表 3-3>에서 보면, 被保險者數가 3만명 이하 조합이 11개나 되며 被保險者數가 3만명 이하 도시 지역조합 15개 중 약 70%에 해당한다. 그리고, 被保險者數 3만명 이상 5만 명미만을 관할하는 조합은 7개 조합으로 統合되는 市組合 중 被保險對象者 5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조합은 18개에 이른다.

統合되는 郡組合은 被保險者數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사이의 조합이 21개로 統合郡組合 32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被保險者數 3만명 미만인 조합과, 5만명 이상 9만명 미만 조합이 각각 6개와 5개로 統合對象 郡組合은 모두 被保險者數 9만명 미만의 조합임을 알 수 있다.

統合對象 지역조합의 世帶數 및 被保險者數가 統合前과 統合後 어떻게 변동되는지 <表 3-4>, <表 3-5> 및 <表 3-6>에서 살펴 보았다.

統合對象 市組合 가운데는 被保險者數가 2만명 미만이면서 世帶數도 5천세대 미만인 소규모 조합이 2개 포함되어 있으며, 被保險者數가 2만명 이상 3만명 미만이고 世帶數는 5천세대 이상 1만세대 미만인 조합이 가장 많아 8개 조합이다(表 3-4 참조).

<表 3-3> 統合對象 地域醫療保險組合의 適用人口規模別 現況:1993
(單位 : 조합수, %)

구 분	시조합 ¹⁾	시통합대상조합	군조합	군통합대상조합
3만명미만	15	11	38	6
3만명이상	17	7	64	21
5만명미만				
5만명이상	16	10	32	5
9만명미만				
9만명이상	11	5	2	-
12만명미만				
12만명이상	15	-	-	-
계	74	33	136	32

註 : 1) 大都市 組合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지역조합은 제외하였음.
資料 : 의료보험연합회, 『'93 地域醫療保險組合決算現況』, 1994. 9.

統合되는 郡地域組合의 被保險者 現황을 보면 被保險者數 2만명 미만인 조합은 없으나, 被保險者數가 5만명 미만이고 適用世帶數가 1만 5천 세대 이하인 조합이 27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表 3-5 참조).

<表 3-4> 統合對象 市組合의 世帶數 및 被保險者數 現況
(單位 : 명, 조합수)

피보험자수	1만~2만	2만~3만	3만~4만	4만~5만	5만~9만	9만이상	소 계
세대수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5천미만	2						2
5천~1만	1	8	2				11
1만~1.5만			3	2			5
1.5만~2만					4		4
2만~2.5만					5		5
2.5만~3만					1	1	2
3만이상						4	4
소 계	3	8	5	2	10	5	33

資料 : 각 조합의 내부자료.

<表 3-5> 統合對象 郡組合의 世帶數 및 被保險者數 現況

(單位 : 명, 세대, 조합수)

피보험자수 세대수	1만~2만 미만	2만~3만	3만~4만	4만~5만	5만이상	소 계
5천미만						
5천~1만		6	4			10
1만~1.5만			6	11	1	18
1.5만~2만					2	2
2만~2.5만					1	1
2.5만~3만					1	1
3만이상						
소 계		6	10	11	5	32

資料: 각 조합의 내부자료.

<表 3-6> 새로운 統合市組合의 世帶數 및 被保險者數

(單位 : 명, 세대, 조합수)

피보험자수 세대수	3만~5만 미만	5만~7만	7만~9만	9만~11만	11만이상	소 계
1만미만						
1만~2만	1	5				6
2만~3만		2	11	2		15
3만~4만				2	5	7
4만~5만					3	3
5만~6만					1	1
6만이상					1	1
소 계	1	7	11	4	10	33

새로이 統合되는 統合市 조합의 규모를 <表 3-6>에서 보면, 통합 후에는 33개 統合市 중 32개 조합이 被保險者 5만명 이상의 조합이 되며, 被保險者 9만명 이상의 조합도 14개나 된다.

統合對象 조합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統合前에는 장승포시가 被保險者數 13,056명으로 市組合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았고, 郡組合으로는 제천군이 被保險者 21,724명으로 최소규모였으나, 統合後에는 통합삼척시의 被保險者數가 38,511명으로 統合市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의 조합이 될 것이다. 그리고, 統合前 시조합은 평균 세대수가 16,380세대,

군조합은 11,657세대였으나, 統合後는 1개 조합의 평균 세대수가 28,195세대로 증가한다.

<表 3-7> 統合前後 組合의 規模

(單位 : 세대, 명)

구 분	통합전(1993년 말 현재)		통합후
	市조합	郡조합	
세대수			
최소조합	4,147(장승포시)	6,330(제천군)	11,686(통합 삼척시)
최대조합	52,064(마산시)	28,234(남양주군)	62,328(통합 포항시)
평균	16,380	11,657	28,195
피보험자수			
최소조합	13,056(장승포시)	21,724(제천군)	38,511(통합 삼척시)
최대조합	169,016(마산시)	86,720(남양주군)	206,443(통합 포항시)
평균	55,872	40,299	94,478

資料 : 의료보험연합회, 『'93 地域醫療保險組合 決算現況』, 1994. 9.

第 2 節 財政現況

65개(33개 시 및 32개 군) 統合對象 지역의료보험조합의 1991년도부터 1994년 상반기까지의 財政現況을 보면, 市와 郡組合 모두 保險料가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비의 증가폭이 훨씬 커서 收入總額에서 支出總額을 뺀 당기차액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8 참조).

<表 3-8> 統合對象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財政收支 現況:1991~1994¹⁾
(單位 : 백만원)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6월 ²⁾
市組合				
수입총액(A)	126,034	147,084	163,565	75,959
보험료	71,248	81,298	89,673	48,823
국고지원	47,404	53,592	57,136	20,587
기타	7,382	12,195	16,756	6,549
지출총액(B)	96,653	119,262	139,531	66,683
보험급여	77,916	94,105	111,463	63,185
관리운영	16,197	17,284	16,729	
기타	2,540	7,873	11,339	3,498
당기차액(A-B)	29,381	27,822	24,034	9,276
郡組合				
수입총액(C)	104,661	109,990	121,251	52,332
보험료	48,126	54,343	59,460	31,667
국고지원	49,213	44,496	47,478	14,876
기타	7,322	11,151	14,313	5,789
지출총액(D)	81,845	95,937	111,266	50,840
보험급여	65,440	75,448	87,789	48,485
관리운영	14,396	15,396	16,264	
기타	2,009	5,093	7,213	2,355
당기차액(C-D)	22,816	14,053	9,985	1,492

資料 : 1) 의료보험연합회, 『地域醫療保險組合決算現況』, 각연도.

2) 1994년도 상반기는 醫療保險聯合會 내부자료.

이와 같은 현상은 시지역보다 군지역에서 더욱 명백하여, 1991년 말 당기차액이 22,816백만원에서 1993년에는 9,985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1994년 상반기는 1,492백만원으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統合對象인 65개 시·군 조합의 財政赤字 현황을 조합별로 보면 <表 3-9>와 같다. 1991년도와 1992년도에는 통합대상 지역 중 재정이赤字인 조합은 없었으나, 1993년에는 정읍군과 나주군이 각각 2,776천원과

285,786천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다.

그런데 1994년에는 적자조합수가 크게 증가하여 1994년 상반기 중 1개 시조합 및 10개 군조합에서 당기 財政收支가 赤字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郡組合의 赤字규모가 크다.

<表 3-9> 統合對象組合의 財政赤字 現況

(單位 : 千圓)

지 역	1993 ¹⁾	1994. 1.~6. ²⁾
정읍군	2,776	111,868
나주군	285,786	187,905
나주시		64,280
남원군		10,483
김제군		203,473
중원군		109,418
영풍군		60,419
금릉군		136,112
상주군		360,155
영천군		16,737
창원군		56,620
계	288,562	1,317,470

資料 : 1) 의료보험연합회, 『'93地域醫療保險組合 決算現況』, 1994.9.

2) 1994년도 상반기는 醫療保險聯合會 내부자료.

第 3 節 保險料 賦課現況

현재 지역의료보험은 각 조합별로 基本保險料의 비중 및 수준, 能力比例保險料의 부과대상이 되는 所得과 財産자료의 구성(예, 所得자료에 농지所得의 포함여부 등), 所得과 財産의 각 부과요소별 評價率, 能力比例保險料의 所得·財産의 等級區間 및 區間別 保險料額이 모두 다르다.

통합대상지역의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별로 相異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賦課要素別 保險料比率

통합대상 지역의 부과요소별 保險料 비율을 보면, 基本保險料가 전체 保險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市組合이 39.1%, 郡組合이 42.2%로 郡組合에서 基本保險料의 비중이 조금 높다.

<表 3-10> 賦課要素別 保險料比率:1994

(單位 : %)

	기본보험료			능력비례보험료			
	소계	세대당	피보험자당	소계	소득	재산	자동차
市조합							
최소조합	31.2	7.9	23.3	51.9	19.5	18.3	0.9
최대조합	48.1	14.9	35.2	68.8	38.1	36.2	9.0
평 균	39.1	10.6	28.5	60.9	30.0	25.2	5.7
郡조합							
최소조합	32.8	9.3	22.8	47.5	14.8	18.7	1.2
최대조합	52.5	14.0	39.2	67.2	37.6	39.8	12.1
평 균	42.2	11.0	31.2	57.6	27.0	26.4	4.2

資料: 각 조합, 『조합통합에 따른 기초조사서』, 1994. 8.

市組合 가운데에는 保險料총액 중 世帶當保險料가 차지하는 비율이

8% 정도인 조합으로부터 거의 2배인 15%에 이르는 조합도 있어 조합별로 차이가 많다. 郡組合 중에는 基本保險料의 비율이 52.5%에 이르는 조합도 있어 保險料부과에 있어 基本保險料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能力比例保險料의 비율도 47%를 조금 상회하는 조합이 있는 반면 거의 70%에 이르는 조합도 있으며, 能力比例保險料의 평균은 市組合이 60.9%, 郡組合이 57.6%이다. 能力比例保險料 중 소득비례부분에 부과하는 보험료액은 시조합은 19.5%부터 38.1%까지이고, 군조합은 14.8%부터 37.6%까지 차지하고 있다. 所得比例保險料를 과세자료뿐만 아니라 신고소득까지도 포함하여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所得比例保險料가 전체 保險料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아직도 평균적으로 30%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財産比例保險料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조합 평균이 25.2%, 군조합 평균이 26.4%로 시·군조합이 비슷한 수준이다. 所得比例保險料가 전체 保險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조합이 군조합보다 조금 높은 것과는 달리 財産比例保險料는 거의 비슷하며, 오히려 군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데 이는 군지역은 농지를 보유한 세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끝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保險料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0.9%에서 12.1%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합대상 시·군조합의 基本保險料 비율을 <表 3-10>에서 보면 시조합이 39.1%, 군조합이 42.2%이다. 地域醫療保險 保險料賦課指針에 따르면 基本保險料와 能力比例保險料의 배분비율이 40:60으로 배분될 경우는 所得·財産의 파악률, 즉 전체세대 중 所得이나 財産자료가 1개 이상 있는 세대 비율이 70~80% 정도인 경우이며, 자료의 파악률이 높아질수록 能力比例保險料의 비중도 높아지도록 하고 있다(表 2-1 참조).

그런데 지역조합의 보험료부과자료 보유비율을 <表 3-11>에서 보면 綜合所得, 農地所得, 其他所得 등 소득자료와 財産자료를 포함하면 조합은 거의 모든 세대에 대한 보험료부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료과액률이 높은 지역은 能力比例保險料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所得자료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고소득은 조합에 따라 차이가 심하므로 통합시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表 3-11>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賦課資料別 保有 比率:1994. 6. 現在
(單位 : %)

	부과자료보유 세대비율	소득자료보유 세대비율 ¹⁾	재산자료보유 세대비율 ²⁾
공주시	99.5	85.7	48.0
공주군	99.8	99.4	77.9
남원시	99.6	94.4	49.8
남원군	99.8	95.2	87.7
군산시	99.8	95.6	63.9
옥구군	99.9	97.6	73.0

註 : 1) 소득자료보유세대는 종합소득과세자료, 농지소득 자료, 연금, 신고소득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임.

2) 재산자료는 과세자료 또는 신고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임.

資料 : 각 조합 내부자료.

保險料 부과자료 중 綜合所得 課稅資料는 市組合 보유율이 높은 반면 財産課稅 資料는 郡組合의 보유율이 높다.

<表 3-12> 所得·財産의 課稅資料 保有世帶 比率
(單位 : %)

지 역	종합소득과세자료	재산과세자료
공주시	27.5	45.4
공주군	14.0	77.9
남원시	29.0	49.7
남원군	11.3	87.7
군산시	21.3	46.5
옥구군	21.1	73.0

資料: 각 組合 내부자료

2. 基本保險料의 分布

통합대상 지역의료보험조합의 世帶當 保險料와 被保險者當 保險料의 분포를 보면, 시조합은 被保險者當 保險料가 1,300원에서 1,400원 사이인 조합이 16개로 32개 조합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世帶當 保險料는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의 조합이 가장 많아 13개 조합에 이르고 있다(表 3-13 참조).

반면, 郡組合은 被保險者當 保險料가 1,100원에서 1,200원에 이르는 조합이 가장 많아 16개 조합이고, 世帶當保險料는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의 조합이 역시 가장 많아 14개 조합이다(表 3-14 참조).

통합대상 시지역 조합과 군지역 조합의 基本 保險料를 비교해 보면 被保險者當 保險料는 시지역 조합이 군지역 조합보다 조금 높고, 世帶當 保險料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市·郡組合 모두 被保險者當 保險料가 높은 조합이 세대당 保險料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 3-13> 統合對象 市地域組合의 基本保險料 現況

(單位: 원, 세대)

피보험자당 세대당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소 계
1,100~1,200	2					2
1,300~1,400	1	5		1		7
1,500~1,600		3	10			13
1,700~1,800			3	2		5
1,900~2,000			2	1		3
2,100이상			1	1		2
소 계	3	8	16	5		32

資料: 각 조합, 『조합통합에 따른 기초조사서』, 1994. 8.

<表 3-14> 統合對象 郡地域組合의 基本保險料 現況

(單位: 원, 세대)

피보험자당 세대당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소 계
1,100~1,200		2				2
1,300~1,400	2	9				11
1,500~1,600	1	3	7	3		14
1,700~1,800		1	1	1		3
1,900~2,000			1		1	2
2,100이상		1				1
소 계	3	16	9	4	1	33

資料: 각 조합, 『조합통합에 따른 기초조사서』, 1994. 8.

3. 能力比例保險料

가. 賦課要素別 資料의 評價率

能力比例保險料는 소득비례부분과 재산비례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所得과 재산비례 保險料의 산출대상이 되는 所得 및 財産은 課稅資料인 綜合所得과 農地所得資料¹⁴⁾, 재산세(건물,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課稅資料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所得과 財産(전·월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조합에서는 課稅資料가 없는 세대에서 신고한 所得은 其他所得으로, 課稅資料가 아닌 전·월세액의 신고액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하여 評價率을 낮추어 (종합)소득액 및 재산가액에 합산하거나 별도의 保險料등급표에 의해 保險料를 賦課하고 있다.

65개 통합대상 지역조합에서 能力比例保險料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所得 및 財産의 종류와 적용대상 所得, 財産의 평가율(적용률)은 <表 3-15>와 같다. 통합대상 지역의 모든 시·군지역 조합에서 所得자료로 綜合所得, 年金所得을, 財産자료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課稅資料를 保險料

14) 農地所得에 대한 면세점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地域組合의 농지소득 자료 중 課稅資料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농지소득 자료는 組合의 推定資料임.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綜合所得은 충무시 조합(65%)과 상주군 조합(60%)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합에서 課稅所得額의 100%를 保險料부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財産比例保險料의 建物價額과 土地價額도 대부분의 지역조합에서 100% 반영하고 있다.

保險料 부과요소 중 農地所得과 其他所得의 반영여부와 評價率은 조합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지역은 所得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는 세대가 많으므로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모든 市組合에서 其他所得에 대한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으며, 郡組合은 農地所得을 주 소득원으로 보고 所得比例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農地所得은 통합대상 조합 중 27개 시조합과 29개 군조합에서 所得資料로 활용하고 있으나, 자료의 평가율은 시·군별로 크게 차이가 나서 시조합에서는 남원시를 비롯한 15개 조합이 農地所得에 50% 이하의 評價率을 적용하고 있으며, 郡組合은 삼척군 외 16개 조합이 農地所得의 100%를 保險料부과에 반영하고 있다.

其他所得 資料는 33개 통합대상 全市組合에서 保險料 부과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郡組合에서는 통합대상 32개 조합 중 30개 조합이 保險料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其他所得 資料의 評價率은 시조합이 8.3%에서 100%, 군조합이 5%에서 100%로 조합에 따라 차이가 크다.

기타재산액은 30개 市組合에서 保險料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군조합은 12개 조합만이 保險料 부과에 반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군조합에서는 기타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보유 형태의 都·農間 차이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表 3-15> 賦課資料別 評價率

	시 조 합(33개)		군 조 합(32개)	
	적용조합(개)	평가율(%)	적용조합(개)	평가율(%)
종합소득	33	65(충무시) 100(충무시 외 32개 시조합)	32	60(상주군) 100(상주군 외 31개 군조합)
농지소득	27	10(남원시) 15(대천시) 20(군산시, 정주시 충무시) 30(장승포시, 온양시, 영천시, 김제시, 포항시, 상주시, 춘천시) 40(점촌시) 50(나주시, 진주시) 60(충주시, 경주시, 경산시) 70(밀양시, 원주시, 마산시, 창원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100(삼척시, 서산시)	29	30(송주군) 33(문경군) 35(명주군) 50(원주군) 60(경산군, 통영군) 70(밀양군, 춘천군) 80(보령군, 나주군, 선산군, 창원군) 100(삼척군의 16개 군조합)
기타소득	33	8.3~100	30	5~100
연금	33	8.3~100	32	15~100
건물	33	60(충무시) 100(충무시 외 32개 시조합)	32	70(김제군) 100(김제군 외 31개 군조합)
토지	33	60(충무시) 70(안동시) 100(충무, 안동시 외 31개 시조합)	32	70(김제군) 100(김제군 외 31개 군조합)
기타재산	30	20~100	12	20~100

資料: 각 조합, 『조합통합에 따른 기초조사서』, 1994. 8.

나. 保險料等級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

지역의료보험에서는 能力比例保險料를 구성하고 있는 所得額과 財産價額에 대하여 일정액을 동일등급으로 묶어 30개의 等級을 결정하고 각 등급별로 等級保險料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所得 및 財産의 등급구간의 범위와 등급별 保險料 액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다르다.

1) 保險料等級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의 決定

지역의료보험의 保險料는 所得金額과 財産價額을 모두 3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는데, 등급구간을 결정할 때는 먼저 최하등급(1등급) 상한금액과 최고등급(30등급) 하한금액을 결정한 후, 그 사이 등급구간을 정하게 되는데, 등급區間別 금액은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일정률로 금액구간폭이 넓어지도록 구간 상한금액에 증가율을 곱하여 결정한다(보건사회부, 1990).

所得과 財産比例保險料의 최고등급(30등급) 구간의 하한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世帶當 最高保險料가 조합 평균保險料의 5~7배 수준이 되도록 정하고 이에 따라 所得과 財産比例保險料의 최고等級保險料수준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能力比例保險料의 등급區間別 保險料가 해당등급의 표준소득금액(등급의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을 더하여 이를 2로 나눈 금액)에 賦課基準率(保險料 부과목표액을 각 등급의 표준소득금액의 합계로 나눈率)을 곱하여 얻어지는 것을 逆으로 계산하여, 能力比例保險料의 최고등급保險料를 賦課基準率로 나누어 산정한 최고等級표준소득금액을 감안하여 최고등급구간의 하한금액을 결정한다.

그리고, 최하등급(1등급) 상한금액은 現行의 1等級保險料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1등급에 해당하는 世帶比率이 要素別 保險料賦課對象 世帶의 30% 이하 수준이 되도록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과지침에 근거하여 算定된 保險料와 실제 조합에서 부과하는 保險料는 차이가 있다.

<表 3-16> 所得比例保険料의 等級區間別 保険料額 算定(예시)

등급	금액구간 (만원)	표준소득 금액(만원)	세대수	표준소득금 액합계(만원)	산정보험료 (원)	현행보험료 (원)	보험료차이 (원)
1	1~30	15	1157	17355	628	1200	571
2	31~40	35	1434	50190	1465	1700	234
3	41~50	45	4828	217260	1884	2200	315
4	51~60	55	3207	176385	2302	2700	397
5	61~70	65	876	56940	2721	3200	478
6	71~80	75	7234	542550	3140	3600	459
7	81~90	85	702	59670	3558	4100	541
8	91~100	95	1522	144590	3977	4600	622
9	101~110	105	417	43785	4396	5100	703
10	111~120	115	640	73600	4815	5600	784
11	121~130	125	206	25750	5233	6000	766
12	131~140	135	228	30780	5652	6500	847
13	141~150	145	230	33350	6071	7000	928
14	151~160	155	149	23095	6489	7500	1010
15	161~180	170	294	49980	6908	8200	1291
16	181~200	190	264	50160	7955	9100	1144
17	201~230	215	284	61060	9002	10300	1297
18	231~260	245	270	66150	10258	11800	1541
19	261~290	275	213	58575	11514	13200	1685
20	291~330	310	238	73780	12979	14900	1920
21	331~380	355	272	96560	14863	17000	2136
22	381~430	405	202	81810	16957	19400	2442
23	431~480	455	185	84175	19050	21400	2349
24	481~550	515	172	88580	21563	22400	836
25	551~620	585	164	95940	24493	23400	-1093
26	621~700	660	153	100980	27634	24400	-3234
27	701~790	745	145	108025	31193	25400	-5793
28	791~890	840	110	92400	35170	26400	-8770
29	891~1000	945	112	105840	39567	27400	-12167
30	1001 이상	1055	664	700520	44172	28400	-15772
계				3409835			

註 : 1) 소득비례보험료 부과목표액이 142,708천원일 경우

142,708천원(부과목표액)

2) 부과기준률 = $\frac{142,708 \text{천원}}{34,098,350 \text{천원(표준소득금액합계)}} = 0.004187$

3) 등급별 보험료 = 등급별 표준소득금액 × 부과기준률

資料 : 군산시 의료보험조합 자료

즉, <表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과지침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많은 세대가 속해 있는 하위등급의 保險料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게 되며, 상위등급의 區間別保險料는 높게 책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조합에서는 하위등급의 區間別保險料는 산정된 保險料보다 높게 결정하고, 상위등급의 區間保險料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3) 保險料等級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의 現況

能力比例保險料의 한 요소를 이루는 所得比例保險料의 최하구간인 1등급의 등급구간은 거의 모든 조합에서 1만~20만원(또는 3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1등급의 保險料는 조합에 따라 차이가 크며 1등급의 保險料가 낮은 조합은 30등급의 保險料도 낮고 1등급의 保險料가 높은 조합은 30등급의 保險料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대상 시·군조합 중 30등급의 등급保險料가 가장 적은 조합은 영풍군 의료보험조합으로 14,400원이며, 保險料가 가장 많은 조합은 충무시 의료보험조합으로 41,800원이어서 조합간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附表 I -7 참조).

郡組合의 所得比例保險料의 분포는 1等級 保險料가 500원, 30等級 保險料가 19,200원인 조합(남원군)으로 부터 1等級 保險料 1,600원, 30等級 保險料가 35,400원인 조합(보령군)까지 분포하고 있다.

市組合 1등급保險料는 1,000원 또는 1,100원인 구간에, 30등급保險料는 3만원에서 3만5천원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 郡組合 1等級 保險料는 1,000원에서 1,100원인 구간에, 30等級 保險料는 2만5천원에서 3만원인 구간에 가장 많은 조합이 속해 있다(表 3-17 참조).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 區間別 保險料의 분포는 <表 3-18>과 같다. 1등급의 保險料의 분포는 市組合에 비해 郡組合 保險料가 대체로 낮으며, 30等級의 保險料는 市組合은 2만원~3만원 구간에 22개 조합이 속해 있는

나, 郡組合은 2만원 미만의 구간에 24개조합이 속해 있어 市組合보다는 郡組合의 최고등급구간의 保險料가 낮음을 알 수 있다.

<表 3-17> 所得比例保險料의 最上·下 等級 保險料 分布(시/군)

(單位 : 개)

30등급보혐료 1등급보혐료	15천~ 20천미만	20천~ 25천미만	25천~ 30천미만	30천~ 35천미만	35천~ 40천미만	40천~ 45천미만	소 계
500원 이하	/1		1/				1/1
600~700원	1/3			/1			1/4
800~900원	/1	/3	2/2	3/	1/		6/6
1,000~1,100원	/2	3/2	3/5	4/	2/		12/9
1,200~1,300원		/1	1/1	2/1			3/3
1,400~1,500원	/1		1/4	5/1	2/1	2/	10/7
1,600원이상				/1	/1		/2
소 계	1/8	3/6	8/12	14/4	5/2	2/	33/32

<表 3-18> 財産比例保險料의 最上·下 等級 保險料 分布(시/군)

(單位 : 개)

30등급보혐료 1등급보혐료	15천 미만	15천~ 20천미만	20천~ 25천미만	25천~ 30천미만	30천~ 35천미만	35천~ 40천미만	소 계
500원 이하	/4	1/2	1/1				2/7
600~700원	2/4	/3	2/1	1/			5/8
800~900원	/1	3/3	3/3	2/	2/	1/	11/7
1,000~1,100원	/2	1/3	5/1	5/1			11/7
1,200~1,300원	/1	/1	1/	1/	1/		3/2
1,400~1,500원			1/1				1/1
소 계	2/12	5/12	13/7	9/1	3/	1/	33/32

4. 世帶當 保險料

통합대상 65개 시·군조합의 世帶當 平均保險料는 시조합이 군조합보다 다소 높다. 1993년도 말 세대당 保險料는 시조합의 평균이 13,855원에서 1994년 7월에는 14,913원으로, 군조합은 1993년 말 12,662원에서 1994년

13,551원으로 시·군조합 모두 약 1,000원 정도 상승되었다.

1994년 保險料 수준을 보면 시조합은 33개 조합에서 保險料가 12,000원을 넘고 있으며, 세대당 月 保險料가 14,000원부터 16,000원 구간에 속한 조합이 33개중 16개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군조합은 保險料가 12,000원 이하인 조합이 5개 포함되어 있는 이외에, 12,000원부터 16,000원까지 구간에 속하는 조합이 27개로 統合되는 32개 조합 중 대부분의 조합이 이 구간에 속해 있다.

<表 3-19> 月平均 保險料 크기별 組合 分布

보험료(원)	1993년 12월 말		1994년 7월 말	
	시조합	군조합	시조합	군조합
8,000~10,000		1		
10,001~12,000	3	9		5
12,001~14,000	15	16	8	15
14,001~16,000	13	6	16	12
16,001~18,000	2		9	
통합조합수	33	32	33	32
통합조합평균 보험료(원)	13,855	12,662	14,913	13,551
전체지역조합 평균보험료(원)	14,255	12,693		

資料 : 각 조합, 『조합통합에 따른 기초조사서』, 1994. 8.

1993년 말 통합대상 시지역 조합의 세대당 月平均 保險料는 13,855원으로 전체 시지역 조합 평균 보험료 14,255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며, 통합대상 군조합은 12,662원으로 전체 군조합 평균 12,693원과 비슷하다.

現行 保險料 賦課體系下에서 統合의 대상이 되는 市組合과 郡組合에서 가족수가 같고 所得과 財産價額이 동일할 때 부과되는 保險料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基本保險料의 기준이 되는 가족수가 같고(예, 4인 가족), 能力比例保險料의 대상이 되는 所得(예, 시조합은 綜合

所得 100만원, 군조합은 農地所得 100만원)과 財産(예, 1,000만원)이 같은 세대에 현재 月保險料가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 통합대상 組合 중 몇 개 조합을 분석 해 본 결과는 <表 3-20>과 같다.

被保險對象者가 4인인 세대라 하더라도 조합에 따라 세대당, 피보험자 1인당 保險料가 다르기 때문에 基本保險料도 4,700원(나주시)부터 8,300원(삼척시)까지 차이가 난다. 能力比例保險料의 부과대상인 所得에 대해 시 지역은 綜合所得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대체로 所得比例保險料 등급표의 6~9등급에 해당하며 區間別 保險料는 2,000원에서 6,100원까지 분포하고 있다. 군지역은 農地所得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農地所得 保險料는 35%의 評價率을 적용하여 農地所得 100만원인 세대에 대해 35만원에 해당하는 소득등급구간을 적용하는 명주군은 1,400원을 부과하고, 100%의 평가율을 적용하는 공주군은 5,600원을 부과하고 있다. 財産價額이 1000만원인 경우 조합별 財産比例保險料의 부과액은 나주군이 2,800원을 부과하는 데 비하여, 삼척군은 8,400원을 부과하고 있다.

基本保險料와 能力比例保險料를 합산한 保險料는 마산시 조합이 11,200원, 정주시 의료보험조합이 20,1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군조합 중에서도 나주군 조합 11,600원, 삼척군 조합 19,600원 등으로 차이가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조합주의에 의해 원칙적으로 각 조합별로 保險料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保險料 부과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同一 世帶員數, 同一 所得과 財産價額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실정에 따라 保險料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의료보험이 통합될 때에는 통합대상 시·군조합의 保險料부과의 衡平은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의료보험의 保險料 賦課指針에서는 과세표준액이 동일해도 소득원이 다른 경우 실제소득이 같지 않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現物所得이면서 課稅資料가 비교적 정확한 所得(農地所得)보다는 現金所得이면서 課稅資料가 부정확한 所得(事業所得)에 더 많은 保險料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所得자료가 農地所得에 기초하고 있는 郡組合에서는 農地所得을 거의 대부분 100% 반

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市·郡統合時에는 農地所得과 綜合所得의 評價率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表 3-20> 組合別 保險料 比較

지 역	기본보험료 (a)	소득비례 (b)	재산비례 (c)	보험료계 (a+b+c)
제1그룹: 시조합이 군조합보다 보험료가 높은 지역				
남원시	$1,500^{2)} + 1,300^{3)} \times 4 = 5,700$	6,000(9등급)	7,500(15등급)	19,200
남원군	$1,500 + 1,300 \times 4 = 5,700$	2,800(9등급)	3,700(20등급)	12,200
상주시	$1,500 + 1,300 \times 4 = 6,700$	6,100(8등급)	3,700(15등급)	16,500
상주군	$1,400 + 1,100 \times 4 = 5,800$	3,200(8등급)	2,900(16등급)	11,900
안동시	$1,500 + 1,200 \times 4 = 6,300$	4,400(8등급)	5,500(18등급)	16,200
안동군	$1,400 + 1,200 \times 4 = 6,200$	2,700(7등급)	3,600(17등급)	12,500
제천시	$1,500 + 1,300 \times 4 = 6,700$	4,800(7등급)	7,700(14등급)	19,200
제천군	$1,300 + 1,100 \times 4 = 5,700$	4,500(7등급)	4,700(15등급)	14,900
원주시	$1,800 + 1,500 \times 4 = 7,800$	2,800(7등급)	9,000(14등급)	19,600
원주군	$1,600 + 1,300 \times 4 = 6,800$	2,500(3등급)	5,000(16등급)	14,300
정주시	$1,300 + 1,100 \times 4 = 5,700$	5,000(12등급)	9,400(20등급)	20,100
정읍군	$1,300 + 1,000 \times 4 = 5,300$	2,900(8등급)	4,600(13등급)	12,800
김제시	$1,600 + 1,400 \times 4 = 7,200$	4,600(9등급)	3,400(14등급)	15,200
김제군	$1,500 + 1,200 \times 4 = 6,300$	2,100(8등급)	2,900(15등급)	11,300
군산시	$1,400 + 1,200 \times 4 = 6,200$	4,600(8등급)	4,100(12등급)	14,900
옥구군	$1,400 + 1,200 \times 4 = 6,200$	2,600(9등급)	3,600(17등급)	12,400

註: 1) 4인 가족, 시조합은 綜合所得 100만원이고 군조합은 農地所得 100만원, 재산가액 1000만원인 세대 假定

2) 기본보험료 중 세대당 보험료.

3) 기본보험료 중 피보험자당 보험료.

<表 3-20> 繼 續

지 역	기본보험료	소득비례	재산비례	보험료계
제2그룹: 시조합과 군조합의 보험료가 비슷한 지역				
공주시	$1,500 + 1,100 \times 4 = 5,900$	4,500(8등급)	6,000(14등급)	16,400
공주군	$1,700 + 1,100 \times 4 = 6,100$	5,600(7등급)	5,200(15등급)	16,900
미금시	$1,700 + 1,600 \times 4 = 8,100$	4,600(8등급)	6,000(14등급)	18,700
남양주군	$1,900 + 1,700 \times 4 = 8,700$	5,600(7등급) ⁴⁾	5,300(11등급)	19,600
점촌시	$1,200 + 1,000 \times 4 = 3,200$	4,900(12등급)	4,900(16등급)	13,300
문경군	$1,400 + 1,100 \times 4 = 3,400$	3,800(9등급)	4,200(17등급)	13,400
충주시	$1,400 + 1,200 \times 4 = 6,200$	3,300(7등급)	4,800(14등급)	14,300
증원군	$1,500 + 1,100 \times 4 = 5,900$	4,200(7등급)	4,500(15등급)	14,600
강릉시	$1,900 + 1,400 \times 4 = 7,500$	2,900(6등급)	3,300(12등급)	13,700
명주군	$1,700 + 1,300 \times 4 = 6,900$	1,400(5등급)	4,000(9등급)	12,300
나주시	$1,100 + 900 \times 4 = 4,700$	3,300(7등급)	3,900(14등급)	11,900
나주군	$1,200 + 1,100 \times 4 = 5,600$	3,600(8등급)	2,400(8등급)	11,600
진주시	$1,500 + 1,300 \times 4 = 6,700$	3,400(7등급)	4,500(14등급)	14,600
진양군	$1,500 + 1,300 \times 4 = 6,700$	4,000(8등급)	3,800(15등급)	14,500
제3그룹: 시조합보다 군조합의 보험료가 높은 지역				
삼척시	$1,900 + 1,600 \times 4 = 8,300$	2,800(6등급)	5,600(13등급)	16,700
삼척군	$1,600 + 1,300 \times 4 = 5,800$	5,400(7등급)	8,400(16등급)	19,600
마산시	$1,600 + 1,300 \times 4 = 5,800$	2,000(6등급)	3,400(11등급)	11,200
창원군	$1,300 + 1,100 \times 4 = 5,700$	3,600(9등급)	5,600(14등급)	14,900
포항시	$1,300 + 1,200 \times 4 = 6,100$	2,500(6등급)	2,700(11등급)	11,300
영일군	$1,600 + 1,500 \times 4 = 7,600$	3,300(7등급)	5,900(12등급)	16,800

註 : 4) 남양주군은 군조합이지만 農地所得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綜合所得 100만원을 가정하였음.

第 4 節 保險料 移轉效果 分析

우리나라는 保險料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급여는 동일하게 하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醫療保險을 통한 所得再分配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대상자들의 所得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所得階層別로 부담한 保險料와 급여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保險料 移轉效果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되는 몇 개 시·군·조합을 대상으로, 所得과 財産에 따라 부과되는 能力比例保險料의 크기를 下位, 中下位, 中上位, 上位의 4등급¹⁵⁾으로 나누어 이를 所得계층으로 간주하고, 각 계층별 保險料 負擔額¹⁶⁾과 給與額¹⁷⁾을 분석하여 保險料 移轉效果를 살펴보았다.

保險料給與率¹⁸⁾은 남원시, 공주시, 공주군, 삼척시에서는 100% 미만으로 총급여비가 總保險料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원군과 삼척군은 각각 138.1%와 110.3%로 보험급여비가 본인부담 보험료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능력비례보험료의 4등급 區分은 能力比例保險料를 최저액부터 최고액까지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 각각 25%에 속하는 世帶의 能力比例保險料를 기준으로 하위, 중하위, 중상위, 상위계층을 나누었음.

16) 보험료부담액은 國庫負擔을 제외한 本人負擔 保險料를 의미하며,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資料가 연구 시작 당시 최근 자료인 1994년 6월분 부과액이었으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하였음. 그러므로 1993년 자료인 보험급여비와는 다소 시차가 있으며, 1994년 초 世帶當 保險料는 1993년 말과 비교해 남원시 6%, 남원군 3%, 공주시 7%, 공주군 21%, 삼척시·군 2%가 인상되었음.

17) 保險給與費는 19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診療를 받은 피보험 대상자들에 대한 1년분 組合負擔 給與費임.

18) 保險給與率은 각 組合의 1년분 給與費를 1년치 保險料로 나눈 比率임.

<表 3-21> 階層別 保險料 및 保險給與

(單位 : 천원, %)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계
남원시					
능력비례보험료	2,400원이하	2,500~6,000원	6,100원~14,600원	14,700원이상	
총보험료	151,638(9.2)	238,401(14.4)	385,132(23.3)	877,636(53.1)	1,652,807(100.0)
총급여비	161,876(11.4)	288,002(20.4)	407,340(28.8)	557,677(39.4)	1,414,895(100.0)
급여비/보험료	106.8%	120.8%	105.8%	63.5%	85.6%
보험료이전율	1.24	1.42	1.24	0.74	-
남원군					
능력비례보험료	2,900원이하	3,000~5,500원	5,600원~9,200원	9,300원이상	
총보험료	162,745(11.9)	276,757(20.2)	364,086(26.6)	564,056(41.2)	1,367,644(100.0)
총급여비	277,310(14.7)	440,096(23.3)	549,382(29.1)	622,087(32.9)	1,888,875(100.0)
급여비/보험료	170.4%	159.0%	150.9%	110.3%	138.1%
보험료이전율	1.24	1.15	1.09	0.80	-
공주시					
능력비례보험료	2,500원이하	2,600~5,000원	5,100원~11,000원	11,100원이상	
총보험료	165,481(12.2)	186,445(13.7)	306,120(22.5)	699,508(51.5)	1,357,554(100.0)
총급여비	269,417(22.3)	186,627(15.4)	330,901(27.3)	423,095(35.0)	1,210,040(100.0)
급여비/보험료	162.8%	100.1%	108.1%	60.5%	89.1%
보험료이전율	1.83	1.12	1.21	0.68	-
공주군					
능력비례보험료	4,700원이하	4,800~8,000원	8,100원~13,200원	13,300원이상	
총보험료	315,393(12.9)	461,452(18.8)	650,003(26.5)	1,023,159(41.8)	2,450,007(100.0)
총급여비	402,748(17.0)	527,651(22.3)	678,734(28.7)	753,923(31.9)	2,363,056(100.0)
급여비/보험료	127.7%	114.3%	104.4%	73.7%	96.5%
보험료이전율	1.31	1.19	1.08	0.76	-

<表 3-21> 繼 續

(單位 : 천원, %)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계
삼척시					
능력비례보험료	2,800원이하	2,900~4,800원	4,900원~9,200원	9,300원이상	
총보험료	117,002(13.2)	139,582(15.8)	194,308(21.9)	434,675(49.1)	885,566(100.0)
총급여비	97,533(12.6)	148,781(19.3)	206,094(26.7)	319,598(41.4)	772,006(100.0)
급여비/보험료	83.4%	106.6%	106.1%	73.5%	87.2%
보험료이전율	0.95	1.22	1.22	0.84	-
삼척군					
능력비례보험료	3,100원이하	3,200~5,300원	5,400원~9,400원	9,500원이상	
총보험료	139,283(12.6)	192,992(17.5)	279,131(25.3)	491,964(44.6)	1,103,370(100.0)
총급여비	164,352(13.5)	230,936(19.0)	410,100(33.7)	411,837(33.8)	1,217,225(100.0)
급여비/보험료	118.0%	119.7%	146.9%	83.7%	110.3%
보험료이전율	1.07	1.09	1.33	0.76	-

보험료移轉率¹⁹⁾을 보면 하위계층에서는 공주시가 1.83으로 가장 높은 보험료 이전효과를 보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공주군 1.31, 남원시·군 1.24, 삼척군 1.07으로 나타나서 하위계층은 대부분의 조합에서 보험료 移轉效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삼척시조합은 예외적으로 하위 계층의 보험료移轉率이 0.95로 오히려 보험료수입에 기여하고 있다.

중하위계층의 보험료移轉率은 남원시가 1.42로 가장 높고 삼척시 1.22, 남원군 1.15, 공주군 1.19, 공주시 1.12, 삼척군 1.09등으로 보험료移轉效果를 보고 있다.

19) 보험료 이전율은 해당그룹에서 給與費가 전체 총급여비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比率로 나눈 것임.

즉, 보험료 이전율 = $\frac{\text{보험급여비 점유율}}{\text{보험료점유율}}$ 이며,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그

그룹이 사용한 給與費의 比率이 보험료가 차지하는 比率보다 많으므로 보험료 이전효과를 보고 있으며, 1보다 작으면 그 그룹의 급여비가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比率보다 작아 보험료收入에 寄與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중상위계층도 保險料 移轉效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삼척군이 가장 높은 1.33으로 4等級중 가장 높은 保險料移轉率이고, 다른 조합들도 남원시 1.24, 삼척시 1.22, 공주시 1.21, 공주군 1.08등으로 保險料이전율의 數値가 1을 넘고 있다.

상위계층의 保險料移轉率은 6개 조합에서 모두 1이하로 보험급여비율에 비해 保險料率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保險料수입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원군, 공주군은 하위계층의 保險料移轉率이 가장 크고 중하위, 중상위계층으로 갈수록 保險料移轉率의 수치가 점차 낮아져서 상위등급이 가장 낮은 保險料移轉率을 나타내서, 保險料가 높은 계층으로부터 保險料가 낮은 계층으로 保險料가 移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남원시 조합은 중하위계층이, 공주시 조합은 하위계층이 保險料 移轉率의 數値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상위계층이 가장 낮은 保險料 移轉率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역시 保險料 移轉效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第 4 章 統合時 保險料賦課體系 改善方案

1994년 1월부터 65개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대상 市·郡에 각각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도 기존 地域組合을 하나로 통합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통합의 기본방침 중 하나로 통합되는 군지역에 대하여 保險料 부담, 국고지원 등 시·군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료보험의 保險料 賦課에서는 조합별로 基本保險料額, 能力比例保險料의 부과대상이 되는 所得 및 財産의 종류와 評價率, 等級區間 및 等級別保險料 등이 각기 다르므로 시·군조합의 통합시 모든 지역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保險料 부과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시 保險料 부과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基本保險料를 개선하는 방안을 분석해 보았으며 다른 한편 조합의 실정에 따라 가장 적합한 代案을 선택할 수 있도록 市·郡組合에 동일한 부과테이블을 적용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시도한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는 <表 3-20>에서 제시된 3개 그룹(제1그룹: 시조합의 保險料가 군조합보다 높은 통합대상지역, 제2그룹: 시·군의료보험조합의 保險料 수준이 비슷한 통합대상지역, 제3그룹: 군조합의 保險料가 시조합보다 높은 통합대상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조합으로 남원시·군, 공주시·군, 삼척시·군 의료보험조합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각 조합의 세대주화일, 피보험자화일, 保險料 부과 및 징수화일을 이용하였다.

第 1 節 基本保險料 改善方案

직장이나 공·교의료보험이 月급여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지역의료보험에서는 정확한 所得의 파악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이의 보완책으로 受益者 負擔原則을 감안하여 세대 및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基本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基本保險料는 所得이 낮고 세대원수가 많은 低所得世帶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점차 所得의 파악률이 높아진다면 基本保險料의 비중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基本保險料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첫째, 基本保險料 전체를 폐지하고 부족되는 保險料額을 所得 및 財産의 能力比例保險料에서 충당하는 방안, 둘째, 基本保險料 중 世帶當 保險料를 폐지하고 世帶當 保險料 폐지로 부족되는 保險料는 能力比例保險料로 충당하는 방안, 셋째, 基本保險料 중 被保險者當 保險料를 폐지하고 世帶當 保險料만 부과하는 방안등을 분석하였다.

1. 基本保險料 廢止方案

基本保險料를 전부 폐지하고 能力比例保險料만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基本保險料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 부족분은 能力比例保險料의 所得 및 財産比例保險料에서 충당하되 추가되는 보험료는 등급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대안 1)과, 모든 등급에 동일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안(대안 2)의 2가지로 분석하였다.

가. 基本保險料를 폐지하고 부족되는 보험료액을 所得 및 財産의 能力比例保險料에서 累進的으로 충당하는 方案

1) 대안 1

基本保險料를 廢止하고 能力比例保險料에서 추가되는 保險料는 하위 등급의 세대는 적게, 상위등급의 세대는 많이 부과되도록 累進的으로 적용할 때,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남원시 의료보험조합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분석해 보았다.

① 남원시의 基本保險料 폐지시 조합의 보험료 감소분을 계산

세대당보험료 : 1,500원 피보험자당 보험료 : 1,300원

$$7,944\text{세대} \times 1,500\text{원} + 26,998\text{명} \times 1,300\text{원} = 47,013,400\text{원}$$

② 基本保險料의 감소액을 所得 및 財産의 能力比例保險料에서 각각 50%씩 充당하되,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추가되는 보험료가 점차 커지도록 함

○ 소득비례보험료: 보험료 充당액(25,603천원)

추가보험료	1등급	5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1,500원
	.	.
	.	.
	.	.
	28등급	14,000원
	29등급	14,500원
	30등급	15,000원

○ 재산비례보험료: 보험료 充당액(25,888천원)

추가보험료	1등급	400원
	2등급	800원
	3등급	1,200원
	.	.
	.	.
	.	.
	28등급	11,200원
	29등급	11,600원
	30등급	12,000원

③ 所得, 財産 부과세대에 각각 추가되는 보험료를 더하고, 基本保險料

를 뺀 금액과 現行 보험료와의 差額을 구함.

能力比例保險料의 등급에 따라 保險料를 差等賦課하였을 때, <表 4-1> 및 <表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료가 現行보다 減少하는 세대는 4,990세대(61.1%), 增加하는 세대는 3,172세대(38.9%)로 減少世帶數가 다소 많다.

<表 4-1> 基本保險料 廢止時 保險料減少世帶:대안1(남원시)

(單位 : 세대)

보험료감소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3천	3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	670	56	-
5천~1만원	278	618	842	508
1만~1만5천	116	351	546	414
1만5천~2만	122	161	73	46
2만~2만5천	60	62	16	4
2만5천이상	21	20	6	-
소계 : 4990	597	1882	1539	972

<表 4-2> 基本保險料 廢止時 保險料增加世帶:대안1(남원시)

(單位 : 세대)

보험료증가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3천	3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1	1	-	-
5천~1만원	90	83	3	-
1만~1만5천	78	171	104	20
1만5천~2만	130	231	119	65
2만~2만5천	59	181	153	128
2만5천이상	31	113	197	1214
소계 : 3172	389	780	576	1427

그러나 能力比例保險料의 上位等級에 해당하는 세대의 保險料가 크게 증가하므로 현재보다 保險料가 5천원 이상 증가하는 세대도 1,427세대 (17.5%)나 되며, 그 중 대부분은 月保險料 2만 5천원 이상 세대이다.

保險料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세대 비율을 月保險料額別로 보면 <圖

4-1>과 같다. 基本保險料를 폐지할 때 부족되는 保險料를 能力比例保險料에서 등급별로 누진적으로 부과하면, 하위등급은 基本保險料(世帶當保險料 및 被保險者當保險料) 폐지로 감소되는 保險料額에 비하여, 能力比例保險料에서 증가하는 保險料가 적으므로 現行보다 保險料가 감소하며 상위등급은 그 반대의 결과가 되어 하위등급에 유리하다. 그러나 상위등급의 保險料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불만이 커질 우려가 있다.

- 2) 대안 2: 基本保險料를 폐지하고 부족되는 保險料額을 能力比例保險料의 모든 등급에서 동일하게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방안

現行 남원시의 부과자료를 이용해 基本保險料를 전부 폐지하고 能力比例保險料만을 부과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대안 1과 같으나, 保險料 부족분의 충당액은 能力比例保險料의 모든 등급에서 동일하게 추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 ① 남원시의 基本保險料 폐지시 조합의 保險料 감소분을 계산

세대당보험료 : 1,500원 피보험자당 보험료 : 1,300원

$$7,944\text{세대} \times 1,500\text{원} + 26,998\text{명} \times 1,300\text{원} = 47,013,400\text{원}$$

- ② 基本保險料의 감소액을 能力比例保險料로 충당할 때 세대당추가보험료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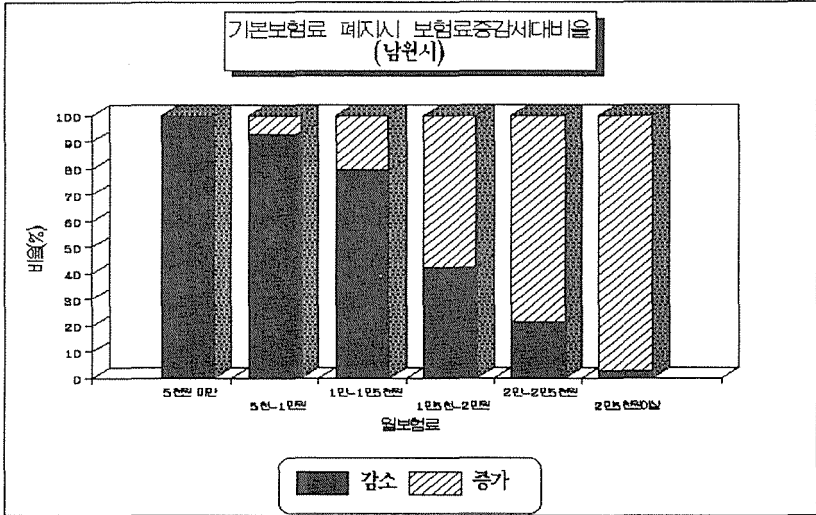
$$47,013,400\text{원} \div 11,466\text{세대} = 4,100\text{원}$$

$$(\text{소득자료 보유세대 } 7,412\text{세대} + \text{재산자료 보유세대 } 4,054\text{세대}) \\ = 11,466\text{세대}^{20)})$$

- ③ 所得, 財産 부과세대에 각각 4,100원을 더하고 基本保險料를 뺀 금액과, 現行 保險料와의 차액을 구함.

20) 所得이나 財産이 하나라도 있는 世帶를 전부 합산한 것으로,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있는 세대는 중복 計算되어, 실제 適用世帶數와는 차이가 있음.

<圖 4-1> 基本保險料 廢止時 保險料增減 世帶比率:대안1(남원시)



<表 4-3> 基本保險料 廢止時 保險料 變動:대안2(남원시)

구 분 피보험자수	무자료세대	소득 또는 재산 보유세대	소득과 재산 보유세대
1인세대	- 2,800원(197세대)	+1,300원(1,074세대)	+5,400원 (325세대)
2인세대	- 4,100원 (59세대)	0 (627세대)	+4,100원 (368세대)
3인세대	- 5,400원 (54세대)	-1,300원 (829세대)	+2,800원 (542세대)
4인세대	- 6,700원 (40세대)	-2,600원(1,113세대)	+1,500원(1,015세대)
5인세대	- 8,000원 (17세대)	-3,900원 (389세대)	+ 200원 (782세대)
6인세대	- 9,300원 (9세대)	-5,200원 (84세대)	-1,100원 (373세대)
7인세대	-10,600원 (1세대)	-6,500원 (29세대)	-2,400원 149세대)
8인세대		-7,800원 (10세대)	-3,700원 (55세대)
9인세대		-9,100원 (1세대)	-5,000원 (10세대)
10인세대			-6,300원 (10세대)
계:8,162세대	377세대	4,156세대	3,629세대

註: 符號가 -인 경우는 현재보다 保險料가 減少되는 경우이며, 符號가 +인 경우는 현재보다 保險料가 增加하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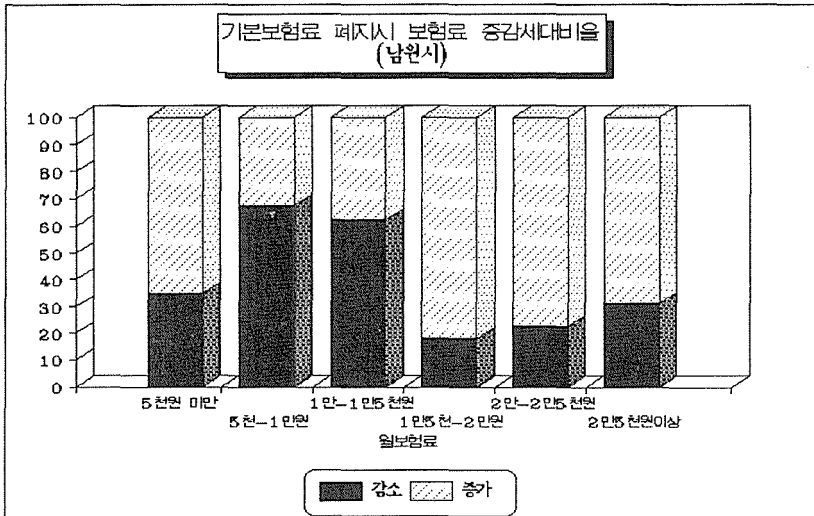
<表 4-3>의 결과를 보면 無資料世帶는 基本保險料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현재보다 保險料가 2,800원(1인세대)부터 10,600원(7인세대)까지 감소한다. 즉, 無資料世帶는 基本保險料 廢止로 인하여 保險料가 모두 免除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基本保險料를 폐지할 때는 이들 無資料世帶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의 요건이 되는 세대는 의료보호 대상으로 편입하고, 그렇지 않은 세대는 반드시 所得 또는 財産자료를 파악하여 保險料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所得 또는 財産자료가 하나라도 있는 세대 중 1인세대는 현재보다 保險料가 1,300원 증가(所得 또는 財産比例保險料 증가분 4,100원-基本保險料 2,800원= 1,300원)하고, 2인세대는 保險料増減이 없으며, 被保險者數가 3인 이상 세대는 現行보다 保險料가 감소한다.

所得과 財産 자료가 동시에 있는 세대는 基本保險料 폐지시 被保險者數 5인 이하인 세대는 保險料가 현재보다 증가하게 되며, 6인 이상이 되면 被保險者當 保險料의 감소가 크므로 전체 保險料는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基本保險料를 전부 없애고 이를 能力比例保險料로 충당할 경우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는 所得 또는 財産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1인세대 1,074세대(保險料 1,300원 증가)를 제외하면, 모두 所得과 財産자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被保險者數 1인 이상 5인 이하의 세대이다. 이들 중 특히 現行 保險料와 비교해 큰 폭의 증가가 있는 세대는 被保險者數 3인 이하 세대(保險料 증가분 2,800원부터 5,400원)인 1,235세대이다. 基本保險料 폐지시 無資料世帶에 대한 能力比例保險料의 파악이 병행된다면 어느 정도 保險料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保險料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이들 세대에 대하여는 갑자기 保險料가 크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증가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예, 3,000원)는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圖 4-2>는 基本保險料를 폐지하였을 때 保險料가 增加하는 세대와 減少하는 세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月 保險料 5천원 미만의 세대와 1만5천원 이상 세대에서 保險料가 감소하는 세대보다 증가하는 세대가 많

<圖 4-2> 基本保險料 廢止時 保險料 增減世帶比率:대안2(남원시)



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現行 보험료부과체계하에서 月보험료 5천원 미만 세대란 ①無資料世帶로 被保險者數 1인(基本保險料 2,800원) 또는 2인(基本保險料 4,100원), ②被保險者數 1인세대(基本保險料 2,800원)에 所得 1등급(1,300원) 또는 財産 1등급(1,000원)에서 3등급(1,700원)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한다. 基本保險料가 폐지되었을 때 ①의 無資料 세대는 保險料가 모두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保險料 5천원 미만 세대로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는 결국 ②에 해당되는 세대들이며, 이 경우 所得 또는 財産의 어느 한편에 保險料 4,100원이 증가하는 대신 基本保險料 2,800원이 감소되므로 증가하는 保險料 차이는 1,300원이다. 그러므로 月보험료 5천원 미만 세대에서는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의 비율이 감소하는 세대의 비율보다 높지만 증가하는 保險料는 1,3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基本保險料를 폐지하는 방안은 비교적 保險料 부담이 낮은 月보험료 5천원에서 1만5천원 사이의 세대에서는 保險料가 감소하는

세대의 비율이 높아 現行보다 유리해지는 반면, 1만5천원 이상의 세대에서는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가 감소하는 세대보다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基本保險料를 폐지하고 이의 부족분을 能力比例保險料의 모든 등급에서 일률적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무자료 세대, 所得 또는 財産부과자료를 보유한 3인 이상 세대, 所得과 財産賦課資料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6인 이상 세대는 保險料가 현재보다 감소한다. 반면, 큰 폭으로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는 所得 및 財産資料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인 또는 2인 世帶라 할 수 있다. 이처럼 基本保險料를 폐지하고 이를 能力比例保險料의 모든 등급에서 동일하게 충당할 때는 現行보다 保險料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被保險者數의 많고 적음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月보험료 수준별로 보면 保險料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가 감소하는 세대보다 많아진다.

2. 世帶當保險料 廢止方案

남원시 組合의 자료를 이용해 現行 世帶當保險料 1,500원을 폐지하고, 이의 부족분을 能力比例保險料(所得 및 財産比例保險料)의 모든 등급에 동일하게 부과하여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세대별 保險料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 ① 남원시의 世帶當保險料 폐지시 조합의 保險料 감소분을 계산

세대당보험료 : 1,500원

$$7,944\text{세대} \times 1,500\text{원} = 11,916,000\text{원}$$

- ② 基本保險料의 감소액을 능력비례보험료로 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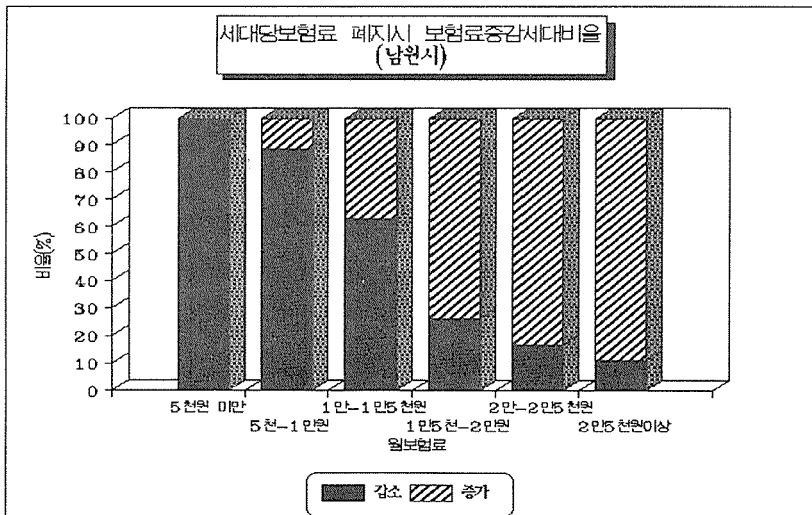
$$11,916,000\text{원} \div 11,466\text{세대} = 1,100\text{원}$$

$$\begin{aligned} &(\text{所得자료 보유세대 } 7,412\text{세대} + \text{재산자료 보유세대 } 4,054\text{세대}) \\ &= 11,466\text{세대} \end{aligned}$$

③ 所得, 財産 부과세대에 각각 1,100원을 더하고 世帶當保險料 1,500원을 뺀 금액과, 現行 보험료와의 차액을 구함.

分析結果는 無資料世帶의 保險料가 1,500원 감소하며, 所得 또는 財産 자료를 한가지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月보험료가 400원 감소하게 되고, 所得 및 財産자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月보험료가 700원 증가하는 등 保險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月保險料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保險料가 낮은 계층은 대부분의 세대에서 保險料가 감소하며, 保險料가 높은 계층은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가 많으므로 保險料가 낮은 세대가 有利하다.

<圖 4-3> 世帶當保險料 廢止時 保險料 增減世帶比率(남원시)



3. 被保險者當保險料 廢止方案

被保險者當 保險料를 폐지하고 世帶當 保險料만 부과하는 방안도 1)보
험료부족분을 能力比例保險料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방안과, 2) 세대당 保
險料에 추가로 가산하여 부과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가. 被保險者當保險料 廢止 및 能力比例保險料 가산

먼저 基本保險料 중 被保險者當 保險料를 폐지하고 世帶當 保險料만
부과하되, 被保險者當 保險料의 폐지로 부족되는 保險料는 能力比例保險
料의모든 등급에서 동일하게 충당하는 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남원시 조
합의 경우 현재 世帶當 保險料 1,500원, 被保險者當 保險料는 1,30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被保險者當 保險料를 전부 폐지할 경우는 所得 및 財産
比例保險料가 각각 3,100원씩 증가하게 된다.

<表 4-4>에서 被保險者當 保險料를 폐지하였을 경우 無資料世帶는 全
世帶에서 保險料가 세대원수 만큼 減少하게 되며, 所得 또는 財産을 한가
지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세대원수 1인의 경우는 保險料가 1,800원 증가
하며, 2인의 경우는 500원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세대원수 3인 이상의
세대는 世帶員數가 많아질수록 保險料 감소액의 크기도 점차 커지고 있
다. 所得과 財産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能力比例保險料가 6,200
원이 증가하게 되므로, 세대원수 4인까지는 被保險者當保險料 감소액이
能力比例保險料의 증가분보다 적어서 月保險料 賦課額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 되면 保險料는 減少하게 된다.

그런데 <表 4-5>에서 世帶員數別 現行 보험료부과액을 보면 1인당
能力比例保險料는 세대원수가 적은 세대가 세대원수가 많은 세대에
비하여 많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被保險者當保險料를 전액 폐지하
고 보험료부족분을 能力比例保險料에서 충당하는 방안은 세대원수가
적은 세대가 세대원수가 많은 세대보다 보험료부담이 과중해 지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된다.

<表 4-4> 被保險者當 保險料 廢止案(1) (남원시)

구 분 피보험자수	무자료세대	소득 또는 재산 보유세대	소득과 재산 보유세대
1인세대	- 1,300원(197세대)	+1,800원(1,074세대)	+4,900원(325세대)
2인세대	- 2,600원(59세대)	+500원(627세대)	+3,600원(368세대)
3인세대	- 3,900원(54세대)	-800원(829세대)	+2,300원(542세대)
4인세대	- 5,200원(40세대)	-2,100원(1,113세대)	+1,000원(1,014세대)
5인세대	- 6,500원(17세대)	-3,400원(389세대)	- 300원(783세대)
6인세대	- 7,800원(9세대)	-4,700원(84세대)	-1,600원(373세대)
7인세대	- 9,100원(1세대)	-6,000원(29세대)	-2,900원(149세대)
8인세대		-7,300원(10세대)	-4,200원(55세대)
9인세대		-8,600원(1세대)	-5,500원(10세대)
10인세대			-6,800원(10세대)
계 : 8,162	377세대	4,156세대	3,629세대

註 : 1) 현행 : 1,500원+ 1,300원×피보험자수

개선 : 소득, 재산비례보험료+ 3,100원

- 2) 부호가 -인 경우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감소되는 경우이며, 부호가 + 인 경우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임.

나. 被保險者當保險料 廢止 및 世帶當保險料 加算

基本保險料 중 被保險者當保險料를 폐지하고 世帶當保險料만을 부과하는 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현재 남원시 조합을 대상으로 被保險者當保險料를 폐지하고 保險料 부족분을 世帶當保險料에 100%加算할 경우 世帶當保險料는 5,900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세대에 부과되는 月保險料의 변동은 被保險者數 3인까지는 保險料가 증가하는데, 保險料 증가액은 1인세대가 3,100원, 2인세대 1,800원, 3인세대 500원이다. 被保險者數가 4인 이상이 되면 現行보다 保險料가 감소하게 되며 保險料의 감소액은 被保險者數가 많은 세대일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表 4-6 참조).

<表 4-5> 世帯員數別 月保険料(남원시)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당월보 험료(원)	기본보험료	능력비례보 험료	능력비례보험 료/세대원수
1	1,596(19.6%)	8,196	2,800	5,396	5,396
2	1,054(12.9%)	12,572	4,100	8,472	4,236
3	1,425(17.5%)	14,980	5,400	9,580	3,193
4	2,167(26.6%)	18,514	6,700	11,814	2,953
5	1,189(14.6%)	24,276	8,000	16,276	3,255
6	466(5.7%)	27,319	9,300	18,019	3,003
7	179(2.2%)	30,026	10,600	19,426	2,775
8	65(0.8%)	34,560	11,900	22,660	2,833
9	12(0.1%)	38,216	13,200	25,016	2,780
10	10(0.1%)	41,616	14,500	27,116	2,712

<表 4-6> 被保險者當 保険料 廢止案(2) (남원시)

구분 피보험자수	보험료 증감액
1인세대	+3,100원(1,596세대)
2인세대	+1,800원(1,054세대)
3인세대	+ 500원(1,425세대)
4인세대	- 800원(2,167세대)
5인세대	-2,100원(1,189세대)
6인세대	-3,400원 (466세대)
7인세대	-4,700원 (179세대)
8인세대	-6,000원 (65세대)
9인세대	-7,300원 (11세대)
10인세대	-8,600원 (10세대)
계	8,162세대

註 : 피보험자당 보험료 폐지 후 세대당 보험료에 가산.

현재: 1,500원+1,300×피보험자수

보험료 폐지안: 세대당보험료에 5,900원 부과

4. 基本保險料 改善方案에 따른 保險料移轉效果

基本保險料 중 世帶當保險料 또는 被保險者當 보험료를 폐지할 경우, 각 소득계층별 保險料 및 보험급여비의 비율과 保險料移轉效果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를 <表 4-7>, <表 4-8> 및 <表 4-9>로 제시하였다.

<表 4-7> 階層別 保險料 및 保險給與:대안¹⁾

(單位 : 천원)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계
남원시					
능력비례보험료	2,400원이하	2,500~6,000원	6,100원~14,600원	14,700원이상	
총보험료	135,228(8.2)	231,840(14.1)	389,400(23.7)	886,728(54.0)	1,643,196(100.0)
총급여비	161,876(11.4)	288,002(20.4)	407,340(28.8)	557,677(39.4)	1,414,895(100.0)
급여비/보험료	119.7%	124.2%	104.6%	62.9%	86.1%
보험료이전율	1.39	1.43	1.21	0.74	-
남원군					
능력비례보험료	2,900원이하	3,000~5,500원	5,600원~9,200원	9,300원이상	
총보험료	136,884(10.5)	264,720(20.3)	357,060(27.4)	546,312(41.9)	1,304,976(100.0)
총급여비	277,310(14.7)	440,096(23.3)	549,382(29.1)	622,087(32.9)	1,888,875(100.0)
급여비/보험료	202.6%	166.2%	153.9%	113.9%	144.7%
보험료이전율	1.40	1.15	1.06	0.79	-
공주시					
능력비례보험료	2,500원이하	2,600~5,000원	5,100원~11,000원	11,100원이상	
총보험료	151,164(11.2)	182,172(13.5)	308,796(22.9)	708,180(52.4)	1,350,312(100.0)
총급여비	269,417(22.3)	186,627(15.4)	330,901(27.3)	423,095(35.0)	1,210,040(100.0)
급여비/보험료	178.2%	101.4%	107.2%	59.7%	89.6%
보험료이전율	1.99	1.14	1.19	0.67	-
공주군					
능력비례보험료	4,700원이하	4,800~8,000원	8,100원~13,200원	13,300원이상	
총보험료	307,836(12.4)	465,840(18.8)	664,812(26.8)	1,042,980(42.0)	2,481,468(100.0)
총급여비	402,748(17.0)	527,651(22.3)	678,734(28.7)	753,923(31.9)	2,363,056(100.0)
급여비/보험료	130.8%	113.3%	102.1%	72.2%	95.2%
보험료이전율	1.37	1.18	1.07	0.76	-

<表 4-5> 世帯員數別 月保険料(남원시)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당월보 험료(원)	기본보험료	능력비례보 험료	능력비례보험 료/세대원수
1	1,596(19.6%)	8,196	2,800	5,396	5,396
2	1,054(12.9%)	12,572	4,100	8,472	4,236
3	1,425(17.5%)	14,980	5,400	9,580	3,193
4	2,167(26.6%)	18,514	6,700	11,814	2,953
5	1,189(14.6%)	24,276	8,000	16,276	3,255
6	466(5.7%)	27,319	9,300	18,019	3,003
7	179(2.2%)	30,026	10,600	19,426	2,775
8	65(0.8%)	34,560	11,900	22,660	2,833
9	12(0.1%)	38,216	13,200	25,016	2,780
10	10(0.1%)	41,616	14,500	27,116	2,712

<表 4-6> 被保險者當 保険料 廢止案(2) (남원시)

구분 피보험자수	보험료 증감액
1인세대	+3,100원(1,596세대)
2인세대	+1,800원(1,054세대)
3인세대	+ 500원(1,425세대)
4인세대	- 800원(2,167세대)
5인세대	-2,100원(1,189세대)
6인세대	-3,400원 (466세대)
7인세대	-4,700원 (179세대)
8인세대	-6,000원 (65세대)
9인세대	-7,300원 (11세대)
10인세대	-8,600원 (10세대)
계	8,162세대

註 : 피보험자당 보험료 폐지 후 세대당 보험료에 가산.

현재: 1,500원+1,300×피보험자수

보험료 폐지안: 세대당보험료에 5,900원 부과

4. 基本保險料 改善方案에 따른 保險料移轉效果

基本保險料 중 世帶當保險料 또는 被保險者當 보험료를 폐지할 경우, 각 소득계층별 保險料 및 보험급여비의 비율과 保險料移轉效果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를 <表 4-7>, <表 4-8> 및 <表 4-9>로 제시하였다.

<表 4-7> 階層別 保險料 및 保險給與:대안¹⁾

(單位 : 천원)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계
남원시					
능력비례보험료	2,400원이하	2,500~6,000원	6,100원~14,600원	14,700원이상	
총보험료	135,228(8.2)	231,840(14.1)	389,400(23.7)	886,728(54.0)	1,643,196(100.0)
총급여비	161,876(11.4)	288,002(20.4)	407,340(28.8)	557,677(39.4)	1,414,895(100.0)
급여비/보험료	119.7%	124.2%	104.6%	62.9%	86.1%
보험료이전율	1.39	1.43	1.21	0.74	-
남원군					
능력비례보험료	2,900원이하	3,000~5,500원	5,600원~9,200원	9,300원이상	
총보험료	136,884(10.5)	264,720(20.3)	357,060(27.4)	546,312(41.9)	1,304,976(100.0)
총급여비	277,310(14.7)	440,096(23.3)	549,382(29.1)	622,087(32.9)	1,888,875(100.0)
급여비/보험료	202.6%	166.2%	153.9%	113.9%	144.7%
보험료이전율	1.40	1.15	1.06	0.79	-
공주시					
능력비례보험료	2,500원이하	2,600~5,000원	5,100원~11,000원	11,100원이상	
총보험료	151,164(11.2)	182,172(13.5)	308,796(22.9)	708,180(52.4)	1,350,312(100.0)
총급여비	269,417(22.3)	186,627(15.4)	330,901(27.3)	423,095(35.0)	1,210,040(100.0)
급여비/보험료	178.2%	101.4%	107.2%	59.7%	89.6%
보험료이전율	1.99	1.14	1.19	0.67	-
공주군					
능력비례보험료	4,700원이하	4,800~8,000원	8,100원~13,200원	13,300원이상	
총보험료	307,836(12.4)	465,840(18.8)	664,812(26.8)	1,042,980(42.0)	2,481,468(100.0)
총급여비	402,748(17.0)	527,651(22.3)	678,734(28.7)	753,923(31.9)	2,363,056(100.0)
급여비/보험료	130.8%	113.3%	102.1%	72.2%	95.2%
보험료이전율	1.37	1.18	1.07	0.76	-

<表 4-7> 繼 續

(單位：천원)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계
삼척시					
능력비례보험료	2,800원이하	2,900~4,800원	4,900원~9,200원	9,300원이상	
총보험료	89,688(10.7)	124,440(14.9)	183,468(21.9)	438,480(52.4)	836,076(100.0)
총급여비	97,533(12.6)	148,781(19.3)	206,094(26.7)	319,598(41.4)	772,006(100.0)
급여비/보험료	108.7%	119.6%	112.3%	72.9%	92.3%
보험료이전율	1.18	1.29	1.21	0.79	-
삼척군					
능력비례보험료	3,100원이하	3,200~5,300원	5,400원~9,400원	9,500원이상	
총보험료	128,484(11.6)	191,280(17.3)	286,944(25.9)	500,628(45.2)	1,107,336(100.0)
총급여비	164,352(13.5)	230,936(19.0)	410,100(33.7)	411,837(33.8)	1,217,226(100.0)
급여비/보험료	127.9%	120.7%	142.9%	82.3%	109.9%
보험료이전율	1.16	1.10	1.30	0.75	-

註：1) 세대당 보험료를 폐지하고 보험료 부족분을 능력비례보험료에서 충당하는 방안으로, 조합의 세대당보험료는 남원시(1,500원), 남원군(1,500원), 공주시(1,500원), 공주군 (1,700원), 삼척시(1,900원), 삼척군(1,600원)이며, 능력비례보험료 증가액은 소득 및 재산비례보험료에서 각각 남원시(1,000원), 남원군(900원), 공주시(1,100원), 공주군 (1,000원), 삼척시(1,400원), 삼척군(1,000원)임.

<表 4-7>은 世帶當 保險料를 폐지하고 보험료 부족분을 能力比例 保險料의 모든 등급에서 동일하게 충당할 경우 계층별 保險料 및 保險給與費를 나타내고 있다.

保險料移轉率을 보면 하위계층에서는 공주시가 1.99로 가장 높은 보험료 이전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남원군 1.40, 남원시 1.39, 공주군 1.37, 삼척시 1.18, 삼척군 1.16으로 나타나서 하위계층은 6개 조합에서 모두 保險料 移轉效果가 있다.

중하위계층의 保險料移轉率은 남원시가 1.43으로 가장 높고 삼척시 1.29, 남원군 1.15, 공주군 1.18, 공주시 1.14, 삼척군 1.10으로 역시 保險料 移轉效果를 보고 있다.

중상위계층도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保險料 移轉效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계층의 保險料 移轉率은 6개 조합에서 모두 1 이하로 보험급여비에 비해 보험료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保險料收入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表 4-8>에서는 被保險者當 保險料를 폐지하고 保險料 부족분을 世帶當 保險料에 가산하였을 때 保險料 移轉率을 분석해 보았다.

<表 4-8> 階層別 保險料 및 保險給與:대안2¹⁾

(單位 : 천원)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계
남원시					
능력비례보험료	2,400원이하	2,500~6,000원	6,100원~14,600원	14,700원이상	
총보험료	184,728(11.1)	246,672(14.9)	375,156(22.6)	851,244(51.3)	1,657,800(100.0)
총급여비	161,876(11.4)	288,002(20.4)	407,340(28.8)	557,677(39.4)	1,414,895(100.0)
급여비/보험료	87.6%	116.8%	108.6%	65.5%	85.3%
보험료이전율	1.02	1.37	1.27	0.77	-
남원군					
능력비례보험료	2,900원이하	3,000~5,500원	5,600원~9,200원	9,300원이상	
총보험료	190,512(14.6)	272,640(20.8)	338,856(25.9)	506,640(38.7)	1,308,648(100.0)
총급여비	277,310(14.7)	440,096(23.3)	549,382(29.1)	622,087(32.9)	1,888,875(100.0)
급여비/보험료	145.6%	161.4%	162.1%	122.8%	144.3%
보험료이전율	1.01	1.12	1.12	0.85	-
공주시					
능력비례보험료	2,500원이하	2,600~5,000원	5,100원~11,000원	11,100원이상	
총보험료	187,056(13.8)	188,532(13.9)	299,712(22.1)	679,632(50.1)	1,354,932(100.0)
총급여비	269,417(22.3)	186,627(15.4)	330,901(27.3)	423,095(35.0)	1,210,040(100.0)
급여비/보험료	144.0%	100.0%	110.4%	62.3%	89.3%
보험료이전율	1.62	1.11	1.24	0.70	-
공주군					
능력비례보험료	4,700원이하	4,800~8,000원	8,100원~13,200원	13,300원이상	
총보험료	363,372(14.8)	466,584(19.0)	638,520(26.0)	991,740(40.3)	2,460,216(100.0)
총급여비	402,748(17.0)	527,651(22.3)	678,734(28.7)	753,923(31.9)	2,363,056(100.0)
급여비/보험료	110.8%	113.1%	106.6%	76.0%	96.0%
보험료이전율	1.15	1.17	1.10	0.79	-

<表 4-8> 繼 續

(單位 : 千圓)

구 분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계
삼척시					
능력비례보험료	2,800원이하	2,900~4,800원	4,900원~9,200원	9,300원이상	
총보험료	144,384(16.3)	139,152(15.7)	188,160(21.2)	413,940(46.7)	885,636(100.0)
총급여비	97,533(12.6)	148,781(19.3)	206,094(26.7)	319,598(41.4)	772,006(100.0)
급여비/보험료	67.6%	106.9%	109.5%	77.2%	87.2%
보험료이전율	0.77	1.23	1.26	0.89	-
삼척군					
능력비례보험료	3,100원이하	3,200~5,300원	5,400원~9,400원	9,500원이상	
총보험료	166,932(15.3)	194,052(17.8)	264,756(24.3)	464,712(42.6)	1,090,452(100.0)
총급여비	164,352(13.5)	230,936(19.0)	410,100(33.7)	411,837(33.8)	1,217,226(100.0)
급여비/보험료	98.5%	119.0%	154.9%	88.6%	111.6%
보험료이전율	0.88	1.07	1.39	0.79	-

註 : 1) 피보험자당 보험료를 폐지하고 보험료부족분을 세대당보험료에 가산하였을 경우로 현행 피보험자당보험료는 남원시(1,300원), 남원군(1,300원), 공주시(1,100원), 공주군 (1,100원), 삼척시(1,600원), 삼척군(1,300원)이며, 세대당보험료 증가액은 남원시(5,900 원), 남원군(6,000원), 공주시(5,300원), 공주군(5,600원), 삼척시(7,000원), 삼척군(5,700 원)임.

保険料移轉率은 하위계층은 공주시가 1.62로 가장 높고 남원시·군은 거의 1에 가까우며, 삼척시·군은 1보다 적게 나타나 오히려 保険料수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하위 계층은 남원시가 1.37로 가장 높고 삼척시가 1.23으로 하위계층보다 오히려 保険料 이전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상위계층은 삼척군이 1.39로 가장 높으며 남원시 1.27, 공주시 1.24, 삼척시 1.26 등으로 역시 保険料이전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상위계층은 保険料이전율이 모든 조합에서 1이하로 가장 크게 保険料수입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4-9>에서는 現行 保険料부과방식에서의 保険料移轉率과 세대당 保險料를 폐지하였을 때(대안 1)의 保険料移轉率, 그리고 被保險者當 保險料를 폐지하였을 때(대안 2)의 保険料移轉率을 비교해 보았다.

<表 4-9> 保險料移轉率 變化

구분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
남원시				
현행	1.24	1.42	1.24	0.74
대안1 ¹⁾	1.39	1.43	1.21	0.74
대안2 ²⁾	1.02	1.37	1.27	0.77
남원군				
현행	1.24	1.15	1.09	0.80
대안1	1.40	1.15	1.06	0.79
대안2	1.01	1.12	1.12	0.85
공주시				
현행	1.83	1.12	1.21	0.68
대안1	1.99	1.14	1.19	0.67
대안2	1.62	1.11	1.24	0.70
공주군				
현행	1.31	1.19	1.08	0.76
대안1	1.37	1.18	1.07	0.76
대안2	1.15	1.17	1.10	0.79
삼척시				
현행	0.95	1.22	1.22	0.84
대안1	1.18	1.29	1.21	0.79
대안2	0.77	1.23	1.26	0.89
삼척군				
현행	1.07	1.09	1.33	0.76
대안1	1.16	1.10	1.30	0.75
대안2	0.88	1.07	1.39	0.79

註 : 1) 대안 1은 世帶當 保險料를 폐지하고 保險료 不足分을 능력비례 보험료로
충당하였을 경우임

2) 대안 2는 被保險者當 保險料를 폐지하고 保險料 不足分을 세대당 보험료에
加算하여 부과하였을 경우임

現行 보험료부과체계의 保險料移轉率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대당
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안 1은 모든 조합에서 하위계층 및 중하위계층의 保
險料移轉率이 커지고, 중상위계층 및 상위계층의 保險料移轉率은 같거나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안 1의 방법은 所得이 낮은 계층에의 保險料移轉效果를 높여주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保險料수입에의 寄與度を 높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안 2의 被保險者當 保險料를 폐지하고 保險料부족분을 世帶當保險料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방안은 所得이 낮은 하위 및 중하위계층의 保險料移轉率은 現行보다 낮아지고, 중상위 및 상위계층의 保險料移轉率은 現行보다 높아져 오히려 所得이 낮은 계층이 現行보다 保險料를 더 많이 부담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分析을 위해 다음과 같은 段階를 거쳤다.

第1段階：시조합 및 군조합의 保險料 賦課화일, 世帶主화일, 被保險者 화일을 이용하여 現行 所得, 財産의 등급區間別 세대수를 구하고, 등급區間別 세대수에 등급區間別 보험료액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 요소별(所得, 재산별) 총부과보험료액을 구하였다.

第2段階：現行 시·군의 1등급보험료 및 30등급의 등급구간과 등급별 보험료액을 고려하여, 統合市組合 1등급의 상한금액과 30등급의 하한금액을 결정한 후, 所得과 財産比例保險料의 등급구간을 계산하였다. 이 등급구간에 의한 통합조합의 세대수 분포를 구하여 등급區間別 保險料를 구하였다.

第3段階：새로이 만들어진 등급테이블에 의한 세대별보험료를 계산한 후, 現行 부과되고 있는 保險料와의 차액을 구하고 증가 또는 감소액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가. 基本現況

1) 組合現況

남원시의 所得比例保險料는 종합所得 및 신고所得을 근거로 부과되며, 종합所得은 總世帶의 29%, 신고所得은 62.2%의 세대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表 4-10 참조).

반면, 남원군조합의 所得比例保險料는 농지所得이 전세대의 72.9%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신고所得은 19.7%, 종합所得은 11.3%에 대해 부과되고 있어, 대부분의 세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所得比例保險料가 부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원시조합의 財産比例保險料를 보면 課稅資料에 대해 賦課하는 세대가 49.7%인데 비해 신고자료에 대한 부과는 0.1%로 극히 미미하다. 남원군조합은 건물이나 토지의 課稅資料에 대한 賦

課가 87.7%로 군조합의 財産에 대한 보유율이 훨씬 높다.

<表 4-10> 能力比例保險料의 適用世帶 比率(남원시)

(單位 : %)

지 역	소득비례보험료 ¹⁾			재산비례보험료	
	종합	농지	기타소득	과세자료	신고자료
남원시	29.0	2.9	62.2	49.7	0.1
남원군	11.3	72.9	19.7	87.7	-

註 : 1) 종합소득, 농지소득, 기타소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世帶의 比率로 한 세대
대가 한 가지 이상 所得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 가지 所得
보유세대를 단순 合計하면 100%를 넘을 수도 있음.

保險料 부과자료상의 所得범위는 市.郡間 큰 차이가 있어 綜合所得의
경우 남원시가 최하 3만원에서 최고9,490만원까지 분포되고 있으며 평균
소득액은 348만원이나, 남원군은 최하소득이 1만원에서 최고6,661만원까지
이고, 평균소득액은 189만원으로 市가 郡의 거의 2배 수준이다. 그리고,
財産價額도 남원시조합은 건물 평균가액이 1,175만원, 토지 1,486만원인
데 비하여, 남원군은 건물 255만원, 토지 1,086만원에 불과하다(表 4-11
참조).

<表 4-11> 所得 및 財産資料 現況(남원시·군): 1994년 6월 말 현재

	남원시	남원군
총세대(A)	8,162세대	8,627세대
1. 농지소득		
- 유자료세대(B)	232세대(B/A=2.9%)	6,417세대(B/A=74.4%)
- 범위	5만원~481만원	1만원~1,029만원
- 평균	88만원	111만원
- 중위수(Median)	80만원	96만원
- 최빈수(Mode)	51만원(7세대)	29만원(52세대)
2. 종합소득		
- 유자료세대(C)	2,362세대(C/A=28.9%)	995세대(C/A=11.5%)
- 범위	3만원~9,490만원	1만원~6,661만원
- 평균	348만원	189만원
- 중위수(Median)	133만원	67만원
- 최빈수(Mode)	86만원(23세대)	29만원(19세대)
3. 신고소득		
- 유자료세대(D)	5,058세대(D/A=62.0%)	1,734세대(D/A=20.1%)
- 범위	12만원~120,020만원	1~7등급으로 표시
- 평균	170만원	
- 중위수(Median)	120만원	
- 최빈수(Mode)	90만원(1,296세대)	
4. 건물가액		
- 유자료세대(E)	3,183세대(E/A=39.0%)	6,960세대(E/A=80.7%)
- 범위	4만원~88,067만원	2만원~29,015만원
- 평균	1,175만원	255만원
- 중위수(Median)	507만원	115만원
- 최빈수(Mode)	360만원(71세대)	26만원(51세대)
5. 토지가액		
- 유자료세대(F)	3,781세대(F/A=46.3%)	7,360세대(F/A=85.3%)
- 범위	2만원~104,958만원	1만원~40,274만원
- 평균	1,486만원	1,086만원
- 중위수(Median)	638만원	852만원
- 최빈수(Mode)	115만원(87세대)	28만원(16세대)

2) 保險料 賦課現況

남원시와 남원군의 基本保險料는 世帶當保險料 1,500원, 被保險者當保險料 1,300원으로 동일하여 통합시 基本保險料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나 能力比例保險料의 구간별 보험료는 다음 <表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원시 조합과 남원군 조합이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남원군 조합은 保險料 부과에 5요소 방식을 채택하여 農地所得과 綜合所得에 대해 각각 별도의 等級 테이블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남원시는 소득보험료의 등급구간이 1등급(1만원~2십만원)부터 30등급(1천2백만원 이상), 등급 區間別 保險料는 1等級 1,300원부터 30等級 31,600원이다. 반면 남원군은 所得比例保險料를 農地所得과 綜合所得으로 구분하여 2가지 등급테이블을 적용하고 있으며, 農地所得은 등급구간이 1등급(1만원~2십만원)부터 30등급(4백5십만원 이상), 등급區間別 保險料는 1等級500원부터 30等級 12,600원이다. 綜合所得은 등급구간이 1등급(1만원~2십만원)부터 30등급(5백만원 이상), 등급 區間別 保險料는 1等級 800원부터 30等級 19,200원이다.

그런데 남원군은 所得比例保險料의 부과대상자 중 73%를 차지하는 農地所得의 등급별 보험료가 매우 낮다. 農地所得보험료가 낮다고 하더라도 農地所得과 綜合所得을 동시에 보유하는 세대수가 많다면 조합의 保險料收入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남원군조합은 적용세대 가운데 所得比例保險料의 부과대상 항목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農地所得과 綜合所得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대가 528세대(6.0%), 農地所得과 其他所得 보유자가 254세대(3.0%), 綜合所得과 其他所得 보유자가 119(1.0%)세대로 극히 적다(表 4-13 참조).

<表 4-12> 所得比例保険料の 等級區間別 金額 및 保険料(남원시·군)

등급	남원시(종합소득)		남원군(종합소득)		남원군(농지소득)	
	소득금액 (만원)	보험료 (원)	소득금액 (만원)	보험료 (원)	소득금액 (만원)	보험료 (원)
1	1~20	1,300	1~20	800	1~20	500
2	21~30	1,800	21~30	1,000	21~30	900
3	31~40	2,400	31~40	1,300	31~40	1,200
4	41~50	3,000	41~50	1,700	41~50	1,400
5	51~60	3,600	51~60	2,100	51~60	1,600
6	61~70	4,200	61~70	2,400	61~70	1,900
7	71~80	4,800	71~80	2,800	71~80	2,200
8	81~90	5,400	81~90	3,100	81~90	2,500
9	91~100	6,000	91~100	3,500	91~100	2,800
10	101~110	6,600	101~110	3,900	101~110	3,100
11	111~120	7,200	111~120	4,200	111~120	3,400
12	121~130	7,800	121~130	4,600	121~130	3,700
13	131~140	8,500	131~140	5,000	131~140	3,900
14	141~160	9,200	141~150	5,300	141~150	4,200
15	161~180	10,100	151~160	5,700	151~160	4,500
16	181~200	11,000	161~170	6,100	161~170	4,800
17	201~220	12,000	171~180	6,400	171~180	5,100
18	221~250	13,200	181~190	6,800	181~190	5,400
19	251~280	14,700	191~200	7,200	191~200	5,700
20	281~320	16,500	201~210	7,500	201~210	6,000
21	321~360	18,500	211~220	7,900	211~220	6,200
22	361~410	21,000	221~230	8,200	221~230	6,500
23	411~470	23,500	231~260	9,000	231~240	6,800
24	471~530	25,600	261~290	10,100	241~260	7,300
25	531~600	26,600	291~320	11,200	261~290	7,800
26	601~720	27,600	321~360	12,400	291~330	8,500
27	721~860	28,600	361~400	13,900	331~370	9,400
28	861~1020	29,600	401~450	15,500	371~410	10,400
29	1021~1200	30,600	451~500	17,400	411~450	11,400
30	1201이상	31,600	501이상	19,200	451이상	12,600

<表 4-13> 2가지 所得資料의 동시보유세대(남원군)

(單位 : 세대)

구 분	보유세대 ¹⁾
농지소득과 종합소득	528(6.0%)
농지소득과 기타소득	254(3.0%)
종합소득과 기타소득	119(1.0%)

註 : 1) ()내는 전체 世帶에 대한 比率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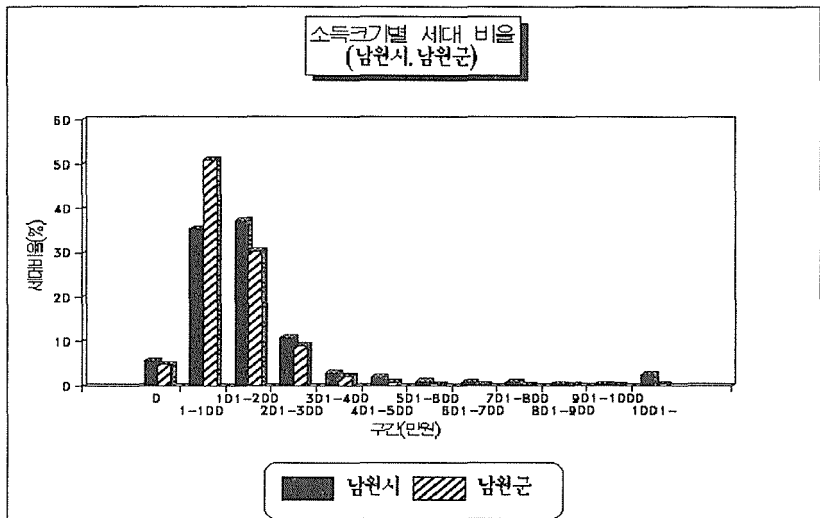
能力比例保險料의 또 다른 부분은 財産比例保險料이다. 남원시조합의 財産比例保險料는 1등급(1만원~1백만원)부터 30등급(6천만원 이상), 등급 간 保險料는 1等級 1천원부터 30等級 26,000원이며, 남원군 조합의 財産比例保險料는 1등급(1만원~1백만원)부터 30등급(3천5백천만원 이상), 등급 간 保險料는 1等級 300원부터 30等級 12,300원이다(表 4-14 참조).

남원시·군조합에서 保險料 賦課資料로 이용하고 있는 소득(綜合所得, 農地所得, 其他所得 등)금액의 크기에 따른 세대의 비율을 보면, 소득자료가 없는 세대의 비율은 시·군이 비슷하다. 남원군조합은 總所得 1백만원 이하 구간에 가장 많은 세대가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세대가 소득금액 3백만원 이하에 속해 있다. 반면, 남원시의 경우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구간과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의 구간에 속한 세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며, 세대수는 적지만 소득의 범위가 2백만원 이상되는 세대도 넓게 분포되어 있다(圖 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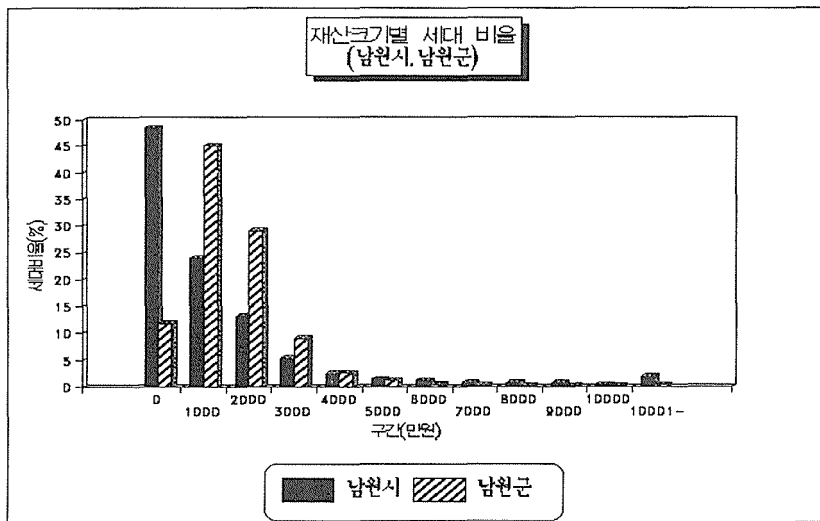
<表 4-14> 財産比例保険料の等級區間別 金額 및 保険料(남원시·군)

등급	남원시		남원군	
	재산가액 (만원)	보험료 (원)	재산가액 (만원)	보험료 (원)
1	1~100	1,000	1~100	300
2	101~150	1,300	101~120	400
3	151~200	1,700	121~130	500
4	201~250	2,100	131~150	600
5	251~300	2,500	151~170	700
6	301~350	2,900	171~190	800
7	351~400	3,300	191~220	900
8	401~450	3,700	221~250	1,000
9	451~500	4,200	251~280	1,100
10	501~560	4,700	281~320	1,200
11	561~630	5,200	321~360	1,300
12	631~710	5,700	361~410	1,500
13	711~800	6,300	411~460	1,700
14	801~890	6,900	461~520	1,900
15	891~1000	7,500	521~590	2,100
16	1001~1120	8,300	591~670	2,300
17	1121~1260	9,200	671~760	2,600
18	1261~1420	10,100	761~870	2,900
19	1421~1590	11,300	871~980	3,300
20	1591~1780	12,500	981~1120	3,700
21	1781~2000	13,700	1121~1270	4,200
22	2001~2240	14,900	1271~1440	4,800
23	2241~2520	16,100	1441~1640	5,600
24	2521~2820	17,300	1641~1860	6,500
25	2821~3220	18,600	1861~2110	7,400
26	3221~3720	20,000	2111~2390	8,200
27	3721~4320	21,500	2391~2720	9,100
28	4321~5120	23,000	2721~3090	10,100
29	5121~6000	24,500	3091~3500	11,200
30	6001 이상	26,000	3501 이상	12,300

<圖 4-4> 所得크기별 世帯比率(남원시·군)



<圖 4-5> 財産크기별 世帯比率(남원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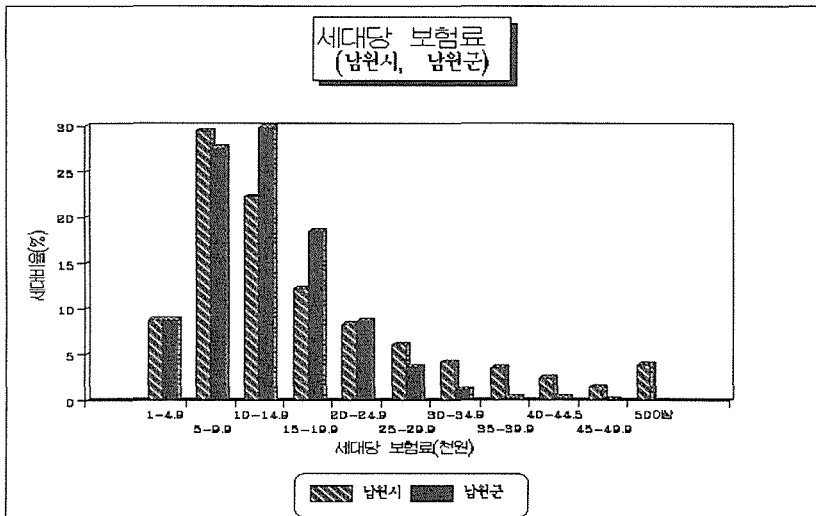


財産자료가 전혀 없어 財産比例保險料가 부과되지 않는 세대는 남원 시에서 훨씬 많으며 남원군은 2천만원 이하 財産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圖 4-5 참조).

3) 世帶當 保險料

남원시·군의 現行 세대당 保險料의 분포를 보면 남원시는 5천원에서 1만원까지의 구간에 가장 많은 세대가 포함되어 있고 1만원 이상의 구간에 도 비교적 완만하게 분포하고 있다. 반면, 남원군의 경우는 5천원에서 1만원까지의 구간과 1만원에서 1만5천원 사이의 구간에 거의 60% 정도의 세대가 속해 있으며, 保險料의 분포범위가 시조합보다 좁다.

<圖 4-6> 世帶當保險料(남원시·군)



나. 統合時 同一等級데이블 適用

1) 現行 남원시 等級데이블 適用

① 남원군조합에 現行 남원시 等級 賦課基準을 적용하되, 要素別 評價率은 남원군 評價率을 적용하는 방안

남원군조합의 保險料부과자료에 現行 남원시조합의 所得 및 財産 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 및 등급區間別 保險料를 적용하되 評價率은 現行 남원군조합에서 적용하는 評價率(예: 農地所得 평가율 100%)을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表 4-15> 現行 남원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增減額(1)

(單位 : 千圓)

현 행			시등급 적용시	증감액
-농지	: 100%		-농지 : 100%	
-종합	: 100%		-종합 : 100%	
-기타소득	: 100%		-기타소득 : 100%	
-재산	: 100%		-재산 : 100%	
-기본	: 세대 1,500원 피보험자 1,300원		-기본 : 세대 1,500원 피보험자 1,300원	
계	111,503		193,769	+82,266
기	소계 52,855		52,855	-
본	세대당 13,202		13,202	-
	피보험자당 39,653		39,653	-
능	소계 58,648		140,914	+82,266
력	소득비례 25,878		47,46	+21,588
	재산비례 32,770		93,44	+60,678

남원군 保險料 賦課資料에 남원시 等級 및 評價率을 적용하였을 때,

남원군 조합의 月 總保險料는 약 8천2백30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表 4-15 참조).

그리고 個別 세대의 保險料는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데 남원시의 所得 및 財産의 등급구간 保險料가 남원군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保險料가 감소하는 세대도 947세대(11.0%)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16 참조). 이처럼 保險料가 감소한 세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현재 남원군 조합에서 農地所得과 綜合所得에 대해 각각 별도의 保險料 等級 테이블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소득을 동시에 보유한 세대는 오히려 남원시에서 적용하는 하나의 소득등급 테이블을 사용하면 오히려 保險料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保險料가 감소하는 947세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7,680세대는 保險料가 증가하게 되며,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 중 月 保險料가 5,000원 이상 증가하는 세대도 5,410세대나 되어 본 안의 적용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表 4-17 참조).

<表 4-16> 現行 남원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減少 世帶 分布(1)

(單位 : 세대)

보험료감소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252	1	-	-	-	-
5천~1만원	449	6	3	4	2	1
1만~1만5천	123	2	3	3	10	19
1만5천~2만	4	1	1	1	3	23
2만~2만5천	1	-	-	-	-	20
2만5천이상	-	-	-	-	-	15
소 계 : 947	829	10	7	8	15	78

<表 4-17> 現行 남원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增加 世帶 分布(1)

(單位 : 세대)

보험료증가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147	114	71	12	12	141
5천~1만원	142	202	227	312	292	731
1만~1만5천	74	105	107	147	239	1738
1만5천~2만	3	5	13	14	27	1518
2만~2만5천	-	-	-	2	3	805
2만5천이상	-	-	-	-	-	477
소 계 : 7,680	366	426	418	487	573	5,410

②남원군조합에 現行 남원시 等級基準 및 評價率 적용

남원군조합의 保險料賦課資料에 現行 남원시조합의 所得 및 財産 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와 평가율을 적용하여 保險料 增減額을 분석하였다.

남원군조합의 保險料부과자료에 남원시조합의 等級區間 및 保險料를 적용하고 農地所得에 대한 評價率도 시 평가율(10%)대로 하였을 경우, 農地所得의 評價率이 現行 100%에서 10%로 감소하더라도 남원시의 所得 및 財産의 等級區間 保險料가 남원군에 비해서 보다 높기 때문에 남원군 月 保險料는 약 5천만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18 참조).

그런데 남원군 피보험자들의 保險料 增減額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가 감소하는 세대보다 훨씬 많다.

<表 4-19>에서 保險料가 감소되는 1,436세대는 농업소득만 보유하고 財産은 없는 세대이며, <表 4-20>의 保險料가 증가하는 7,191세대는 綜合 所得과 財産자료를 보유한 세대일 것으로 추측된다.

本案의 적용시는 남원군조합 대상세대의 83%에 해당하는 7,191세대의 保險料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피보험자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表 4-18> 現行 남원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増減額(2)

(單位 : 천원)

현 행			시등급 적용시	증감액
-농지	:	100%	-농지	: 10%
-종합	:	100%	-종합	: 100%
-기타소득	:	100%	-기타소득	: 30%
-재산	:	100%	-재산	: 100%
-기본	:	세대 1,500원 피보험자 1,300원	-기본	:세대 1,500원 피보험자 1,300원
계		111,503	162,467	+50,964
기 본	소계	52,855	52,855	-
	세대당	13,202	13,202	-
	피보험자당	39,653	39,653	-
능 력	소계	58,648	109,612	+50,964
	소득비례	25,878	16,164	-9,714
	재산비례	32,770	93,448	+60,678

<表 4-19> 現行 남원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減少 世帶 分布(2)

(單位 : 세대)

보험료감소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263	1	-	-	-	-
5천~1만원	517	32	12	7	2	1
1만~1만5천	203	48	16	11	12	21
1만5천~2만	62	42	15	12	5	26
2만~2만5천	40	15	8	4	2	21
2만5천이상	10	11	1	1	-	15
소 계 :	1,436	1,095	149	52	35	21
						84

<表 4-20> 現行 남원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군조합
保險料 增加 世帯 分布(2)

(單位 : 세대)

보험료증가액 월보험료	1천 원미만	1천 ~ 2천	2천 ~ 3천	3천 ~ 4천	4천 ~ 5천	5천 원이상
5천 원이하	196	106	52	15	15	102
5천 ~ 1만원	278	401	379	335	175	232
1만 ~ 1만5천	251	446	487	430	319	326
1만5천 ~ 2만	163	213	241	247	190	397
2만 ~ 2만5천	80	98	88	100	74	301
2만5천 이상	25	36	47	45	27	274
소 계 7,191	993	1,300	1,294	1,172	800	1,632

③ 現行 남원시 等級賦課 기준을 적용하되, 조정된 評價率적용

남원시는 所得比例保險料 부과의 主財源이 綜合所得과 신고소득이며, 남원군조합은 農地所得과 신고소득이 된다. 그런데 남원시조합의 綜合所得 자료과악물은 29% 정도이고, 나머지 課稅資料가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주민이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소득을 대상으로 所得比例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이 신고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상 소득금액과의 衡平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신고소득에 대하여 30%의 評價率을 적용하여 평가절하하고 있다.

남원군조합에서는 所得比例保險料의 대부분을 農地所得에 대해 賦課하고 있다. 農地所得은 地域醫療保險이 시작된 초기에는 지방세인 농지세 자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이 매년 인상되어(1994년 현재 年 560만원), 대부분의 농가가 농지세의 免稅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農地所得에 대한 保險料는 조합이 나름대로 推計해서 사용하고 있다. 郡地域의 農地所得은 경작작물, 경작지 면적, 농지등급, 작황상태 등에 따라 비교적 현실과 근접하게 推定할 수 있는 반면, 市組合에서의 신고소득은 신고된 금액에 대해 조합이 실질적으로 檢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그러한 權限도 없다.

따라서 시·군 통합시 군지역의 農地所得에 대하여는 100%의 評價率을

적용하고, 시조합의 신고소득은 20~30%의 評價率을 적용하여 保險料를 부과하는 것은 所得에 대해 농촌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保險料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現行 保險料 賦課體系에서는 군지역은 農地所得 뿐 만 아니라, 農地所得을 산출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도 별도의 財産比例保險料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農地所得에 대한 評價率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시·군 통합시 남원군조합의 農地所得 評價率을 現行100%에서 50%로 引下하고, 財産에 대한 評價率도 50%로 조정하여 남원시조합의 등급기준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이 경우 남원군조합의 月 總保險料는 약 1천3백만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保險料의 증가분은 所得比例保險料에서 약 7백만원, 財産比例保險料에서 약 6백만원이 증가하게 된다(表 4-21 참조).

남원군의 評價率을 調整하고 남원시의 등급테이블을 적용하였을 때, 保險料가 現行보다 감소하는 세대가 978세대, 증가하는 세대가 7,649세대로 88.7%에 해당하는 세대의 保險料가 증가한다(表 4-22 및 表 4-23 참조). 그러나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 중 保險料의 증가액이 2천원 미만의 세대가 6,623세대(증가세대의 86.6%)이며, 保險料가 2천원 이상 증가하는 세대는 13.4%에 불과하다(表 4-23 참조). 그런데 本案을 적용할 때 郡組合의 전체 保險料는 現行보다 약 1천3백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保險料가 2천원 이상 증가하는 세대(1,026세대)에 대해서는 保險料 引上額을 2천원으로 상한선을 둔다 하더라도 감소되는 保險料는 약 4백50만원 정도이다(表 4-24 참조).

따라서 本案을 적용할 때 증가하는 保險料가 총 1천3백만원(表 4-21 참조)이므로 郡組合의 總保險料는 약 8백50만원이 증가하므로 보험재정의 赤字는 가져오지 않는다.

<表 4-21> 現行 남원시 保險料 賦課基準 및 調整評價率 적용시 남원군
조합 保險料 增減額

(單位 : 千圓)

현 행		시등급 적용시	증감액
-농지	: 100%	-농지 : 50%	
-종합	: 100%	-종합 : 80%	
-기타소득	: 100%	-기타소득 : 30%	
-재산	: 100%	-재산 : 50%	
-기본	: 세대 1,500원 피보험자 1,300원	-기본 : 세대 1,500원 피보험자 1,300원	
계	111,503	124,925	+13,422
기 본	소 계	52,855	-
	세대당	13,202	-
	피보험자당	39,653	-
능 력	소 계	58,648	+13,422
	소득비례	25,878	+ 7,283
	재산비례	32,770	+ 6,139

<表 4-22> 現行 남원시 保險料 賦課基準 및 調整評價率 적용시 남원군
조합 保險料 減少 世帶 分布

(單位 : 세대)

보험료감소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142	8	-	-	-	-
5천~1만원	463	9	5	7	5	1
1만~1만5천	193	-	6	4	10	20
1만5천~2만	22	1	-	2	4	23
2만~2만5천	15	1	-	1	-	20
2만5천이상	-	-	-	1	-	15
소계 : 978	835	19	11	15	19	79

<表 4-23> 現行 남원시 保險料 賦課基準 및 調整評價率 적용시 남원군
조합 保險料 增加 世帶 分布

(單位 : 세대)

보험료증가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348	104	38	28	29	53
5천~1만원	1225	417	29	22	26	162
1만~1만5천	1123	1118	35	12	13	36
1만5천~2만	597	859	69	17	4	15
2만~2만5천	283	345	94	25	9	38
2만5천이상	74	130	65	45	33	129
소계 7,649	3650	2973	330	149	114	433

<表 4-24> 現行 保險料와의 差額別 保險料 增減額(남원군)

(單位 : 원)

현행 보험료와의 차액	증감보험료	세대수
5천원 이상 감소	-835,900	79
4천~5천원 감소	-84,500	19
3천~4천원 감소	-50,900	15
2천~3천원 감소	-26,100	11
1천~2천원 감소	-23,400	19
0~1천원 감소	-201,500	835
1천원 이하 증가	+2,406,900	3,650
1천~2천원 증가	+4,206,100	2,973
2천~3천원 증가	+915,000	330
3천~4천원 증가	+539,600	149
4천~5천원 증가	+574,600	114
5천원 이상 증가	+4,484,400	433

2) 새로운 同一等級 테이블 適用

현재 남원시조합과 남원군조합이 각각 별도의 기준에 의해 保險料를 賦課하고 있으나, 시·군조합이 統合되어 하나의 조합이 되면 同一한 保險料賦課基準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미 앞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等級區間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가 큰 차이가 나는 남원시·군의 保險料 등급을 現行 保險料 수준에 큰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통일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동일 보험자가 관할하는 조합내에서 별개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면 같은 市 지역내에서도 거주지를 옮김에 따라 保險料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本 研究에서는 우선 남원시와 남원군의 現行 所得等級 및 等級別 保險料에 따른 所得 및 財産比例保險料를 계산한 후, 이의 합계액을 통합 남원시가 될 경우 필요한 能力比例保險料의 소요액이라고 추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등급테이블을 작성하여 보았다. 새로운 등급테이블의 작성방법은 1990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당시 보건사회부가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시달한 地域醫療保險 保險料賦課指針에 제시된 방법에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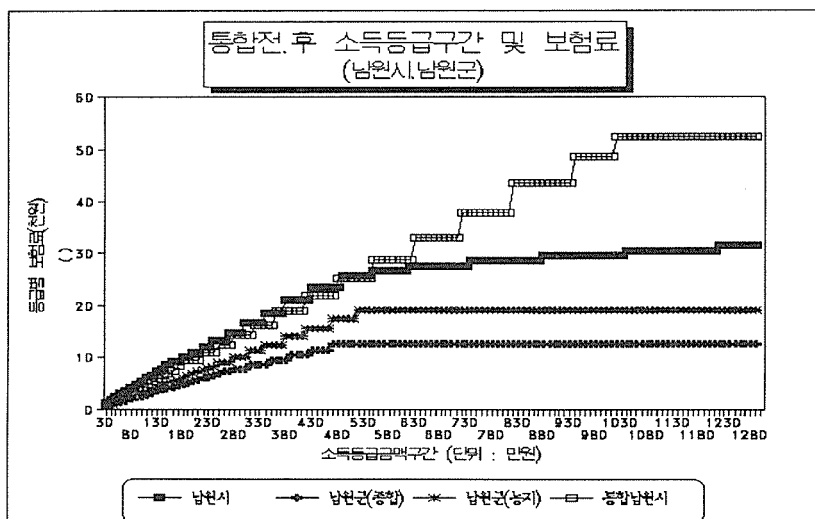
통합 남원시의 소득등급은 現行 등급을 고려하여 1等級 1만원~20만원, 30等級 1천만원 이상으로 設定하고, 등급간 保險料는 1等級 600원, 30等級 52,400원으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등급구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소득비례 保險料의 區間別 保險料는 남원시의 경우 많은 세대가 분포되고 있는 下位等級(특히 1~2등급)의 피보험자는 현재보다 所得比例保險料가 500원~700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上位等級으로 갈수록 現行보다 많은 保險料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圖 4-7 참조).

남원군조합 피보험자는 統一等級適用에 따라 農地所得을 가진 피보험자는 거의 모든 등급에서 保險料가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保險料의 증가율은 上位等級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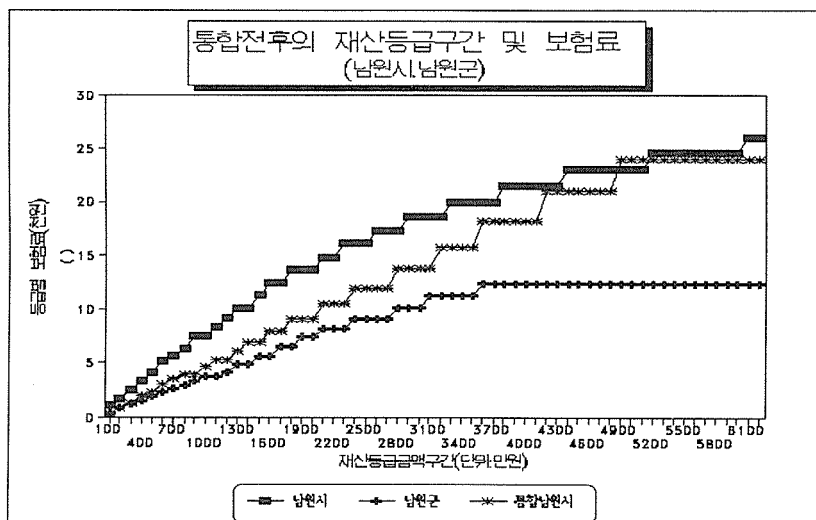
統合後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를 <圖 4-8>에서 보면 現行 남원시조합의 피보험자는 최고등급을 제외한 全等級에서 統合後 財産比例保險料의 保險料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원군조합은 1~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서 모두 保險料가 증가하고 있으며, 上位等級으로 갈수록 保險料의 증가폭이 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남원시·군과 같이 현재 能力比例保險

<圖 4-7> 統合前後 所得等級區間 및 保險料(남원시·군)



<圖 4-8> 統合前後 財産等級區間 및 保險料(남원시·군)



<表 4-25> 同一 賦課基準 적용시 남원시·군의 保險料 變動

(單位：천원)

현		동일등급적용	
군	市	郡+市	
-농지 : 100%	-농지 : 10%	-농지 : 50%	
-종합 : 100%	-종합 : 100%	-종합 : 100%	
-기타소득 : 100%	-기타소득 : 30%	-기타소득 : 30%	
-재산 : 100%	-재산 : 100%	-재산 : 100%	
	-기타재산 : 25%		
-기본:세대 1,500원 피보험자 1,300원	-기본: 세대 1,500원 피보험자 1,300원	-기본 :세대 1,500원 피보험자 1,300원	
계	111,503	132,802	244,305 +245,147
기 소계	52,855	47,674	100,529 +100,529
본 세대당	13,202	12,198	25,400 + 25,400
피보험자당	39,653	35,476	75,129 + 75,129
능 소계	58,648	85,128	143,776 +144,618
력 소득비례	25,878	42,639	68,517 + 68,953
재산비례	32,770	42,489	75,259 + 75,665

<表 4-26> 同一 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 減少 世帶(남원시·군)

(單位：세대)

[illegible]

<表 4-27> 同一 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 크기별 保險料 增加 世帶
(單位 : 세대)

보험료증가액 보험료	1천원 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 이상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5천원 미만	12	178	13	30	2	33	3	24	2	28	16	44
5천~1만원	30	1008	19	170	18	46	10	18	6	23	16	157
1만~1만5천	9	1360	10	570	3	91	2	22	-	7	11	40
1만5천~2만	2	661	2	542	3	169	-	70	3	22	5	31
2만~2만5천	4	186	-	237	-	148	1	88	1	32	2	104
2만5천이상	50	10	10	49	15	63	14	62	8	32	274	260
소계: 7,191												
시: 576	107	3403	54	1598	41	550	30	284	20	144	324	636
군: 6,615												

料의 所得 및 財産의 等級區間 保險料의 차이가 큰 조합을 統合할 경우 現行 保險料 賦課指針에 따른 동일등급 테이블의 적용은 郡組合 피보험자들의 保險料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統合되는 남원시·군에 대해 同一等級을 적용하였을 경우 現行 남원시와 남원군조합 적용세대의 保險料 增減額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表 4-25, 26, 27 참조).

同一等級 適用時 保險料가 현재보다 減少하는 세대는 남원군조합에서 2,012세대(군조합 대상세대의 23.3%), 남원시조합에서 7,586세대(시조합 대상세대의 92.9%)이며, 增加하는 세대는 남원군조합에서 6,615세대, 남원시조합에서 576세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남원시조합에 비해 남원군조합의 等級區間別 保險料가 워낙 낮기 때문에 동일한 부과기준을 現行 방법대로 만들어 적용한다면, 남원군조합 대상자들의 保險料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2. 市組合의 保險料와 郡組合의 保險料가 비슷한 地域 (공주시·군)

1994년 7월 말 현재 공주시 의료보험조합의 世帶當 平均保險料는 14,3

80원이며 공주군 의료보험조합의 平均保險料는 15,492원으로 市·郡間 세대당 保險料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나온 <表 3-20>에서 4인가족, 세대소득 100만원, 재산가액 1000만원인 세대를 假定하였을 때 공주시와 공주군의 世帶當保險料는 공주시가 16,400원이며, 공주군이 16,900원으로 동일소득과 동일재산을 보유한 세대를 직접 비교해 보면 保險料水準은 더욱 類似하다.

시조합의 保險料가 군조합과 거의 비슷한 統合組合으로는 공주시·군을 비롯하여 미곡시·남양주군, 점촌시·문경군, 충주시·충원군, 강릉시·명주군, 나주시·군, 진주시·진양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조합 중 공주시·군조합의 保險料부과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가. 基本現況

1) 組合現況

공주시와 공주군조합의 適用世帶數는 1993년말 현재 공주시조합 7,489세대, 공주군조합 12,777세대로 공주군조합이 공주시조합보다 適用世帶數가 많으며, 統合이 되면 적용세대수는 약 2만세대 정도가 된다.

공주시의 所得比例保險料는 綜合所得 및 신고소득이 주를 이루고 農地所得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綜合所得은 총 세대의 27.5%, 신고소득은 61.6%의 세대에 대해 賦課되고 있다. 반면, 공주군조합의 所得比例保險料는 農地所得이 全世帶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57.3%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신고소득은 37.3%, 綜合所得은 14.0%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表 4-28 참조). 그런데 所得의 크기를 보면 綜合所得의 경우 공주시의 平均所得額이 308만원이나 공주군의 平均소득액은 252만원이며, 소득액의 중위수는 공주시 102만원, 공주군 68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신고소득의 경우는 공주시의 소득액 평균이 201만원이고, 공주군은 131만원인데, 최빈값은 시·군 모두 120만원으로 동일하다.

財産 자료의 보유세대는 시조합이 건물 35.6%, 토지 44.6%이나, 군조합은 건물 61.9%, 토지 71.4%로 군조합의 보유율이 훨씬 높다.

공주시조합에서는 총세대의 85.7%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所得比例保險料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주군조합은 거의 모든 세대(99.4%)에 대해 所得比例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表 4-29 참조).

건물과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財産比例保險料의 부과세대는 郡地域이 市地域보다 부과자료의 보유세대가 많아 공주군조합이 77.9%의 세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반면, 공주시 조합은 46.8%의 세대에 대해서만 財産比例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2) 保險料 賦課現況

현재 賦課하고 있는 공주시와 공주군의 기본保險料를 보면 世帶當 保險料는 공주시가 1,500원이며 공주군은 200원이 많은 1,700원이다. 被保險者當 保險料는 시·군 모두 1,100원으로 동일하여, 만일 시·군이 統合될 경우 동일한 基本保險料를 부과하여도 현재보다 世帶當 保險料만 2백원 변동하므로 문제가 없다.

<表 4-28> 공주시·군 地域醫療保險組合의 所得 및 財産資料 現況
(1994년 6월 말 현재)

	공주시	공주군
총세대(A)	7,710세대	13,191세대
1. 농지소득		
- 유자료세대(B)	17세대(B/A=0.2%)	7,562세대(B/A=57.3%)
- 범위	7만원~158만원	1만원~977만원
- 평균	79만원	104만원
- 중위수(Median)	59만원	84만원
- 최빈수(Mode)	59만원(2세대)	52만원(83세대)
2. 종합소득		
- 유자료세대(C)	2,123세대(C/A=27.5%)	1,842세대(C/A=14.0%)
- 범위	1만원~6,520만원	1만원~15,406만원
- 평균	308만원	252만원
- 중위수(Median)	102만원	68만원
- 최빈수(Mode)	99만원(50세대)	22만원(39세대)
3. 신고소득		
- 유자료세대(D)	4,751세대(D/A=61.6%)	4,932세대(D/A=37.3%)
- 범위	30만원~2,000만원	10만원~700만원
- 평균	201만원	131만원
- 중위수(Median)	180만원	120만원
- 최빈수(Mode)	120만원(1,014세대)	120만원(652세대)
4. 건물가액		
- 유자료세대(E)	2,748세대(E/A=35.6%)	8,162세대(E/A=61.9%)
- 범위	1만원~94,050만원	1만원~17,143만원
- 평균	1,190만원	241만원
- 중위수(Median)	542만원	81만원
- 최빈수(Mode)	1,104만원(51세대)	19만원(139세대)
5. 토지가액		
- 유자료세대(F)	3,435세대(F/A=44.6%)	9,424세대(F/A=71.4%)
- 범위	2만원~119,797만원	1만원~86,254만원
- 평균	2,250만원	1,471만원
- 중위수(Median)	931만원	932만원
- 최빈수(Mode)	52만원(21세대)	45만원(13세대)

<表 4-29> 所得·財産 適用世帯 比率(공주시·군):1994년 6월 말 기준¹⁾

(單位 : 세대,%)

구 분	총세대수	부과자료 있는 세대	소득자료 있는 세대	재산자료 있는세대
공주시	7,710(100.0)	7,674(99.5)	6,607(85.7)	3,701(48.0)
공주군	13,191(100.0)	13,171(99.8)	13,109(99.4)	10,277(77.9)

註 : 1) ()내는 適用 世帯에 대한 比率임.

공주시·군 조합의 所得比例保險料는 <表 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금액이 150만원 정도의 等級區間(공주시 13등급, 공주군 10등급)까지는 공주군의 等級間 保險料가 공주시보다 높으며, 소득금액이 150만원을 넘어 上位等級으로 올라갈수록 공주시의 等級間 保險料가 공주군보다 점점 많아진다. 공주시의 최상위등급인 30등급(소득금액 1200만원이상) 구간의 保險料는 4만원인데, 공주군은 29등급(소득금액 1200만원-1400만원)의 구간보험료가 29,000원, 30등급(소득금액 1400만원이상)의 保險料는 31,000원으로 공주시에 비교할 때 크게 낮다.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間 금액 및 等級保險料의 분포를 보면 재산가액 400만원(공주시 7등급, 공주군 9등급)까지는 保險料가 비슷하다. 그러나 재산가액 400만원 이상은 공주시의 保險料가 높고 保險料의 차이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크게 나타나서 30등급(공주시 재산가액 8,000만원 이상, 공주군 7,500만원 이상) 保險料는 공주시가 25,000원, 공주군이 16,000원으로 9,000원 차이가 발생한다(表 4-31 참조).

그런데 실제로 공주시조합과 공주군조합에서 能力比例保險料가 賦課되고 있는 所得과 財産의 분포를 보면 <圖 4-9> 및 <圖 4-10>과 같다. 공주시조합은 所得無資料 世帯가 적용세대의 10%를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소득과액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주시조합은 所得이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사이의 區間에 적용대상자의 30%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와 2백만원~3백만원 구간에도 각각 20%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 반면, 공주군조합은 所得 資料가 전혀 없는 無資料世帯는 거의

없지만, 소득금액이 2백만원 이하에 대부분의 世帶가 집중되어 있다.

<表 4-30>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 金額 및 保險料(공주시·군)

등 급	공주시(종합소득)		공주군(종합+농지소득)	
	소득금액 (만원)	보험료 (원)	소득금액 (만원)	보험료 (원)
1	1~30	1,400	1~40	1,900
2	31~40	1,700	41~50	2,500
3	41~50	2,000	51~60	3,100
4	51~60	2,500	61~70	3,700
5	61~70	3,000	71~80	4,300
6	71~80	3,500	81~90	4,900
7	81~90	4,000	91~100	5,600
8	91~100	4,500	101~120	6,300
9	101~110	5,000	121~140	7,000
10	111~120	5,500	141~160	7,700
11	121~130	6,100	161~180	8,500
12	131~140	6,700	181~200	9,400
13	141~150	7,300	201~220	10,300
14	151~170	8,300	221~240	11,200
15	171~190	9,300	241~270	12,100
16	191~210	10,500	271~300	13,000
17	211~240	11,500	301~330	14,000
18	241~280	12,500	331~360	15,000
19	281~320	14,000	361~390	16,000
20	321~370	15,500	391~430	17,000
21	371~420	17,500	431~470	18,200
22	421~480	19,500	471~510	19,500
23	481~550	21,500	511~550	20,700
24	551~620	23,500	551~600	22,000
25	621~710	25,500	601~700	23,000
26	711~810	28,000	700~850	24,500
27	811~930	31,000	851~1000	26,000
28	931~1060	34,000	1001~1200	27,500
29	1061~1200	37,000	1201~1400	29,000
30	1201이상	40,000	1401이상	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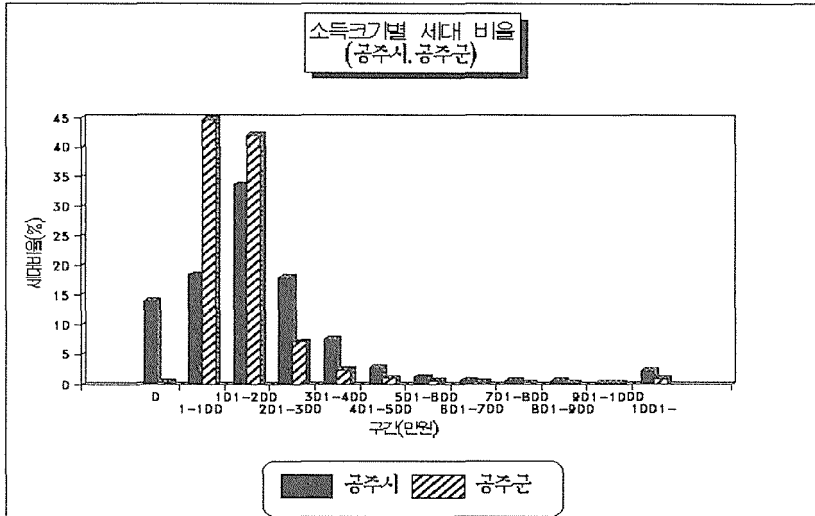
資料 : 각 組合 定款

<表 4-31> 財産比例保険料の等級區間別 金額 및 保険料(공주시·군)

등 급	공주시		공주군	
	재산가액 (만원)	보험료 (원)	재산가액 (만원)	보험료 (원)
1	1~200	1,000	1~100	800
2	201~230	1,300	100~130	1,000
3	231~260	1,600	130~160	1,200
4	261~300	2,200	160~190	1,400
5	301~340	2,200	190~220	1,600
6	341~390	2,500	220~260	1,800
7	391~440	2,900	261~320	2,000
8	441~500	3,300	321~370	2,200
9	501~570	3,700	370~450	2,500
10	571~660	4,100	450~540	2,800
11	661~750	4,500	540~640	3,200
12	751~850	5,000	640~750	3,700
13	851~970	5,500	750~860	4,200
14	971~1100	6,000	860~980	4,700
15	1101~1300	6,600	980~1100	5,200
16	1301~1500	7,200	1100~1250	5,700
17	1501~1700	8,000	1250~1500	6,200
18	1701~1900	8,800	1500~1750	6,700
19	1901~2200	9,800	1750~2000	7,200
20	2201~2500	11,000	2000~2300	7,600
21	2501~2800	12,200	2300~2600	8,200
22	2801~3200	13,400	2600~3000	8,800
23	3201~3600	14,600	3000~3500	9,600
24	3601~4200	15,600	3500~4000	10,400
25	4201~4800	16,800	4000~4500	11,200
26	4801~5500	18,000	4500~5000	12,000
27	5501~6200	19,500	5000~5500	13,000
28	6201~7000	21,000	5500~6500	14,000
29	7001~8000	23,000	6500~7500	15,000
30	8001이상	25,000	7,501이상	16,000

資料 : 각 組合 定款

<圖 4-9> 所得 크기별 世帯比率(공주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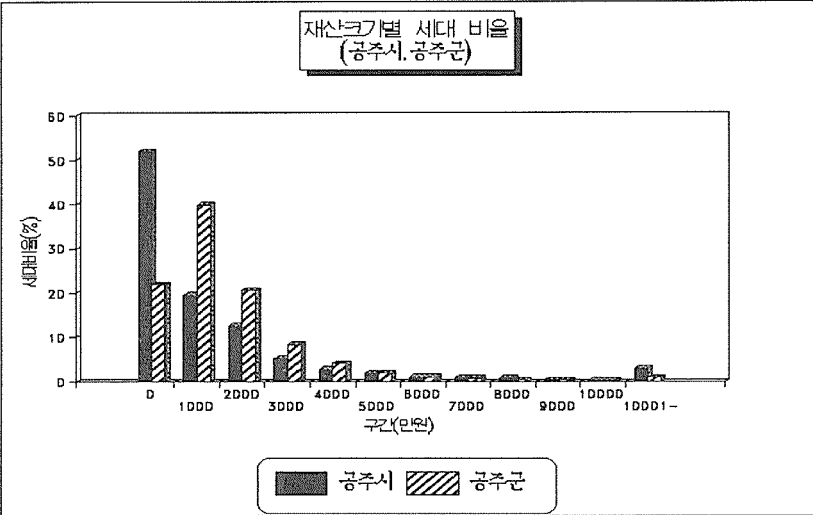


能力比例保険料의 또 다른 부분은 財産比例保険料이다. 공주시의 경우 재산자료가 전혀 없어 財産比例保険料가 부과되지 않는 세대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공주군조합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 구간에 약 40%의 세대가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세대가 財産價額 6천만원 이하이다 (圖 4-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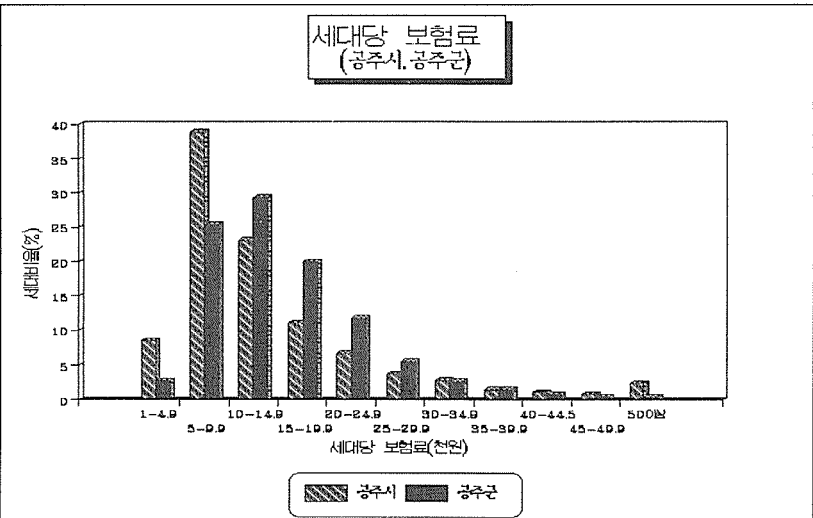
3) 世帯當 保険料

공주시조합의 세대당 부과보험료는 5천원에서 1만원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세대가 분포되어 있으며, 약 10%의 세대는 月 保険料가 5천원 미만이다. 공주군조합의 보험료 분포는 공주시에 비해 완만하게 우측으로 분포된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월 보험료를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 내고 있는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圖 4-11 참조).

<圖 4-10> 財産 크기별 世帯比率(공주시·군)



<圖 4-11> 世帶當 保險料(공주시·군)



나. 統合時 同一等級 테이블 적용

1) 現行 공주시 등급테이블 적용

- ① 공주군조합에 現行 공주시 等級 賦課基準을 적용하되, 要素別 評價率은 郡 評價率 적용

공주군조합 자료에 공주시의 等級區間 및 區間別 保險料를 적용하되 賦課資料의 評價率은 공주군의 現行 評價率을 적용하였다. 즉, 農地所得의 評價率은 공주군조합 적용률 100%, 그리고 其他所得의 評價率을 50% 적용하였다.

<表 4-32> 現行 공주시 保險料 賦課基準 適用時 공주군조합 保險料 增減額(1)

(單位 : 천원)

현 행			시등급 적용시	증감액
-농지 : 100%			-농지 : 100%	
-종합 : 100%			-종합 : 100%	
-기타소득 : 50%			-기타소득 : 50%	
-재산 : 100%			-재산 : 100%	
-기본 : 세대 1,700원 피보험자 1,100원			-기본 : 세대 1,500원 피보험자 1,100원	
계		202,485	210,865	+8,380
기 본	소계	75,956	73,315	-2,641
	세대당	22,445	19,804	-2,641
	피보험자당	53,511	53,511	
능 력	소계	126,529	137,550	+11,021
	소득비례	71,964	67,169	-4,795
	재산비례	54,565	70,381	+15,816

分析 結果는 공주군조합의 月 總保險料가 현재보다 약 8백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總保險料의 증가분은 財産比例保險料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所得比例保險料는 4,795천원이 감소하였다(表 4-32 참조). 所得比例保險料가 감소한 이유는 많은 세대가 분포되어 있는 下位等級(공주군 9등급까지)의 保險料가 오히려 공주군이 높기 때문에 공주시 등급적용시는 保險料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表 4-33> 現行 공주시 조합의 賦課基準 적용시 공주군조합 保險料 減少 世帶 分布(1)

(單位 : 세대)

보험료감소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250	-	4	-	-	-
5천~1만원	1,210	1,124	55	20	10	8
1만~1만5천	1,463	1,052	370	19	15	27
1만5천~2만	1,071	376	105	13	3	69
2만~2만5천	228	98	5	1	1	40
2만5천이상	34	9	10	3	5	46
소 계 : 7,744	4,256	2,659	549	56	34	190

<表 4-34> 現行 공주시 조합의 賦課基準 적용시 공주군조합 保險料 增加 世帶 分布(1)

(單位 : 세대)

보험료증가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21	28	24	20	3	25
5천~1만원	204	62	61	70	54	313
1만~1만5천	543	57	39	18	14	137
1만5천~2만	455	255	109	78	36	65
2만~2만5천	314	277	211	190	94	88
2만5천이상	89	129	169	220	205	553
소 계 : 5,230	1,626	808	613	596	406	1,181

世帶當 賦課되는 保險料가 감소하거나 증가되는 세대의 분포를 보

면 保險料가 감소하는 세대가 7,744세대(59.8%)로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 5,230세대보다 다소 많다(表 4-33, 34 참조). 그런데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 중에는 月 保險料가 5,000원 이상 증가하는 세대도 1,181세대(9.1%)나 되어 本案의 채택시에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인상보협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② 공주군조합에 現行 공주시 等級基準 및 評價率 適用

공주군조합의 保險料부과자료에 現행 공주시조합의 所得 및 財産 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와 評價率을 적용하여 保險料 增減額을 분석하였다(表 4-35 참조).

이 경우 공주군조합의 農地所得 評價率과 其他所得의 評價率은 現行 100%, 50%에서 각각 30%로 낮아지므로 공주시등급테이블을 적용하더라도 공주군조합의 總保險料는 약 2천만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表 4-35> 現行 공주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공주군조합 保險料 增減額(2)

(單位 : 천원)

현 행			시등급 적용시	증감액
-농지소득 : 100%			-농지소득 : 30% ¹⁾	
-종합소득 : 100%			-종합소득 : 100%	
-기타소득 : 50%			-기타소득 : 30%	
-재산 : 100%			-재산 : 100%	
-기본: 세대 1,700원			-기본: 세대 1,500원	
피보험자 1,100원			피보험자 1,100원	
계		202,485	181,187	-21,298
기본	소계	75,956	73,315	-2,641
	세대당	22,445	19,804	-2,641
	피보험자당	53,511	53,511	-
능력	소계	126,529	107,872	-18,657
	소득비례	71,964	37,491	-34,473
	재산비례	54,565	70,381	+15,816

註: 1) 공주시조합은 현재 農地所得 保險料는 부과하지 않으나 다른 市組合이 대부분 農地所得에 대한 評價率을 30% 適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0%로 하였음.

<表 4-36> 現行 공주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공주군조합 保險料
減少 世帶 分布(2)

(單位 : 세대)

보험료감소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276	-	4	-	-	-
5천~1만원	694	908	787	131	20	8
1만~1만5천	503	889	1093	570	178	42
1만5천~2만	243	355	506	514	451	190
2만~2만5천	108	147	162	250	308	281
2만5천이상	81	88	129	124	177	360
소 계	10,577	1,905	2,387	2,681	1,134	881

<表 4-37> 現行 공주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공주군조합 保險料
增加 世帶 分布(2)

(單位 : 세대)

보험료증가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12	38	16	3	7	19
5천~1만원	158	69	71	93	77	175
1만~1만5천	291	42	18	17	18	93
1만5천~2만	149	64	57	25	15	36
2만~2만5천	96	74	42	30	18	31
2만5천이상	93	72	57	63	40	188
소 계	2,367	799	359	261	175	542

世帶當 賦課되는 月保險料가 감소되는 세대와 증가하는 세대를 구체적으로 보면, 現行보다 保險料가 감소되는 세대가 10,577세대(81.7%), 증가하는 세대 2,367세대로 나타났다(表 4-36, 37 참조).

2) 새로운 同一等級 테이블 適用

현재 공주시조합과 공주군조합이 각각 별도의 기준에 의해 保險料를 賦課하고 있으나, 새로운 공주시로 統合되어 하나의 조합이 되었을 때 적

용할 수 있는 同一한 保險料 賦課基準을 남원시·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만들어 보았다(表 4-38, 39 참조).

공주시는 所得保險料의 등급구간이 1등급(1만원~30만원)부터 30등급(1200만원 이상), 等級區間別 保險料는 1等級 1,400원부터 30等級 40,000원이다. 財産比例保險料는 1등급(1만원~2백만원)부터 30등급(8천만원 이상), 等級間 保險料는 1等級 1천원부터 30等級 25,000원이다. 반면 공주군은 所得比例保險料는 1등급(1만원~40만원)부터 30등급(1400만원 이상), 등급區間別 保險料는 1等級 1,900원부터 30等級 31,000원이다. 財産比例保險料는 1등급(1만원~100만원)부터 30등급(7500만원 이상), 等級間 保險料는 1等級 800원부터 30等級 16,000원이다.

統合後 同一等級 테이블에서의 소득등급구간을 공주시와 공주군의 現行 등급을 고려하여 1等級 1만원~30만원, 30等級 1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 等級間 保險料(統合 공주시 保險料 1案)는 1등급이 1천원, 30등급이 4만4천원으로 推計되었다. 統合後 保險料의 분포는 1등급에 해당하는 세대는 공주시와 공주군 모두 現行보다 낮은 保險料(공주시 差額 400원, 공주군 差額 900원)를 내게 된다. 공주시의 경우는 2등급부터 現行보다 保險料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며, 保險料의 증가폭은 上位等級으로 올라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주군은 現行 2등급에서 10등급(소득금액 160만원)까지는 1,000원이하의 소폭으로 保險料가 감소하나, 10등급 이후부터의 保險料는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한다.

財産比例保險料에도 동일한 등급테이블(통합공주시 1案)을 적용하였을 때, 공주시는 現行 20등급 이하(재산가액 2,500만원 이하)에서는 保險料가 감소하며, 20등급이상 등급은 保險料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군도 역시 現行 17등급 이하(재산가액 1,500만원 이하)에서는 保險料가 감소하고, 17등급 이후로는 保險料가 증가하는 데 특히 最高等級(現行 재산가액 7,500만원이상, 等級區間 保險料 16,000원)근처의 保險料가 동일등급 적용시 34,100원이 되어 인상폭이 매우 크다.

<表 4-38>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 金額 및 保險料(통합공주시)

등급	공주시 소득금액 (만원)	공주시 보험료 (원)	공주군 소득금액 (만원)	공주군 보험료 (원)	통합공주시 소득금액 (만원)	통합공주시 보험료 (1안)(원)	통합공주시 보험료 (2안)(원)
1	1~30	1,400	1~40	1,900	1~30	1,000	1700
2	31~40	1,700	41~50	2,500	31~40	2,000	2000
3	41~50	2,000	51~60	3,100	41~50	2,500	2500
4	51~60	2,500	61~70	3,700	51~60	3,000	3000
5	61~70	3,000	71~80	4,300	61~70	3,600	3500
6	71~80	3,500	81~90	4,900	71~80	4,200	4000
7	81~90	4,000	91~100	5,600	81~90	4,700	4500
8	91~100	4,500	101~120	6,300	91~100	5,300	5000
9	101~110	5,000	121~140	7,000	101~110	5,800	5500
10	111~120	5,500	141~160	7,700	111~130	6,700	6000
11	121~130	6,100	161~180	8,500	131~150	7,800	6700
12	131~140	6,700	181~200	9,400	151~170	8,900	7800
13	141~150	7,300	201~220	10,300	171~190	10,000	9000
14	151~170	8,300	221~240	11,200	191~220	11,400	10500
15	171~190	9,300	241~270	12,100	221~250	13,000	11000
16	191~210	10,500	271~300	13,000	251~290	15,000	13000
17	211~240	11,500	301~330	14,000	291~330	17,000	14000
18	241~280	12,500	331~360	15,000	331~380	20,000	16500
19	281~320	14,000	361~390	16,000	381~430	22,700	17500
20	321~370	15,500	391~430	17,000	431~490	24,000	19000
21	371~420	17,500	431~470	18,200	491~560	26,000	21000
22	421~480	19,500	471~510	19,500	561~640	28,000	22000
23	481~550	21,500	511~550	20,700	641~730	30,000	24000
24	551~620	23,500	551~600	22,000	731~830	32,000	26000
25	621~710	25,500	601~700	23,000	831~940	34,000	28000
26	711~810	28,000	700~850	24,500	941~1040	36,000	30000
27	811~930	31,000	851~1000	26,000	1041~1140	38,000	32000
28	931~1060	34,000	1001~1200	27,500	1141~1240	40,000	34000
29	1061~1200	37,000	1201~1400	29,000	1241~1300	42,000	36000
30	1201 이상	40,000	1401 이상	31,000	1301 이상	44,000	38000

<表 4-39>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 金額 및 保險料(통합공주시)

등급	공주시 재산금액 (만원)	공주시 보험료 (원)	공주군 재산금액 (만원)	공주군 보험료 (원)	통합공주시 재산금액 (만원)	통합공주시 보험료 (1안)(원)	통합공주시 보험료 (2안)(원)
1	1~200	1,000	1~100	800	1~100	360	1,000
2	201~230	1,300	101~130	1,000	101~120	450	1,100
3	231~260	1,600	131~160	1,200	121~140	550	1,200
4	261~300	2,200	161~190	1,400	141~160	600	1,300
5	301~340	2,200	191~220	1,600	161~190	700	1,400
6	341~390	2,500	221~260	1,800	191~220	850	1,500
7	391~440	2,900	261~320	2,000	221~260	950	1,600
8	441~500	3,300	321~370	2,200	261~300	1100	1,700
9	501~570	3,700	371~450	2,500	301~350	1300	2,000
10	571~660	4,100	451~540	2,800	351~410	1500	2,200
11	661~750	4,500	541~640	3,200	411~480	1800	2,500
12	751~850	5,000	641~750	3,700	481~560	2100	2,800
13	851~970	5,500	751~860	4,200	561~650	2500	3,000
14	971~110	6,000	861~980	4,700	651~760	3000	3,700
15	1101~1300	6,600	981~1100	5,200	761~890	3200	4,200
16	1301~1500	7,200	1101~1250	5,700	891~1040	3800	5,200
17	1501~1700	8,000	1251~1500	6,200	1041~1210	4200	6,000
18	1701~1900	8,800	1501~1750	6,700	1211~1410	5200	6,500
19	1901~2200	9,800	1751~2000	7,200	1411~1650	6200	7,000
20	2201~2500	11,000	2001~2300	7,600	1651~1930	7200	7,500
21	2501~2800	12,200	2301~2600	8,200	1931~2260	8400	8,500
24	2801~3200	13,400	2601~3000	8,800	2261~2640	9800	10,000
23	3201~3600	14,600	3001~3500	9,600	2641~3090	11,500	12,500
24	3601~4200	15,600	3501~4000	10,400	3091~3610	13,500	14,000
25	4201~4800	16,800	4001~4500	11,200	3611~4220	15,500	15,600
26	4801~5500	18,000	4501~5000	12,000	4221~4950	18,000	16,800
27	5501~6200	19,500	5001~5500	13,000	4951~5950	22,000	18,000
28	6201~7000	21,000	5501~6500	14,000	5951~6950	25,500	19,500
29	7001~8000	23,000	6501~7500	15,000	6951~8000	30,000	23,000
30	8001이상	25,000	7,501이상	16,000	8001이상	34,100	25,000

이처럼 同一等級 적용시(통합공주시 保險料 1案) 下位等級의 所得·財産保險料는 現行보다 減少하고 上位等級 保險料는 現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을 勘案하여, 현재 조합에서 실지로 적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總 保險料額은 거의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上下位等級 區間別 保險料를 조정해 보았다. 즉, 下位等級의 保險料는 現行수준으로 유지하면서 上位等

級의 保險料는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으로 통합 공주시 2案을 고려해 보았다.

공주시·군의 統合前後의 所得 및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 및 區間別 保險料는 <圖 4-12> 및 <圖 4-13>과 같이, 통합공주시 1案의 等級別 保險料는 공주시 및 공주군의 現行 保險料보다 높으나 조정된 통합공주시 2案의 等級區間 및 區間別 保險料는 現行 공주시와 공주군 등급의 중간수 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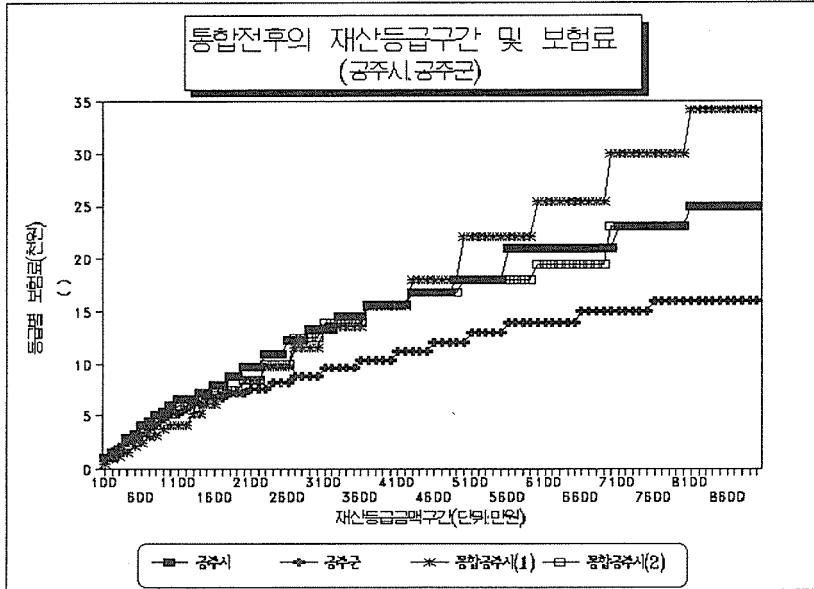
통합공주시에 새로운 同一等級區間 및 保險料 1案을 적용하였을 경우(表 4-40, 41 참조)와 等級區間別 保險料를 조정한 2案(表 4-42, 43 참조)을 적용하였을 경우, 공주시·군 適用世帯 중 保險料増減世帯를 분석해 보았다.

<表 4-40> 同一 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 크기별 保險料 減少 世帶
: 제1안 (공주시·군)

(單位：세대)

보험료증감액 보험료	1000원 미만 감소		1000~1999 감소		2000~2999 감소		3000~3999 감소		4000~4999 감소		5000이상 감소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5,000원 이하	177	53	13	215	-	4	-	-	-	-	-	-
5,001~10,000원	361	160	144	1281	32	1092	19	148	6	11	3	8
10,001~15,000원	327	93	433	454	97	1525	5	119	6	247	17	36
15,001~20,000원	295	128	254	204	47	401	3	701	-	694	17	258
20,001~25,000원	129	108	78	131	23	228	3	275	-	309	16	208
25,001원 이상	65	117	46	118	11	142	4	127	-	93	25	96
소계 : 13,511 시: 2,656 군: 10,855	1354	659	968	2403	210	3392	34	2441	12	1354	78	606

<圖 4-13> 統合前後 財産等級區間 및 保險料(공주시·군)



공주시·군조합에 統一된 同一等級 1案을 적용하였을 때, 保險料가 현재보다 減少하는 세대가 공주군조합은 10,855세대(군조합 대상세대의 83.9%), 공주시조합은 2,656세대(시조합 대상세대의 34.6%)로 공주군조합의 保險料減少세대가 훨씬 많아 統一等級 適用時는 군조합 피보험자가 유리하다. 그러나 공주시·군 모두 現行보다 保險料가 5천원 이상 감소하거나 또는 5천원 이상 증가하는 세대수가 많아서 保險料의 변동 폭이 크다.

그런데 能力比例保險料의 下位等級 및 上位等級의 區間別保險料를 조정한 2案의 경우 保險料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세대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保險料의 증가 또는 감소폭은 적어서 2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表 4-42, 43 참조).

3. 郡組合의 保險料가 市組合보다 높은 地域 (삼척시·군)

1994년 7월말 현재 삼척시의료보험조합의 세대당 평균 保險料는 14,840원이며 삼척군의료보험조합의 평균保險料는 13,435원으로 시·군간 세대당 保險料의 수준은 시조합이 조금 높다. 그러나 앞에서 나온 <表 3-20>에서 4인 가족, 世帶 所得 100만원, 재산가액 1000만원인 세대를 가정하였을 때 삼척시와 삼척군의 세대당 保險料는 삼척시가 16,700원이며, 삼척군이 19,600원으로 동일所得과 동일재산을 보유한 세대를 직접 비교해 보면 삼척군의 保險料 수준이 삼척시보다 높다.

가. 基本現況

1) 組合現況

삼척시와 삼척군조합의 적용세대수는 1994년 6월 말 현재 삼척시조합 4,923세대, 삼척군조합 6,849세대로 삼척시·군조합이 모두 小規模組合이며, 統合이 되면 적용세대수는 약 1만 2천세대 정도가 된다.

삼척시의 所得比例保險料는 綜合所得 및 신고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綜合所得은 總世帶의 25.0%, 신고소득은 63.1%의 세대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반면, 삼척군조합의 所得比例保險料는 農地所得이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하여 80%가 넘는 세대에 대해 賦課되고 있으며, 綜合所得은 15.6%의 세대에 대해 賦課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소득은 6.7%에 불과하여 他組合에 비해 신고소득의 賦課率이 낮다(表 4-44 참조).

保險料賦課資料의 所得 크기를 보면 綜合所得의 경우 삼척시의 평균소득액이 461만원이나 삼척군의 평균소득액은 207만원, 소득액의 중위수는 삼척시 216만원, 삼척군 70만원으로 市·郡間 차이가 크다.

신고소득의 경우는 삼척시의 소득액 평균이 약 136만원, 삼척군은 34만원으로 삼척시에 비해 삼척군이 25%수준이며, 최빈값도 삼척시 120만

원, 삼척군 24만원으로 市에 비해 郡의 소득액이 현저히 낮다.

財産資料의 보유세대는 삼척시조합이 건물 39.4%, 토지 41.3%로 他市組合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삼척군조합은 건물 48.6%, 토지 53.8%로 삼척시조합의 財産保有率보다는 높지만 他郡의 財産保有率이 평균 60%를 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다.

삼척시조합에서는 總世帶의 87.1%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所得比例保險料를 賦課하고 있으며, 삼척군은 거의 모든 세대(98.7%)에 대해 所得比例保險料를 賦課하고 있다(表 4-45 참조).

건물과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財産比例保險料의 賦課世帶는 郡地域이 市地域보다 부과자료의 보유세대가 많아 삼척군조합이 62.9%의 세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반면, 삼척시 조합은 48.0%의 세대에 대해서만 財産比例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2) 保險料 賦課現況

현재 부과하고 있는 삼척시와 삼척군의 基本保險料를 보면 世帶當保險料는 삼척시가 1,900원, 삼척군은 1,600원이다. 被保險者當保險料는 삼척시가 1,600원이며, 삼척군은 1,300원으로 基本保險料는 삼척시가 각각 300원이 많다.

삼척시·군 조합의 所得比例保險料는 <表 4-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소득에 대해 삼척군의 保險料가 삼척시보다 높다.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保險料 역시 동일한 재산가액에 대해 삼척군의 保險料가 삼척시보다 높다(表 4-47 참조).

그런데, 삼척시 적용세대의 63.1%, 삼척군 적용세대의 6.7%에 대해 賦課되고 있는 其他所得(表 4-44 참조)은 삼척시·군 모두 별도의 테이블을 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데, 等級區間과 區間別保險料의 차이가 매우 크다(表 4-48 참조).

<表 4-44> 所得 및 財産資料 現況(삼척시·군) : 1994년 6월 말 현재

	삼척시	삼척군
총세대(A)	4,923세대	6,849세대
1. 농지소득	종합소득에 포함	
- 유자료세대(B)		5,511세대(B/A=80.5%)
- 범위		6만원~12,198원
- 평균		67만원
- 중위수(Median)		60만원
- 최빈수(Mode)		60만원(868세대)
2. 종합소득		
- 유자료세대(C)	1,232세대(C/A=25.0%)	1,069세대(C/A=15.6%)
- 범위	2만원~6,381만원	1만원~4,503만원
- 평균	461만원	207만원
- 중위수(Median)	216만원	70만원
- 최빈수(Mode)	33만원(10세대)	44만원(25세대)
3. 신고소득		
- 유자료세대(D)	3,106세대(D/A=63.1%)	456세대(D/A= 6.7%)
- 범위	20만원~1,200만원	10만원~100만원
- 평균	136만원	34만원
- 중위수(Median)	120만원	25만원
- 최빈수(Mode)	120만원(422세대)	24만원(100세대)
4. 건물가액		
- 유자료세대(E)	1,938세대(E/A=39.4%)	3,331세대(E/A=48.6%)
- 범위	2만원~53,230만원	1만원~10,490만원
- 평균	1,231만원	311만원
- 중위수(Median)	486만원	142만원
- 최빈수(Mode)	1,281만원(32세대)	20만원(39세대)
5. 토지가액		
- 유자료세대(F)	2,031세대(F/A=41.3%)	3,684세대(F/A=53.8%)
- 범위	1만원~26,959만원	1만원~13,054만원
- 평균	2,250만원	560만원
- 중위수(Median)	931만원	370만원
- 최빈수(Mode)	52만원(21세대)	126만원(17세대)

<表 4-45> 所得·財産 適用世帯 比率(삼척시·군) : 1994년 6월 말 기준¹⁾
(單位 : 세대,%)

구 분	총세대수	부과자료 있는 세대	소득자료 있는 세대	재산자료 있는세대
삼척시	4,923(100.0)	4,777(97.0)	4,290(87.1)	2,365(48.0)
삼척군	6,849(100.0)	6,829(99.7)	6,762(98.7)	4,311(62.9)

註 : 1) ()내는 適用世帯에 대한 比率임.

<表 4-46>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 金額 및 保險料(삼척시·군)

등급	삼척시		삼척군	
	소득금액 (만원)	보험료 (원)	소득금액 (만원)	보험료 (원)
1	1~50	1,500	1~40	1,500
2	51~60	1,700	41~50	1,900
3	61~70	1,900	51~60	2,600
4	71~80	2,200	61~70	3,200
5	81~90	2,500	71~80	4,200
6	91~100	2,800	81~90	4,800
7	101~110	3,100	91~100	5,400
8	111~120	3,400	101~110	5,900
9	121~130	3,700	111~120	6,500
10	131~140	4,000	121~130	7,000
11	141~160	4,300	131~140	7,600
12	161~180	4,700	141~150	8,200
13	181~200	5,100	151~160	8,700
14	201~220	5,500	161~180	9,600
15	221~250	6,400	181~200	10,700
16	251~280	7,300	201~230	12,400
17	281~320	8,200	231~250	13,500
18	321~370	9,200	251~280	14,600
19	371~420	10,300	281~320	16,500
20	421~470	11,400	321~360	18,600
21	471~540	12,700	361~400	19,600
22	541~610	14,000	401~450	22,000
23	611~690	15,800	451~500	23,000
24	691~790	18,000	501~560	24,000
25	791~900	20,300	561~630	24,500
26	901~1020	22,500	631~710	25,000
27	1021~1160	25,000	711~790	25,500
28	1161~1320	27,800	791~890	26,000
29	1321~1500	29,500	891~1000	26,500
30	1501이상	31,500	1001이상	27,000

資料 : 각 組合 定款

<表 4-47> 財産比例保険料の等級區間別 金額 및 保険料(삼척시·군)

등 급	삼척시		삼척군	
	재산가액 (만원)	보험료 (원)	재산가액 (만원)	보험료 (원)
1	1~200	1,400	1~150	1,200
2	201~240	1,600	151~170	1,800
3	241~270	1,800	171~200	2,000
4	271~310	2,000	201~230	2,200
5	311~360	2,300	231~260	2,600
6	361~410	2,600	261~290	2,800
7	411~480	2,900	291~330	3,000
8	481~550	3,300	331~380	3,200
9	551~630	3,600	381~430	3,400
10	631~730	4,000	431~490	3,800
11	731~840	4,500	491~560	4,200
12	841~970	5,000	561~640	4,800
13	971~1120	5,600	641~730	5,300
14	1121~1290	6,300	731~830	5,900
15	1291~1490	7,000	831~950	7,500
16	1491~1710	7,800	951~1080	8,400
17	1711~1980	8,500	1081~1240	9,400
18	1981~2280	9,400	1241~1410	10,500
19	2281~2630	10,300	1411~1610	11,800
20	2631~3040	11,300	1611~1830	13,000
21	3041~3500	12,400	1831~2090	14,000
22	3501~4040	13,500	2091~2390	15,000
23	4041~4660	14,700	2391~2720	15,500
24	4661~5380	16,000	2721~3100	16,000
25	5381~6200	17,200	3101~3540	16,500
26	6201~7150	18,400	3541~4040	17,000
27	7151~8500	19,500	4041~4610	17,500
28	8521~9520	20,000	4611~5260	18,000
29	9521~11000	22,000	5261~6000	18,500
30	11001이상	23,800	6,001이상	1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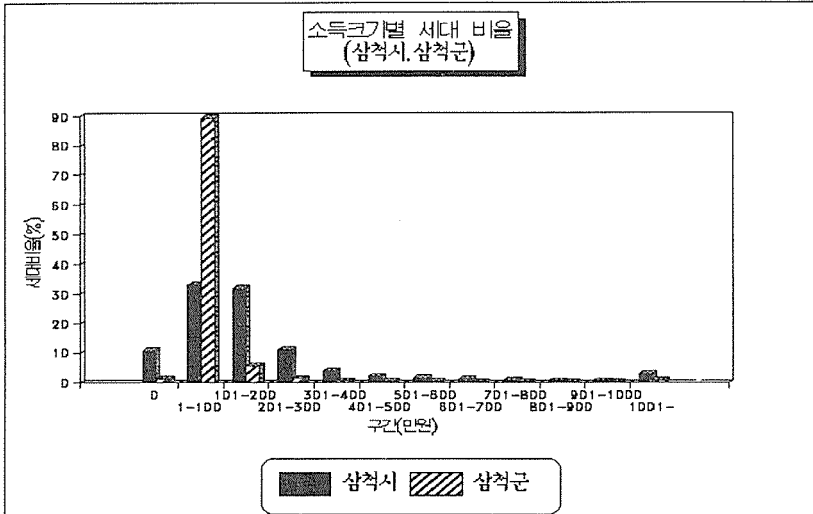
<表 4-48> 其他所得 等級 및 區間別 保險料

등급	삼척시			삼척군		
	소득금액 (만원)	월보험료 (원)	세대수	소득금액 (만원)	월보험료 (원)	세대수
1	1~50	1,100	347	1~20	1,000	102
2	51~60	1,500	264	21~30	1,300	143
3	61~80	1,900	322	31~40	1,600	66
4	81~100	2,300	338	41~50	2,000	85
5	101~130	2,800	593	51~60	2,500	31
6	131~160	3,300	398	61~70	3,000	200
7	161~200	3,800	323	71~100	4,000	6
8	201~250	4,300	270	101~120	5,000	-
9	251~320	4,900	130	121~150	6,500	-
10	321~400	5,800	78	151~180	8,000	-
11	401~500	7,100	22	181~210	10,000	-
12	501~630	8,600	13	211~250	12,000	-
13	631~800	10,300	5	251~400	16,000	-
14	801~1000	12,400	-	401~500	20,000	-
15	1,001이상	15,000	3	501이상	25,000	-
계			3,106	456		

실지 能力比例保險料가 부과되고 있는 所得과 財産의 분포를 보면 다음 <圖 4-14> 및 <圖 4-15>와 같다. 삼척시조합은 所得無資料 世帶가 적용세대의 10%를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所得과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所得금액 1백만원 이하 구간과 1백만원~2백만원 사이의 구간에 각각 30% 정도가 분포되고 있다.

삼척군조합은 所得이 1백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대상자의 거의 9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所得保有世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農地所得世帶(5,576세대) 중,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세대(5,426세대)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圖 4-14> 所得 크기별 世帶 比率(삼척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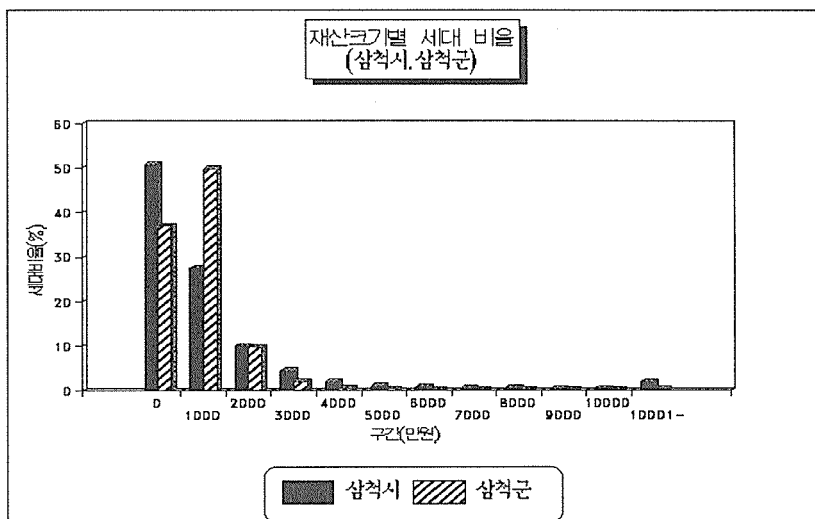


適用世帶 중 財産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는 삼척시에서 약 50%, 삼척군에서 약 40%나 된다. 財産價額이 1천만원 미만 세대는 삼척시에서 27%, 삼척군에서 50%로 나타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세대는 삼척시·군 모두 약 10% 정도이다(圖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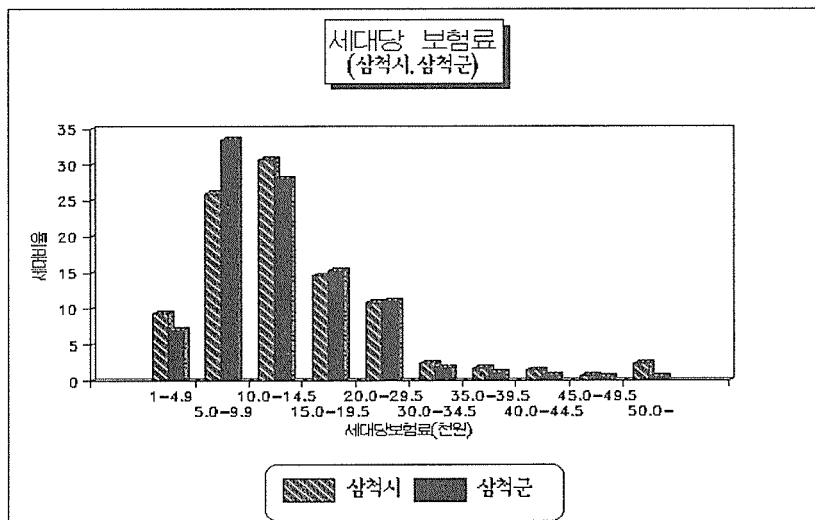
3) 月平均 保險料

삼척시조합 적용세대의 月平均保險料는 1만원에서 1만 5천원 미만 구간에 30%의 세대가 분포되어 있으며, 月保險料 5천원에서 1만원 사이의 구간에 26%, 1만 5천원에서 2만원 사이의 구간에 14.6%, 5천원 미만 구간에 10%등 약 80%의 세대가 月保險料 2만원 미만에 속하고 있다. 삼척군조합은 月保險料를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내고 있는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1만원에서 1만 5천원을 내고 있는 세대로 28%에 해당한다(圖 4-16 참조).

<圖 4-15> 財産 크기별 世帯 比率(삼척시·군)



<圖 4-16> 世帯당 保険料(삼척시·군)



나. 統合時 同一等級 테이블 適用

1) 現行 삼척시 等級 테이블 適用

① 삼척군조합에 現行 삼척시 等級賦課基準을 適用하되, 要素別
評價率은 郡評價率 適用

삼척시와 삼척군의 賦課要素에 대한 평가율은 綜合所得, 農地所得, 재산소득, 건물, 토지가액 모두 100%로 동일하다. 따라서 삼척군자료를 이용해 삼척시의 부과등급기준을 적용할 때 評價率은 동일하므로 시·군의 평가율을 각각 적용할 필요는 없다.

삼척군조합자료에 삼척시의 保險料賦課等級을 적용하였을 경우, 등급區間別 保險料가 낮아짐으로써 삼척군조합의 所得比例保險料와 財産比例保險料는 현재보다 감소하며 月 總保險料는 약 7백만원 정도 감소하였다(表 4-49 참조).

조합의 總保險料가 감소하더라도 保險料가 증감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세대의 保險料 변동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세대당 부과되는 保險料가 감소하거나 증가되는 세대의 분포를 보면 保險料가 감소하는 세대가 4,257세대(62.1%),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 2,597세대로 保險料가 減少하는 세대수가 많다(表 4-50, 51 참조).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 중에도 月保險料 1천원 이하 증가 세대수가 1,583세대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表 4-49> 現行 삼척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군조합 保險料 增減額

(單位 : 천원, %)

현 행		시등급 적용시	증감액
-농지	: 100%	-농지 : 100%	
-종합	: 100%	-종합 : 100%	
-기타소득	: 100%	-기타소득 : 100%	
군등급		(시등급적용)	
-재산	: 100%	-재산 : 100%	
-기본	: 세대 1,600원	-기본 : 세대 1,900원	
	피보험자 1,300원	피보험자 1,600원	
계	89,808	82,279	-7,529
기 소계	40,391	49,239	+8,848
본 세대당	10,958	13,013	+2,055
피보험자당	29,433	36,226	+6,793
능 소계	49,417	33,040	-16,377
력 소득비례	26,680	16,455	-10,225
재산비례	22,737	16,585	- 6,152

<表 4-50> 現行 삼척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군조합 保險料 減少 世帶 分布

(單位 : 세대)

보험료감소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13	-	-	-	-	-
5천~1만원	757	229	40	20	5	2
1만~1만5천	667	347	151	55	37	38
1만5천~2만	179	223	185	137	75	99
2만~2만5천	27	44	82	92	80	156
2만5천이상	9	10	33	66	59	340
소 계	4,257	1,652	853	491	370	256
						635

<表 4-51> 現行 삼척시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군조합 保險料
增加 世帶 分布

(單位 : 세대)

보험료증가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304	11	139	8	5	9
5천~1만원	715	210	129	99	50	53
1만~1만5천	434	131	32	14	7	20
1만5천~2만	105	42	4	2	3	5
2만~2만5천	15	5	2	-	1	-
2만5천이상	10	8	6	5	4	10
소 계 2,597	1,583	407	312	128	70	97

② 삼척시조합에 現行 삼척군 等級賦課基準 및 評價率 適用

삼척시조합의 保險料賦課資料에 現行 삼척군조합의 所得 및 財産 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를 적용하여 保險料 增減額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 삼척시조합은 現行보다 높은 等級區間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를 적용받으므로 삼척시조합의 總保險料는 약 1천 7백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52 참조).

세대당 부과되는 月保險料가 감소되는 세대와 증가하는 세대를 구체적으로 보면, 現行보다 保險料가 감소되는 세대는 740세대에 불과한 반면, 증가하는 세대는 4,192세대로 대부분 세대의 保險料는 증가하게 된다(表 4-53, 54 참조).

<表 4-52> 現行 삼척군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시조합 保險料 增減額

(單位：천원,%)

현 행			군등급 적용시	증감액
-농지소득 : 100%			-농지소득 : 100%	
-종합소득 : 100%			-종합소득 : 100%	
-기타소득 : 100%			-기타소득 : 100%	
시 등급적용			군 등급적용	
-재산 : 100%			-재산 : 100%	
-기본 : 세대 1,900원			-기본 : 세대 1,600원	
피보험자 1,600원			피보험자 1,300원	
계		69,955	87,224	+17,269
기 본	소계	34,666	28,443	-6,223
	세대당	9,354	7,877	-1,477
	피보험자당	25,312	20,566	-4,746
능 력	소계	35,289	58,781	+23,492
	소득비례	20,042	39,373	+19,331
	재산비례	15,247	19,408	+4,161

<表 4-53> 現行 삼척군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시조합 保險料 減少 世帶 分布

(單位：세대)

보험료감소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84	-	-	-	-	-
5천~1만원	188	51	3	4	3	-
1만~1만5천	133	42	4	6	2	10
1만5천~2만	31	9	4	3	-	5
2만~2만5천	1	-	4	1	-	6
2만5천이상	19	26	16	8	14	63
소 계 740	456	128	31	22	19	84

<表 4-54> 現行 삼척군 保險料 賦課基準 적용시 삼척시조합 保險料
增加 世帶 分布

(單位 : 세대)

보험료증가액 월보험료	1천원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원이상
5천원이하	148	48	10	22	20	126
5천~1만원	271	360	144	86	30	142
1만~1만5천	277	281	243	120	72	324
1만5천~2만	60	73	100	92	81	264
2만~2만5천	10	16	18	36	37	226
2만5천이상	25	9	20	28	44	329
소계	4,192	791	787	535	284	1411

2) 새로운 同一等級 테이블 適用

統合後 同一등급테이블에서의 소득등급구간을 삼척시와 삼척군의 現行 등급을 고려하여 1等級 1만원~40만원, 30等級 1천5백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 等級間 保險料(통합삼척시 保險料 1案)는 1등급이 800원, 30등급이 5만 7천5백원으로 推計되었다. 統合後 保險料의 분포는 1등급에 해당하는 세대는 現行 삼척시와 삼척군의 保險料보다 낮은 保險料(삼척시군 차액 700원)를 내게 된다. 반면 所得 7백만원(삼척시 24등급, 삼척군 26등급)까지는 統合後 保險料 等級區間別保險料가 現行 삼척시와 삼척군의 중간수준이며, 소득금액 7백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統合市의 保險料가 삼척시와 삼척군조합보다 높아진다(表 4-55 참조).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 역시 現行 삼척시 等級및 삼척군 등급을 고려하여 통일등급을 1등급(1~150만원)과 30등급(1천 1백만원 이상)으로 결정하여 統合後 同一等級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을 때, 統合後 等級區間別 保險料의 분포는 재산가액 1천3백만원까지의 구간(삼척시 14등급, 삼척군 17등급)에서는 統合市의 保險料등급이 現行 삼척시·군조합보다 낮으며, 財産價額 1천3백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의 구간에서는 삼척

同一賦課基準의 적용시 保險料가 현재보다 감소하는 세대는 삼척시 3,422세대(69.4%), 삼척군 6,034세대(88.1%)이며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는 삼척시 1,510세대, 삼척군 817세대이다.

<表 4-58> 同一 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 크기별 保險料 減少 世帯
: 제2안 (삼척시·군)

(單位 : 세대)

보험료증감액 보험료	1000원 미만 감소		1000~1999 감소		2000~2999 감소		3000~3999 감소		4000~4999 감소		5000이상 감소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5,000원 이하	218	192	-	110	-	15	-	-	-	-	-	-
5,001~10,000원	670	1278	255	270	7	98	5	43	3	19	-	7
10,001~15,000원	343	1107	878	294	26	160	10	71	3	56	13	72
15,001~20,000원	167	217	223	226	42	270	1	88	3	50	7	167
20,001~25,000원	43	19	35	43	6	146	2	89	1	52	7	146
25,001원 이상	61	7	33	37	15	64	1	52	-	39	13	348
소계 : 8,943												
시 : 3,091	1502	2820	1424	980	96	753	19	343	10	216	40	740
군 : 5,852												

<表 4-59> 同一 賦課基準 적용시 保險料 크기별 保險料 增加 世帯
: 제2안 (삼척시·군)

(單位 : 세대)

보험료증감액 보험료	1000원 이하 증가		1001~2000 증가		2001~3000 증가		3001~4000 증가		4001~5000 증가		5001이상 증가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5,000원 이하	49	14	26	37	26	62	29	47	17	2	93	10
5,001~10,000원	180	253	45	57	44	86	24	77	13	44	36	77
10,001~15,000원	127	98	57	16	31	20	11	14	5	7	10	18
15,001~20,000원	104	25	91	2	44	1	9	-	16	2	15	8
20,001~25,000원	50	6	85	2	39	-	25	-	26	-	36	1
25,001원 이상	59	2	64	3	57	3	54	2	67	3	177	-
소계 : 2,840												
시 : 1,841	569	398	368	117	241	172	152	140	144	58	367	114
군 : 999												

保險料 等級區間の 상위等級및 하위등급의 區間別 保險料를 조정한

통합삼척시 2案의 適用時, 保險料가 감소하는 세대수는 삼척시 3,091세대, 삼척군 5,852세대로 통합保險料 1案보다는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수는 늘어나지만, 保險料가 감소 또는 증가하는 폭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삼척시·군 조합과 같이 군조합의 保險料 등급의 구간保險料가 시조합보다 높은 통합대상지역은 통합시 市組合의 保險料는 다소 인상하면서 郡組合 피보험자의 現行保險料는 引下할 수 있는 새로운 동일 等級 적용이 가능하므로 統合時 새로운 동일등급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第 5 章 要約 및 結論

本 研究는 1995년 1월 1일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되는 33個市 및 32個 郡 地域醫療保險組合의 保險料賦課體系 改善方案 모색을 위해 실시되었다.

1. 統合對象組合의 現況 要約

1.1 통합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경기도 미금시·남양주군을 비롯한 65個 市·郡組合으로 전체 지역의료보험조합 266개(130개 시조합, 136개군조합)의 약 24%, 전체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의 14.6%에 해당한다. 통합되는 지역은 경상남도의 창원군이 일부는 마산시로, 나머지 일부는 창원시로 통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個 市와 그 市를 둘러싸고 있는 1個 郡이 통합되어 1개의 廣域市가 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1.2 통합대상조합의 適用世帶數는 統合前에는 최소 4,147세대(장승포시)에서 최대 52,064세대(마산시)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나, 統合後는 평균 28,195세대(최소 통합삼척시 11,686세대, 최대 통합포항시 62,328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1.3 통합대상조합의 1991년도부터 1994년 상반기까지의 財政現況을 보면, 市와 郡組合의 保險料는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保險給與費의 증가액이 훨씬 커서 收入總額에서 支出總額을 뺀 당기차액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더욱 명백하여, 1991년말 당기차액이 22,816백만원에서 1993년에는 9,985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1994년 상반기는 1개 시조합 및 10개 군조합에서 당기재정수지가赤字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1.4 통합대상 市·郡 地域醫療保險組合의 保險料賦課資料의 보유현황을 비교해 보면 시조합은 綜合所得課稅資料의 보유비율이 郡組合보다 높고, 郡組合은 財産資料의 보유비율이 높다.

1.5 통합대상조합의 保險料 부과자료 보유비율은 대부분의 조합에서 90%를 넘고 있으나, 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其他所得은 조합에 따라 其他所得額의 분포범위 및 其他所得에 대한 保險料 부과금액의 차이가 크다.

2. 保險料賦課體系 改善方案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賦課體系는 조합별로 基本保險料, 能力比例保險料의 부과대상이 되는 所得 및 財産의 종류와 評價率, 等級區間 및 等級別保險料 등이 각기 다르므로 市·郡組合의 統合時 모든 지역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保險料 賦課方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지역의료보험의 保險料賦課要素 중 基本保險料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분석해 보았으며, 統合時 保險料賦課體系에 대해서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가장 적합한 代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몇가지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시도한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는 제1그룹(시조합의 保險料등급區間別 保險料가 군조합보다 높은 통합대상지역)으로 남원시·군, 제2그룹(시·군의료보험조합의 保險料 수준이 비슷한 통합대상지역)으로는 공주시·군, 제3그룹(군조합의 保險料등급區間別 保險料가 시조합보다 높은 통

합대상지역)으로는 삼척시·군 의료보험조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자료로는 각 조합의 세대주화일, 피보험자화일, 保險料 부과·징수화일과 급여화일을 이용하였다.

2.1 基本保險料 改善方案

1) 基本保險料 廢止方案

남원시조합의 保險料부과자료를 이용하여 現行 基本保險料(世帶當保險料 1,500원, 被保險者當保險料 1,300원)를 전부 없애고 이의 부족분을 能力比例保險料로 충당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보험료를 所得 및 財産比例保險料에 부가하는 방안:

대안1: 基本保險料를 폐지하고 이의 부족분을 能力比例保險料에서 등급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가하는 방안

- 하위등급은 基本保險料(世帶當保險料 및 被保險者當保險料) 폐지로 감소되는 保險料額에 비하여, 能力比例保險料에서 증가하는 保險料가 적으므로 現行보다 保險料가 감소하며 상위등급은 그 반대의 결과가 되어 하위등급에 유리. 그러나, 상위등급의 保險料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불만이 커질 우려가 있음.

대안2: 基本保險料를 폐지하고 이의 부족분을 能力比例保險料에서 일률적으로 충당하는 방안

- 무자료세대, 所得 또는 財産賦課資料를 보유한 3인이상 세대, 所得과 財産자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6인이상세대는 保險料가 현재보다 감소하며, 큰 폭으로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는 所得 및 財産자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인 또는 2인세대임. 따라서 現行보다 保險料가 증가하거나 減少하는 것은 被保險者

數의 많고 적음에 큰 영향을 받게 됨.

2) 世帶當保險料 廢止方案

남원시조합의 자료를 이용해 現行 世帶當保險料 1,500원을 폐지하고, 이의 부족분을 能力比例保險料로 충당하여 所得 및 財産比例保險料를 현재보다 각각 1,100원씩 인상하였을 경우:

가. 世帶當保險料 1,500원을 폐지하고 이의 부족분을 所得과 財産의 能力比例保險料로 충당하면, 無資料世帶는 現行 保險料가 1,500원 감소하고 所得 또는 財産자료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 世帶는 月 保險料가 400원 감소하며, 所得 및 財産자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月 保險料가 700원 증가하는 등 保險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나. 그러나 이를 月 保險料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保險料가 낮은 계층은 대부분의 세대에서 保險料가 감소하며, 保險料가 높은 계층은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가 많으므로 保險料가 낮은 세대가 유리.

다. 世帶當保險料를 폐지할 경우 소득계층별 保險料移轉率은 所得이 낮은 계층에서 現行보다 높게 나타나서 所得再分配 側面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3) 被保險者當保險料 廢止方案

대안1: 基本保險料 중 被保險者當保險料를 폐지하고 世帶當保險料만 부과하되, 被保險者當保險料의 폐지로 부족되는 保險料는 能力比例保險料의 모든 등급에서 일률적으로 추가부과하는 방안으로 남원시조합의 경우 所得 및 財産比例保險料가 각각 3,100원씩 인상됨

가. 無資料世帶는 全世帶에서 保險料가 세대원수만큼 減少하게 되며,

所得 또는 財産을 한 가지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세대원수 1인의 경우는 保險料가 1,800원 증가하며, 2인의 경우는 500원이 증가하게 됨. 그리고 세대원수 3인이상의 세대는 世帶員數가 많아질수록 保險料 감소액의 크기도 점차 커짐.

- 나. 所得과 財産을 同時에 保有하고 있는 세대는 能力比例保險料가 6,200원이 증가하게 되므로, 세대원수 4인까지는 被保險者當保險料 감소액이 能力比例保險料의 증가분보다 적어서 月 保險料 賦課額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 되면 保險料는 減少.

대안 2: 基本保險料 중 被保險者當保險料를 폐지하고 世帶當保險料만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被保險者當保險料 폐지로 감소되는 保險料는 세대당 보험료에 추가로 加算하는 방안으로 世帶當保險料는 5,900원이 증가:

- 가. 세대에 부과되는 月保險料의 변동은 被保險者數 3인까지는 保險料가 증가하며, 保險料 증가액은 1인 세대가 3,100원, 2인 세대 1,800원, 3인 세대 500원임.
- 나. 被保險者數가 4인이상이 되면 現行보다 保險料가 감소하게 되며 保險料의 감소액은 被保險者數가 많은 세대일수록 더욱 커지고 있음.

2.2 市·郡組合에 同一等級 테이블의 適用方案

- 1) 市組合의 等級區間別 保險料가 郡組合보다 높은 통합대상지역 (남원시·군):

통합시 保險料가 변동되는 세대의 수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現行 保險料 부과기준을 적용한 다음의 ①②③안을 검토해 보았으며,

아울러 통합시에 새로운 부과등급데이블을 적용하는 ④안을 검토함.

① 남원군조합에 現行 남원시 等級賦課基準을 適用하되, 要素別 評價率은 남원군 評價率 適用

- 남원군 保險料 부과자료에 남원시 等級 및 評價率을 적용하였을 때, 남원군조합의 月 總保險料는 약 8천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부분의 남원군 적용세대의 保險料가 증가.
- 保險料가 감소하는 947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7,680세대는 保險料가 증가하게 되며, 保險料가 증가하는 世帶 중 月 保險料가 5,000원 이상 증가하는 세대도 5,410세대나 되어 本案의 적용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② 남원군組合에 現行 남원시 等級基準 및 評價率 適用

남원군組合의 保險料賦課資料에 現行 남원시組合의 所得 및 財産 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와 評價率을 適用.

- 남원군조합의 保險料부과자료에 남원시조합의 等級區間 및 保險料를 적용하고 農地所得에 대한 평가율도 市評價率(10%)을 적용하였을 경우, 農地所得의 평가율이 現行 100%에서 10%로 감소하더라도 남원시의 所得 및 財産의 等級區間 保險料가 남원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남원군 月 保險料는 약 5천만원 정도가 증가.
- 남원군조합 대상세대의 83%에 해당하는 7,191세대의 保險料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被保險者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

③ 現行 남원시 等級賦課 基準을 適用하되, 調整된 評價率 適用

시·군 통합시 남원군조합의 農地所得 評價率을 現行 100%에서 50%로

引下하고, 財産에 대한 評價率도 50%로 조정하여 남원시조합의 등급 기준에 적용하는 방안.

- 이 경우 남원군조합의 月 總保險料는 약1천3백만원 정도가 증가. 保險料의 증가분은 所得比例保險料에서 약 7백만원, 財産比例保險料에서 약 6백만원이 증가함.
- 남원군의 評價率을 조정하고 남원시의 등급테이블을 적용하였을 때, 保險料가 現行보다 감소하는 세대가 978세대, 증가하는 세대가 7,649세대로 88.7%에 해당하는 세대의 保險料가 증가.
- 그러나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 중 保險料의 증가액이 2천원 미만의 세대가 6,623세대(증가세대의 86.6%)이며, 保險料가 2천원이상 증가하는 세대는 13.4%에 불과함. 그런데, 本案의 적용시 군조합의 전체 保險料는 現行보다 약 1천3백만원정도가 증가. 따라서 保險料가 2천원이상 증가하는 세대(1,026세대)에 대해서는 保險料引上額을 2천원으로 상한선을 둔다 하더라도 감소되는 保險料는 약 4백50만원 정도이며 本案의 적용시 증가하는 保險料가 총 1천3백만원이므로 군조합의 總保險料는 약 8백50만원이 증가하므로 보험재정의 赤字는 가져오지 않음.

④ 統一된 새로운 同一等級 適用

等級區間 및 등급區間別 保險料가 큰 차이가 나는 남원시·군의 保險料 등급을 現行 保險料 수준에 큰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통일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동일 보험자가 관할하는 조합내에서 별개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면 같은 시 지역내에서도 거주지를 옮김에 따라 保險料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남원시·군에 적용할 수 있는 同一等級區間 및 保險料를 작성함.

- 새로운 等級區間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所得比例保險料의 區間別 保險料는 남원시의 경우 많은 세대가 분포되고 있는 하위등급(특히 1~2등급)은 所得比例保險料가 500원~700원 정도 감소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現行보다 많은 保險料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음.

- 統一된 동일등급 적용에 따라 남원군조합 대상자 중 農地所得을 가진 피보험자는 거의 모든 등급에서 保險料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保險料의 증가율은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음.
- 同一等級 適用時 保險料가 현재보다 減少하는 세대는 남원군조합에서 2,012세대(군조합 대상세대의 23.3%), 남원시조합에서 7,586세대(시조합 대상세대의 92.9%)이며, 增加하는 세대는 남원군조합에서 6,615세대, 남원시조합에서 576세대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현재 남원시조합에 비해 남원군조합의 등급區間別 保險料가 워낙 낮기 때문에 동일한 부과기준을 現行 방법대로 만들어 적용한다면, 남원군조합 대상자들의 保險料가 큰 폭으로 增加할 것임을 의미함.

2) 市·郡 醫療保險組合의 保險料 수준이 비슷한 統合對象地域

(공주시·군):

- ① 공주군 조합에 現行 공주시 等級賦課 基準을 適用하되, 要素別 評價率은 郡評價率 適用

공주군 조합資料에 공주시의 等級區間 및 區間別 保險料를 적용하되 부과자료의 평가율은 공주군의 現行 평가율(農地所得의 평가율 100%, 其他所得의 평가율 50%) 적용.

- 分析結果는 공주군조합의 月 總保險料가 약 8백만원 정도 현재보다 증가. 總保險料의 증가분은 財産比例保險料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所得比例保險料는 4,795천원이 감소. 所得比例保險料가 감소한 이유는 많은 世帶가 분포되어 있는 하위등급(공주군 9等級까지)의 保險料가 오히려 공주군이 높기 때문에 공주시 등급적용시는 保險料가 減少하기 때문임.

- 世帶當 賦課되는 保險料가 감소하거나 증가되는 세대의 분포를 보면 保險料가 감소하는 세대가 7,744세대(59.8%)로 保險料 증가 세대인 5,230세대보다 다소 많음. 그런데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 중에는 月 保險料가 5,000원 이상 증가하는 세대도 1,181세대(9.1%)나 되어 本案의 채택시에는 이들에 대해 최대 인상보험료의 상한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② 공주군 조합에 現行 공주시 等級基準 및 評價率 適用

공주군조합의 保險料 賦課資料에 現行 공주시조합의 所得 및 財産 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와 評價率을 適用

- 공주군조합의 農地所得 評價率과 其他所得의 評價率은 現行 100%, 50%에서 각각 30%로 낮아지므로 공주시 등급 테이블을 적용하더라도 공주군조합의 總保險料는 약 2천만원 정도 감소
- 세대당 부과되는 月 保險料가 減少되는 세대와 增加하는 세대를 구체적으로 보면, 現行보다 保險料가 減少되는 세대가 10,577세대(81.7%), 增加하는 세대 2,367세대로 나타남.

③ 統一된 새로운 同一等級 適用

현재 공주시조합과 공주군조합이 각각 별도의 기준에 의해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으나, 새로운 공주시로 통합되어 하나의 조합이 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同一한 保險料賦課基準을 적용.

代案 1 : 保險料 부과지침에 의한 등급기준 및 구간별 보험료 적용

- 통합후 保險料의 분포는 1등급에 해당하는 세대는 공주시와 공주군 조합에서 現行보다 낮은 保險料(공주시 차액 400원, 공주군 차액 900원)를 내게 됨.

- 공주시의 경우는 2등급부터 現行보다 保險料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며, 保險料의 增加폭은 上位等級으로 올라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 공주군은 現行 2등급에서 10등급까지는 1,000원 이하의 소폭으로 保險料가 감소하나, 10등급 이후부터의 保險料는 점차 큰 폭으로 증가.
- 財産比例保險料에도 동일한 등급 테이블을 適用하였을 때, 공주시는 現行 20등급 이하(재산가액 2,500만원 이하)에서는 保險料가 減少하며, 20등급이상 등급은 保險料가 증가. 공주군도 역시 現行 17등급 이하(재산가액 1,500만원 이하)에서는 保險料가 감소하고, 17등급 이후로는 保險料가 증가하는 데 특히 최고등급(現行 재산가액 7,500만원 이상, 等級區間 保險料 16,000원)근처의 保險料가 同一等級適用時 34,100원이 되어 인상폭이 매우 큼.

代案 2 : 제1안의 적용시 하위등급의 所得·財産 保險料는 現行보다 감소하고 상위등급 保險料는 現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조합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 保險料額의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上下位 等級區間別 保險料를 조정. 즉, 하위등급의 保險料는 現行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상위등급의 保險料는 인상폭을 줄임.

- 공주시 및 공주군의 現行 保險料보다 높으나 조정된 통합공주시 2안의 等級區間 및 區間別 保險料는 現行 공주시와 공주군 등급의 중간수준으로 적정한 保險料 수준임.
- 保險料가 감소 또는 증가하는 변동폭이 적어 새로운 同一等級 테이블의 적용이 보다 실현가능함.

3) 郡組合의 等級區間別 保險料가 市組合보다 높은 統合對象地域 (삼척시· 군):

- ① 삼척군 組合資料에 삼척시의 保險料 賦課等級을 適用하였을

경우

- 등급區間別 保險料가 낮아짐으로써 삼척군조합의 所得比例保險料와 財産比例保險料는 현재보다 감소하며 月 總保險料는 약 7백만원 정도 감소
- 세대당 부과되는 保險料가 감소하거나 증가되는 세대의 분포를 보면 保險料가 감소하는 세대가 4,257세대(62.1%),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 2,597세대로 保險料가 減少하는 세대수가 많음. 保險料가 증가하는 세대 중에도 月保險料 1천원 이하 증가세대수가 1,583세대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② 삼척시 組合에 現行 삼척군 等級基準 適用

- 삼척시조합은 現行보다 높은 等級區間 및 等級區間別 保險料를 적용받으므로 삼척시 조합의 總 保險料는 약 1천7백만원 정도 증가
- 世帶當 부과되는 月保險料가 감소되는 세대와 증가하는 세대를 구체적으로 보면, 現行보다 保險料가 감소되는 세대는 740세대에 불과한 반면, 증가하는 세대는 4,192세대로 대부분 세대의 保險料는 증가.

③ 새로운 同一等級데이블 適用

- 保險料 等級區間の 상위 等級 및 하위 等級의 區間別 保險料를 조정하여 同一 賦課基準을 적용하였을 경우, 保險料가 감소하는 세대수는 삼척시 3,091세대(62.7%), 삼척군 5,852세대(85.4%)로 삼척군 대상 세대는 85%이상이 現行보다 保險料가 감소됨.

3. 政策建議

- 3.1 基本保險料를 완전 폐지하고 이의 부족분을 能力比例保險料로 충당할 경우, 能力比例保險料(所得 및 財産)의 등급에 따라 保險料를 累進的으로 追加賦課하면, 下位等級에 속하는 세대는 現行보다 保險料가 감소하고, 上位等級의 세대는 保險料가 증가한다. 그리고, 能力比例保險料의 모든 等級에 동일한 금액을 追加賦課하면, 無資料世帶 및 被保險者數가 많은 세대의 保險料는 現제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 3.2 世帶當 保險料 廢止는 現行 保險料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폐지효과는 保險料 부과액이 적은 세대의 保險料가 감소하고 保險料賦課額이 많은 세대의 保險料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保險料賦課額이 적은 세대의 保險料輕減效果가 크다.
- 3.3 被保險者當 保險料를 폐지하고 이의 부족분을 世帶當保險料로 충당하는 방안은 被保險者數 3인 이하의 세대는 現行보다 保險料가 증가하며 被保險者數 4인 이상 세대는 保險料가 감소하므로, 被保險者數가 적은 세대의 保險料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 3.4 市·郡 統合時 保險料 賦課體系는 南원시·군과 같이 시조합과 군조합의 保險料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지역은 군조합 대상자의 所得과 財産의 評價率을 낮게 調整하여, 시조합의 能力比例保險料 부과등급테이블을 시·군 조합에 그대로 適用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 3.5 現行 保險料 수준 및 等級區間이 市·郡間 類似한 조합은 새로운 동일 賦課等級 테이블의 적용이 가능하며, 단 現行보다 保險料가 큰 폭으로 增加하는 世帶에 대하여는 保險料引上額의 상한을 두는 방안 등도 考慮할 수 있다.
- 3.6 郡組合의 등급區間別 保險料 수준이 市組合보다 높은 조합은 統

合時 市組合의 保險料는 다소 引上하면서 郡組合 피보험자의 現行 保險料는 引下할 수 있는 새로운 동일 等級 適用이 가능하므로 統 合時 새로운 同一等級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參 考 文 獻

- 고철기 외, 『農漁村年金 釀出水準과 財政展望』,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권순원 외, 『分配不平等的 實態와 主要政策課題』, 한국개발연구원, 1992.
- , 『醫療保險制度的 改善을 위한 政策方案』, 한국개발연구원, 1990.
- 김영모 외, 『自營人에 대한 年金釀出料 賦課基準에 관한 調査研究』, 한국 복지정책연구소, 1988. 12.
- 김한중 외, 『地域醫療保險 財政安定化 方案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1992. 5.
- 노인철, 『地域醫療保險料 賦課體系의 改善方案』, 『보건사회논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7.
- 노인철 외, 『地域醫療保險의 財政安定화를 위한 改善方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1. 12.
- 보건사회부, 『醫療保險 保險料賦課 및 給與의 適正化 方案 研究』, 한림대학사회의학연구소편, 1987.
- 연하청, 『醫療保險의 所得再分配效果 分析』,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겨울호, 1982.
- 연하청 외, 『醫療保險擴大와 財政安定化 方案』,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 자료 87-09.
- , 『醫療保險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한국개발연구원, 1983.
- 의료보장개혁위원회, 『醫療保障改革課題와 政策方向』, 1994. 6.
- 의료보험연합회, 『地域醫療保險組合決算現況』, 각년도.
- , 『地域醫療保險保險料 賦課體系改善研究(중간보고서)』, 1993.
- 정명채, 이영대, 『農漁村地域 醫療保險制度的 問題點과 改善方案研究』,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5.
- 한달선,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 賦課方法』, 『의료보험』, 의료보험연합회, 1988.

현암사, 『'94 税法』, 1994.

社會保險實務研究所, 『國民健康保險基礎講座』, 創巳堂, 1977.

厚生省 保險局, 『國保擔當者ハンドブック』, 社會保險出版社, 1976.

厚生省 保險局 調査課, 『國民健康保險實態調査報告』, 1989.

厚生省 保險局・厚生省 年金局・社會保險廳, 『社會保險六法』, 1989.

足立 正樹, 『各國の社會保障』, 法律文化社, 1993.

厚生省 保險局 企劃課, 『歐美諸國の醫療保障』, 社會保險法規研究會, 1992.

海外社會保障動向研究會, 『海外社會保障動向』, きょうせい, 1989.

健康保險組合聯合會, 社會保障年鑑, 1992.

全國社會保險協會聯合會, 『社會保險六法』, 1989.

庭田範秋, 『社會保障の 課題と財政』, 千倉書房, 1982.

附表 및 附圖

I. 統合對象地域의 保險料 賦課 現況

1. 被保險者 現況
2. 基本保險料 現況
3. 世帶當 月保險料
4. 賦課要素別 評價率
5. 賦課要素別 保險料 比率
6. 能力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 金額 및 保險料
7. 能力比例保險料의 1等級 및 30等級 保險料

II. 基本保險料 改善方案

III. 世帶員數別 保險料

I. 統合對象地域の 保険料 賦課 現況

1. 被保險者 現況

<附表 I-1> 被保險者 現況 : 1993年 12月 31日 現在

(單位 : 명, %)

지 역	총세대수 (A)	적용세대수 (B)	적용률 (B/A)	총인구 (C)	지역피보험자 (D)	적용률 (D/C)
경기						
미금시	23,182	13,790	59.5	74,821	42,613	56.9
남양주군	45,830	28,234	61.6	145,022	86,720	59.7
(소 계)	69,012	42,024	60.9	219,843	129,333	58.8
강원						
춘천시	52,812	24,260	45.9	179,372	75,217	41.9
춘천군	11,540	6,833	59.2	42,289	23,375	55.2
(소 계)	64,352	31,093	48.3	221,661	98,592	44.5
원주시	49,838	25,099	50.4	172,519	79,926	46.3
원주군	14,340	7,731	53.9	50,283	25,931	51.5
(소 계)	64,178	32,830	51.1	222,802	105,857	47.5
강릉시	43,319	22,842	52.7	151,921	72,905	47.9
명주군	19,396	11,086	57.1	68,654	38,213	55.6
(소 계)	62,715	33,928	54.1	220,575	111,118	50.3
삼척시	11,798	4,709	39.9	41,413	15,062	36.3
삼척군	14,992	6,977	46.5	55,082	23,449	42.5
(소 계)	26,790	11,686	43.6	96,495	38,511	39.9
충북						
충주시	40,011	21,267	53.2	140,427	72,398	51.5
충원군	18,737	11,820	63.1	67,759	41,648	61.4
(소 계)	58,748	33,087	56.3	208,186	114,046	54.7
제천시	29,711	16,037	54.9	107,522	53,388	49.6
제천군	10,118	6,330	62.6	35,824	21,724	60.6
(소 계)	39,829	22,367	56.2	143,346	75,112	52.3

<附表 I-1> 繼 續

(單位 : 명, %)

지 역	총세대수 (A)	적용세대수 (B)	적용률 (B/A)	총인구 (C)	지역피보험자 (D)	적용률 (D/C)
충남						
공주시	16,353	7,489	45.8	57,928	26,432	45.6
공주군	21,371	12,777	59.8	84,081	47,298	56.2
(소 계)	37,724	20,266	53.7	142,009	73,730	51.9
대천시	15,317	8,659	56.5	54,670	29,929	54.7
보령군	20,293	12,322	60.7	72,821	43,318	59.4
(소 계)	35,610	20,981	58.9	127,491	73,247	57.4
온양시	19,591	10,028	51.2	64,871	32,191	49.6
아산군	24,371	13,375	54.9	88,175	46,390	52.6
(소 계)	43,962	23,403	53.2	153,046	78,581	51.3
서산시	15,877	9,432	59.4	56,250	32,368	57.5
서산군	23,109	14,449	62.5	84,094	52,428	62.3
(소 계)	38,986	23,881	61.3	140,344	84,796	60.4
전북						
군산시	54,215	27,795	51.3	200,254	91,942	45.9
옥구군	18,173	8,741	48.1	67,023	31,364	46.7
(소 계)	72,388	36,536	50.5	267,277	123,306	46.1
정주시	19,514	9,896	50.7	72,423	34,883	48.1
정읍군	25,196	12,395	49.2	84,383	42,455	50.3
(소 계)	44,710	22,291	49.9	156,806	77,338	49.3
남원시	14,852	7,944	53.5	54,398	26,998	49.6
남원군	16,625	8,952	53.8	57,565	31,474	54.6
(소 계)	31,477	16,896	53.7	111,963	58,472	52.2
김제시	13,060	6,849	52.4	46,785	23,254	49.7
김제군	25,879	14,393	55.6	91,950	48,839	53.1
(소 계)	38,939	21,242	54.6	138,735	72,093	51.9

<附表 I-1> 繼 續

지 역	총세대수 (A)	적용세대수 (B)	적용률 (B/A)	총인구 (C)	지역피보험자 (D)	적용률 (D/C)
전남						
순천시	43,819	22,012	50.2	160,216	75,254	46.9
송주군	20,867	11,091	53.2	75,208	37,859	50.3
(소 계)	64,686	33,103	51.2	235,424	113,113	48.0
나주시	11,578	6,052	52.3	37,979	19,437	51.1
나주군	25,657	14,744	57.5	85,531	46,643	54.5
(소 계)	37,235	20,796	55.9	123,510	66,080	53.5
경북						
포항시	91,460	38,718	42.3	320,836	127,340	39.6
영일군	51,007	23,610	46.3	181,369	79,103	43.6
(소 계)	42,467	62,328	43.7	502,205	206,443	41.1
경주시	43,030	20,529	47.7	144,914	64,868	44.7
경주군	38,986	18,105	46.4	132,527	60,558	45.6
(소 계)	82,016	38,634	47.1	277,441	125,426	45.2
김천시	23,048	10,492	45.5	82,844	36,020	43.4
금릉군	20,462	11,309	55.3	72,504	38,559	53.1
(소 계)	43,510	21,801	50.1	155,348	74,579	48.0
안동시	32,653	15,993	49.0	117,224	53,383	45.5
안동군	22,631	12,191	53.9	77,953	42,068	53.9
(소 계)	55,284	28,184	51.0	195,177	95,451	48.9
구미시	67,245	18,421	27.4	209,203	60,345	28.8
선산군	16,938	8,184	48.3	64,158	27,308	42.5
(소 계)	84,183	26,605	31.6	273,361	87,653	32.0
영주시	22,801	12,238	53.7	83,874	41,791	49.8
영풍군	15,842	9,762	61.6	59,122	34,948	59.1
(소 계)	38,643	22,000	56.9	142,996	76,739	53.6
영천시	15,939	7,699	48.3	53,475	25,325	47.3
영천군	21,321	11,488	53.9	73,471	37,372	50.8
(소 계)	37,260	19,187	51.5	126,946	62,697	49.3

<附表 I-1> 繼 續

(單位 : 명, %)

지 역	총세대수 (A)	적용세대수 (B)	적용률 (B/A)	총인구 (C)	지역피보험자 (D)	적용률 (D/C)
상주시	14,923	7,831	52.5	52,260	26,169	50.0
상주군	25,622	15,761	61.5	86,058	52,704	61.2
(소 계)	40,545	23,592	58.2	138,318	78,873	57.0
접촌시	12,847	6,595	51.3	47,635	23,033	48.3
문경군	16,229	8,370	51.6	61,363	29,612	48.2
(소 계)	29,076	14,965	51.5	108,998	52,645	48.2
경산시	22,281	10,309	46.2	68,776	31,472	45.7
경산군	24,043	11,277	46.9	80,730	37,574	46.5
(소 계)	46,324	21,586	46.5	149,506	69,046	46.1
경남						
마산시	110,023	52,064	47.3	388,600	169,016	43.4
창원군 ¹⁾	12,276	6,425	52.3	43,592	21,878	50.2
(소 계)	122,299	57,489	47.0	432,192	190,894	44.2
창원시	117,992	33,759	28.6	397,324	111,410	28.0
창원군 ¹⁾	12,276	6,425	52.3	43,592	21,878	50.2
(소 계)	130,268	40,184	30.9	44,916	133,288	30.0
진주시	69,599	33,092	47.5	254,820	115,642	45.3
진양군	20,467	10,539	51.4	78,043	38,409	49.2
(소 계)	90,066	43,631	48.4	332,863	154,051	46.2
충무시	26,632	17,378	65.2	97,098	61,141	62.9
통영군	12,591	8,698	69.0	48,645	31,396	64.5
(소 계)	39,223	26,076	66.4	145,743	92,537	63.4
밀양시	13,753	7,118	51.7	48,826	23,704	48.5
밀양군	24,534	12,788	52.1	86,163	44,972	52.1
(소 계)	38,287	19,906	51.9	134,989	68,676	50.8
장승포시	14,143	4,147	29.3	50,392	13,056	25.9
거제군	26,326	12,704	48.2	93,795	42,386	45.1
(소 계)	40,469	16,851	41.6	144,187	55,442	38.4

註 : 1) 창원군의료보험조합은 창원시조합과 마산시조합으로 분산되어 통합되므로 1993년12월 말 현재 자료를 창원시의료보험조합과 마산시의료보험조합에 각각 50%씩 적용된 것으로 가정하였음.

資料 : 의료보험연합회, 『93 지역의료보험조합 결산현황』, 1994. 9.

2. 基本保險料 現況

<附表 I-2> 基本保險料 現況 : 1994年 7月 末 現在

(單位 : 원)

지 역	세대당 보험료	피보험자당 보험료	지 역	세대당 보험료	피보험자당 보험료
미곡시	1700	1600	나주군	1200	1100
남양주군	1900	1700	포항시	1300	1200
춘천시	2260	1600	영일군	1600	1500
춘천군	1900	1400	경주시	1500	1300
원주시	1800	1500	경주군	1500	1500
원주군	1600	1300	김천시	1300	1200
강릉시	1900	1400	금릉군	1100	1100
병주군	1700	1300	안동시	1500	1200
삼척시	1900	1600	안동군	1400	1200
삼척군	1600	1300	구미시	1500	1300
충주시	1400	1200	선산군	1600	1400
증원군	1500	1100	영주시	1400	1000
제천시	1500	1300	영풍군	1400	1200
제천군	1300	1100	영천시	1500	1300
공주시	1500	1100	영천군	1500	1300
공주군	1700	1100	상주시	1500	1300
대천시	1700	1300	상주군	1400	1100
보령군	1600	1100	점촌시	1200	1000
온양시	1500	1100	문경군	1400	1100
아산군	1500	1000	경산시	1700	1400
서산시	2000	1300	경산군	1700	1500
서산군	2000	1200	마산시	1600	1300
군산시	1400	1200	창원군	1300	1100
옥구군	1400	1200	창원시	1400	1600
정주시	1300	1100	진주시	1500	1300
정읍군	1300	1000	진양군	1500	1300
남원시	1500	1300	충무시	1600	1400
남원군	1500	1300	통영군	1400	1200
김제시	1600	1400	밀양시	1600	1400
김제군	1500	1200	밀양군	1600	1500
순천시	1700	1300	장승포시	1900	1400
송주군	1300	1000	거제군	1600	1400
나주시	1100	900			
구 분		세대당 보험료	피보험자당 보험료	* 시 평균은 33개 시, 군 평균은 32개 군의 평균임.	
시:	평균	1,568	1,300		
군:	평균	1,515	1,244		

3. 世帶當 月保險料

<附表 I -3> 世帶當 月保險料

(單位 : 원)

지 역	'93.12월 월보험료	'94. 7월 월보험료	지 역	'93.12월 월보험료	'94. 7월 월보험료
(경기도)			(경상도)		
미금시	12182	13948	포항시	14581	15047
남양주군	11502	13564	영일군	14712	14027
(강원도)			경주시	13729	14623
춘천시	13734	14751	경주군	13546	14194
춘천군	14339	15329	김천시	15226	16260
원주시	15309	16148	금릉군	10782	11940
원주군	14113	14912	안동시	14163	15197
강릉시	13436	14108	안동군	13817	13742
명주군	12047	12628	구미시	15912	16390
삼척시	14840	15201	선산군	12444	13571
삼척군	13109	13435	영주시	11443	12237
(충청도)			영풍군	10638	11108
충주시	12069	13352	영천시	15020	17838
충원군	11975	12993	영천군	13823	14590
제천시	13256	14784	상주시	13948	14566
제천군	11934	12192	상주군	11963	12791
공주시	13388	14380	접촌시	13397	14090
공주군	12739	15492	문경군	12287	13859
대천시	14167	15631	경산시	11660	12511
보령군	12560	14125	경산군	13823	14340
온양시	12938	14571	마산시	12630	13489
아산군	13726	15043	창원군	14005	14000
서산시	12856	13740	창원시	16407	17473
서산군	12140	12975	진주시	14950	16283
(전라도)			진양군	14800	15000
군산시	13924	14971	충무시	14050	14403
옥구군	13669	14834	통영군	12927	13864
정주시	14896	16437	밀양시	14730	15545
정읍군	11547	13483	밀양군	13013	13272
남원시	16042	16983	장승포시	15850	17093
남원군	12836	13195	거제군	14241	15888
김제시	13393	13884			
김제군	11028	11396			
순천시	12431	14038	시 평균	13855	14913
송주군	10904	11195			
나주시	10674	12169	군 평균	12662	13551
나주군	8207	10670			

資料 : 의료보험연합회, 『지역의료보험조합 결산현황』, 1994. 9.

각 조합, 『조합통합에 따른 기초조사서』, 1994. 8.

4. 賦課要素別 評價率

<附表 I -4> 統合對象地域의 賦課要素別 評價率

(單位 : %)

지 역	종합소득	농지소득	기타소득	연금	건물	토지	기타재산
미금시	100	-	8.3	8.3	100	100	20
남양주군 ¹⁾	100	-	5	20	100	100	20
춘천시	100	30	100	20	100	100	20
춘천군	100	70	20	20	100	100	-
원주시	100	70	30	30	100	100	20
원주군	100	50	90	20	100	100	100
강릉시	100	-	20	20	100	100	20
명주군	100	35	70	20	100	100	-
삼척시	100	100	100	20	100	100	-
삼척군	100	100	100	100	100	100	-
충주시	100	60	30	20	100	100	20
충원군	100	100	20	10	100	100	-
제천시	100	-	30	30	100	100	20
제천군	100	100	30	30	100	100	100
공주시	100	30	30	20	100	100	30
공주군	100	100	50	30	100	100	-
대천시	100	15	100	100	100	100	20
보령군	100	80	20	20	100	100	-
온양시	100	30	30	30	100	100	20
아산군	100	100	100	30	100	100	100
서산시	100	100	30	30	100	100	50
서산군	100	100	30	30	100	100	-
군산시	100	20	20	20	100	100	25
옥구군	100	100	100	20	100	100	-
정주시	100	20	30	30	100	100	40
정읍군	100	100	30	30	100	100	-
남원시 ²⁾	100	10	30	30	100	100	25
남원군	100	100	100	30	100	100	-
김제시	100	30	20	20	100	100	20
김제군	100	100	-	20	70	70	-
순천시	100	-	30	15	100	100	20
송주군	100	30	50	30	100	100	100
나주시	100	50	30	30	100	100	30
나주군	100	80	100	30	100	100	-

註 : 1) 남양주군의 기타소득, 연금은 240만원 공제한 후 각각 5%, 20%의 평가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재산은 500만원을 공제한 후 20% 적용하고 있음.

2) 남원시의 경우 기타재산은 1천만원 공제 후 25% 평가율을 적용함.

<附表 I -4> 繼 續

(單位 : %)

지 역	종합소득	농지소득	기타소득	연금	건물	토지	기타재산
포항시	100	30	30	50	100	100	20
영일군	100	기타소득	30	30	100	100	-
경주시	100	60	40	40	100	100	-
경주군	100	100	40	40	100	100	50
김천시	100	70	50	30	100	100	30
금릉군	100	100	100	30	100	100	20
안동시	100	70	40	30	100	70	30
안동군	100	100	30	60	100	100	-
구미시	100	70	40	40	100	100	100
선산군	100	80	100	100	100	100	100
영주시	100	-	20	20	100	100	100
영풍군	100	100	100	30	100	100	-
영천시	100	30	30	20	100	100	20
영천군	100	100	30	15	100	100	30
상주시	100	30	30	30	100	100	30
상주군	60	100	60	30	100	100	20
점촌시	100	40	40	40	100	100	20
문경군	100	33	25	35	100	100	-
경산시	100	60	30	30	100	100	20
경산군	100	60	20	20	100	100	30
마산시 ³⁾	100	70	30	30	100	100	20
창원군	100	80	30	30	100	100	-
창원시	100	70	30	30	100	100	20
진주시	100	50	50	30	100	100	30
진양군	100	100	100	15	100	100	100
충무시	65	20	30	30	60	60	-
통영군	100	60	-	60	100	100	-
밀양시	100	70	100	20	100	100	-
밀양군	100	70	-	30	100	100	-
장승포시	100	30	30	20	100	100	100
거제군	100	-	20	20	100	100	-

註 : 3) 마산시의 경우 기타재산은 600만원 공제한 후 20% 평가율 적용

5. 賦課要素別 保險料 比率

<附表 I -5> 賦課要素別 保險料 賦課 比率 現況

(單位 : %)

지 역	기본 보험료			능력비례보험료			
	소계	세대당	피보험자당	소계	소득	재산	자동차
미곡시	47	12	35	51	25	23	3
남양주군	52	14	38	47	19	24	3
춘천시	48	14	33	51	25	21	4
춘천군	42	12	30	57	27	26	3
원주시	40	11	29	59	26	27	5
원주군	39	10	29	60	27	27	5
강릉시	44	13	31	55	31	18	4
명주군	48	13	35	51	25	18	7
삼척시	46	12	33	53	27	20	6
삼척군	43	11	32	56	27	24	4
충주시	40	10	30	59	26	23	9
충원군	40	11	29	59	28	28	3
제천시	39	10	29	60	27	24	8
제천군	40	10	30	59	27	28	3
공주시	36	10	26	63	29	28	5
공주군	36	10	25	63	34	25	4
대천시	39	10	28	60	31	21	7
보령군	38	11	27	61	34	23	2
온양시	34	10	24	65	31	29	5
아산군	32	10	22	67	33	30	4
서산시	46	14	32	53	19	26	7
서산군	48	9	39	51	16	29	6
군산시	35	9	26	64	34	25	4
옥구군	38	9	28	61	30	27	4
정주시	31	7	23	68	30	36	2
정읍군	35	9	25	65	31	30	2
남원시	34	8	25	65	30	30	4
남원군	45	11	34	54	24	27	3
김제시	45	11	33	54	24	24	5
김제군	48	13	35	51	24	23	3
순천시	43	12	31	56	26	25	4
송주군	42	11	30	58	14	39	3
나주시	32	9	23	67	38	23	5
나주군	43	11	32	56	30	22	3
포항시	34	8	26	65	36	21	8
영일군	43	10	33	56	22	27	6

<附表 I -5> 繼 續

(單位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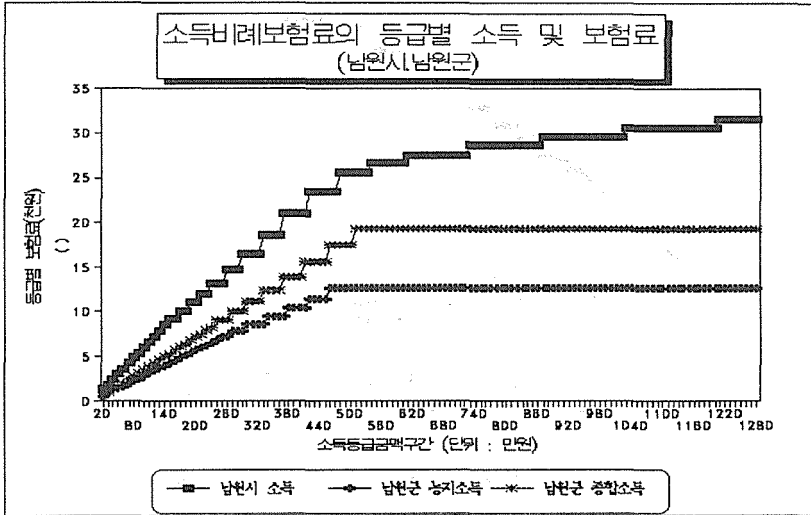
지 역	기본보험료			능력비례보험료			
	소계	세대당	피보험자당	소계	소득	재산	자동차
경주시	38	10	27	61	31	23	7
경주군	45	10	34	54	20	22	12
김천시	33	8	25	66	35	25	6
금릉군	40	9	30	59	34	21	3
안동시	36	9	26	63	34	24	5
안동군	39	10	29	60	27	30	2
구미시	34	9	25	65	32	27	5
선산군	45	11	33	54	28	23	2
영주시	38	11	27	61	29	25	6
영풍군	50	12	38	49	18	27	4
영천시	32	8	23	67	37	24	5
영천군	38	10	28	61	30	24	6
상주시	39	10	28	60	35	24	0
상주군	39	10	28	60	29	26	5
점촌시	32	8	24	67	30	32	4
문경군	37	10	27	62	37	22	2
경산시	47	13	34	52	20	23	7
경산군	46	11	34	47	24	23	6
마산시	42	11	30	57	24	26	5
창원군	35	9	26	64	23	35	4
창원시	35	9	26	64	33	26	5
진주시	36	9	27	63	28	26	7
진양군	40	10	30	59	26	28	4
충무시	44	11	33	55	30	20	4
통영군	40	10	30	59	35	23	1
밀양시	40	10	29	59	31	23	4
밀양군	51	12	39	48	14	32	1
장승포시	36	11	25	63	32	25	5
거제군	38	10	28	61	37	20	3
시: 평균	39	10	28	60	30	25	5
군: 평균	42	10	31	57	27	26	4

註 : 시 평균은 33개 시, 군 평균은 32개 군의 평균치임
(창원군은 마산시와 창원시로 분산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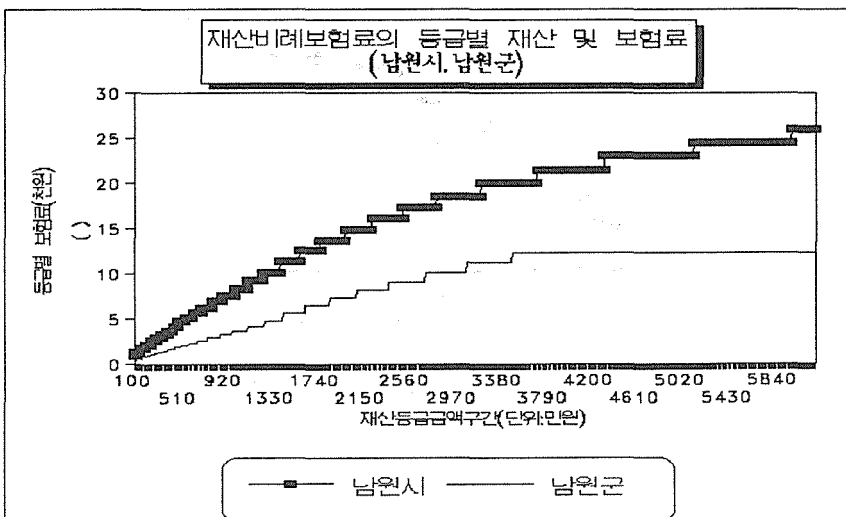
6. 能力比例保險料의 等級區間別 金額 및 保險料

第 I 그룹 : 市組合이 郡組合보다 保險料가 높은 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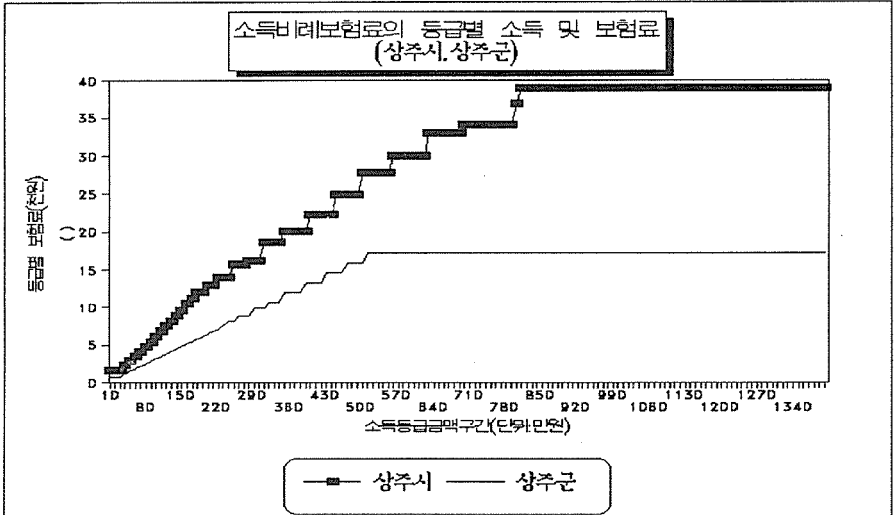
<附圖 1-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남원시·남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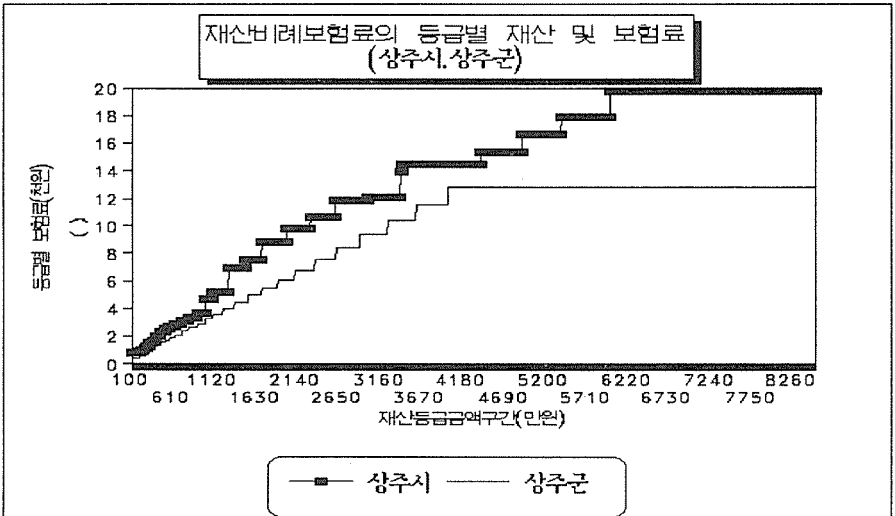
<附圖 1-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남원시·남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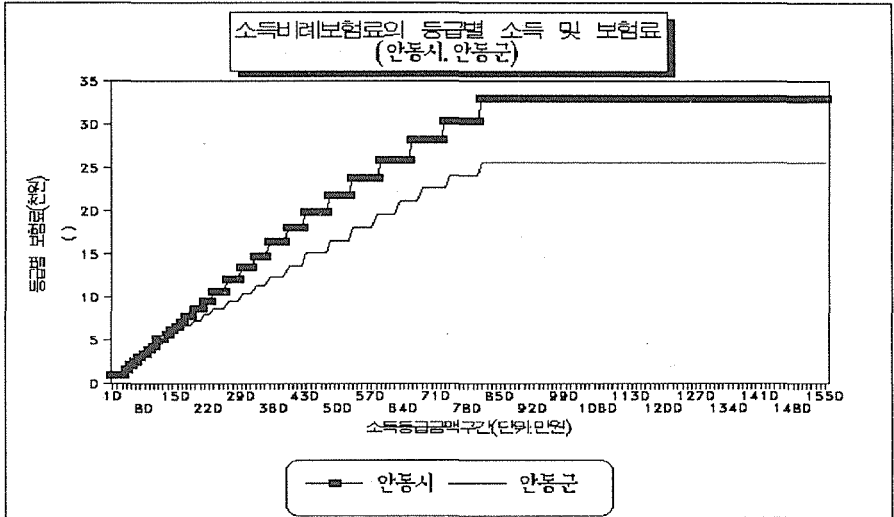
<附圖 2-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상주시·상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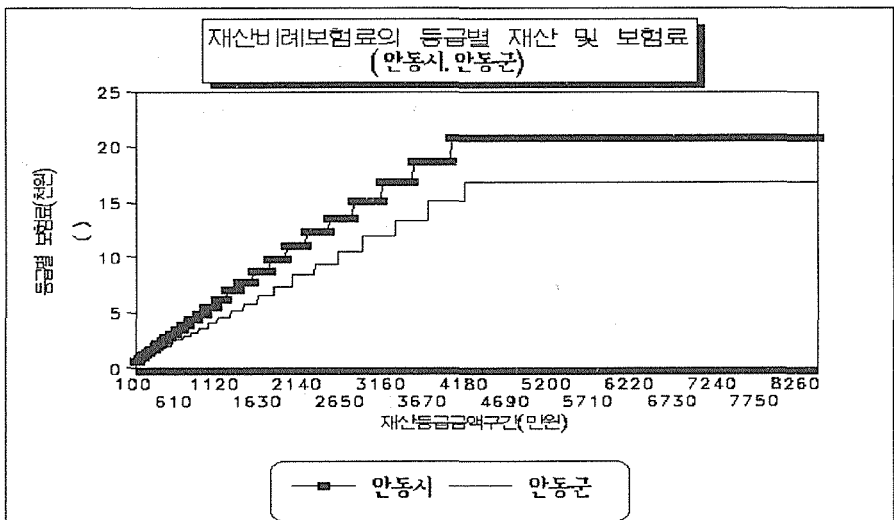
<附圖 2-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상주시·상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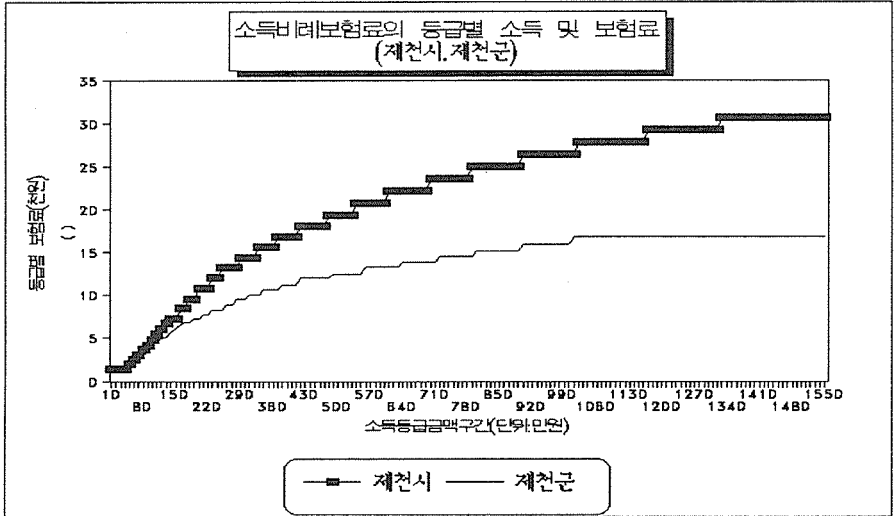
<附圖 3-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안동시·안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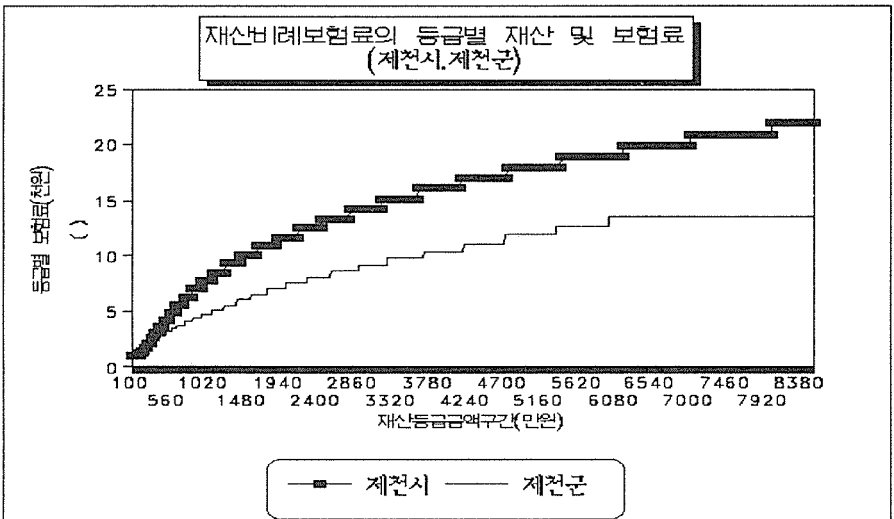
<附圖 3-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안동시·안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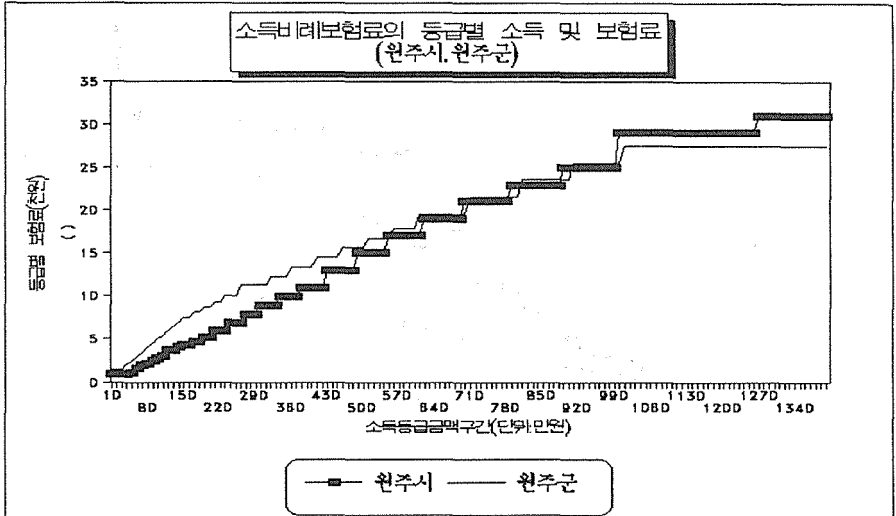
<附圖 4-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제천시·제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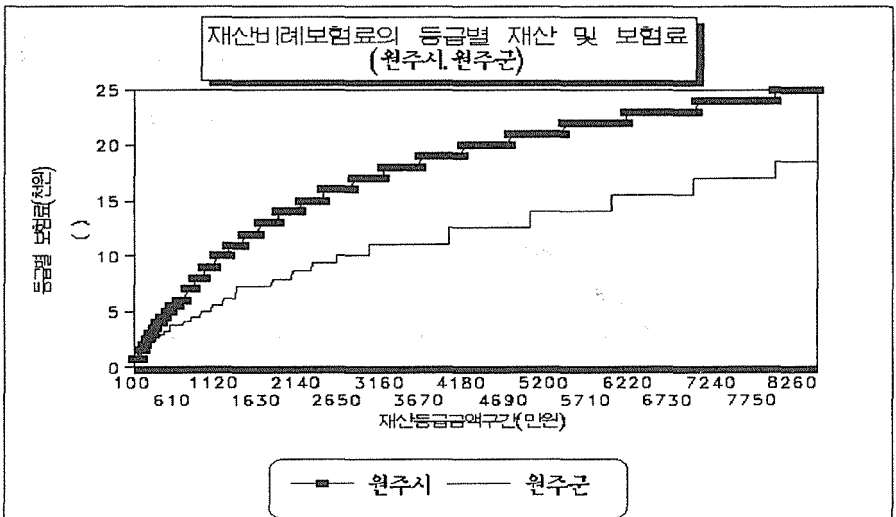
<附圖 4-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제천시·제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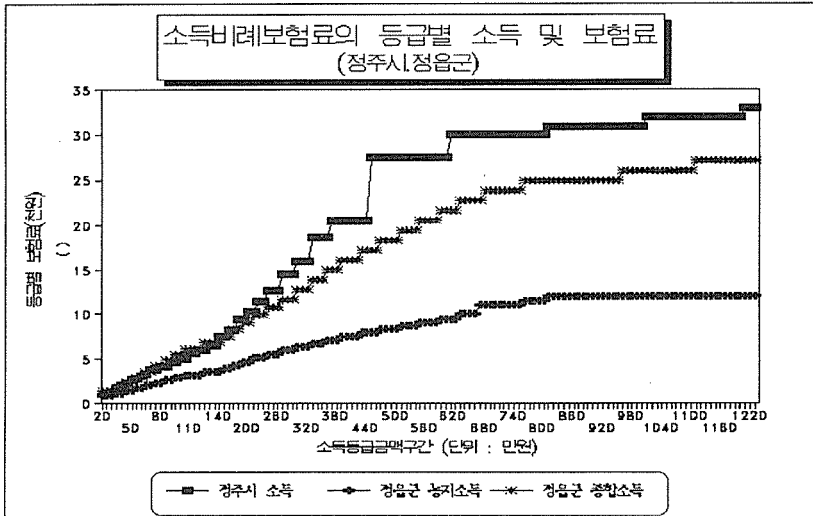
<附圖 5-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원주시·원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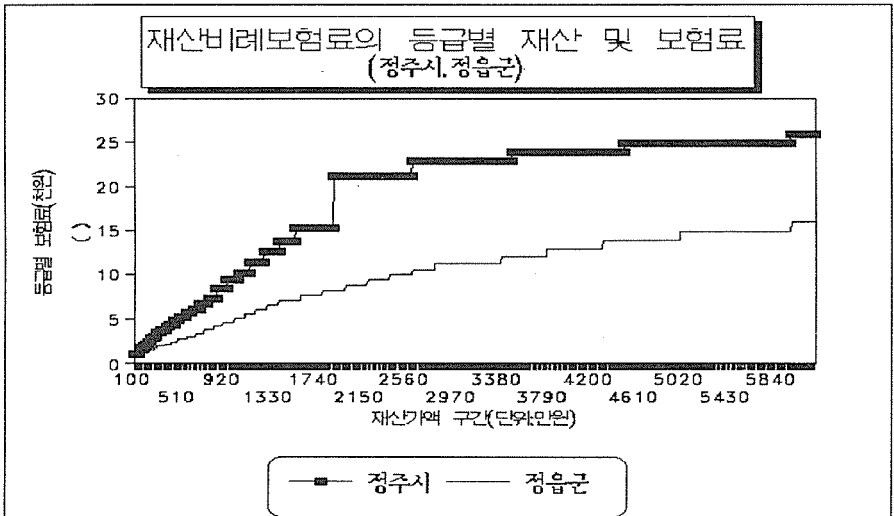
<附圖 5-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원주시·원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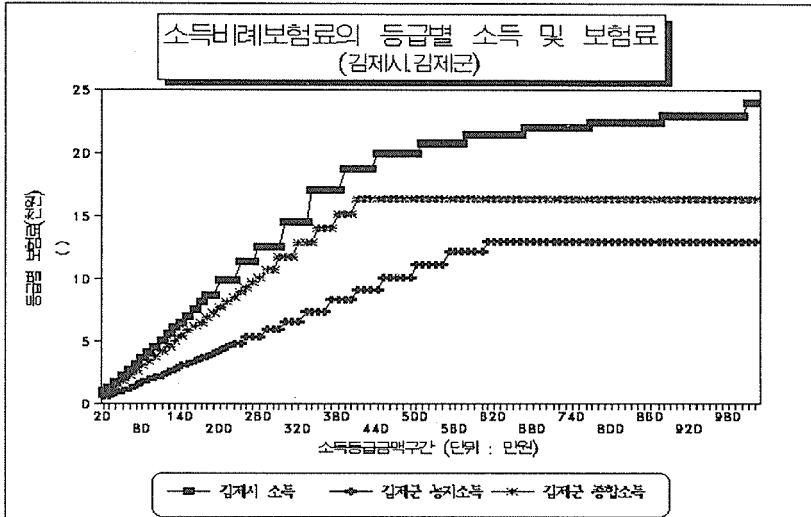
<附圖 6-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정주시·정읍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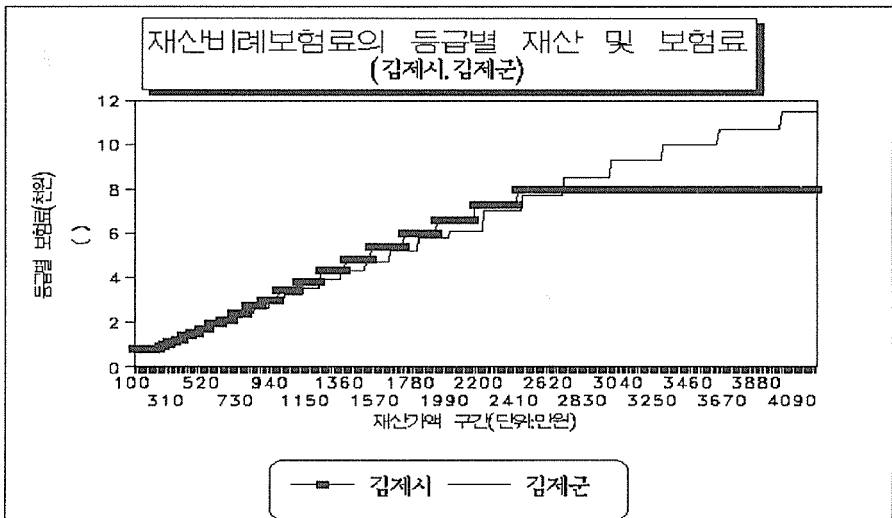
<附圖 6-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정주시·정읍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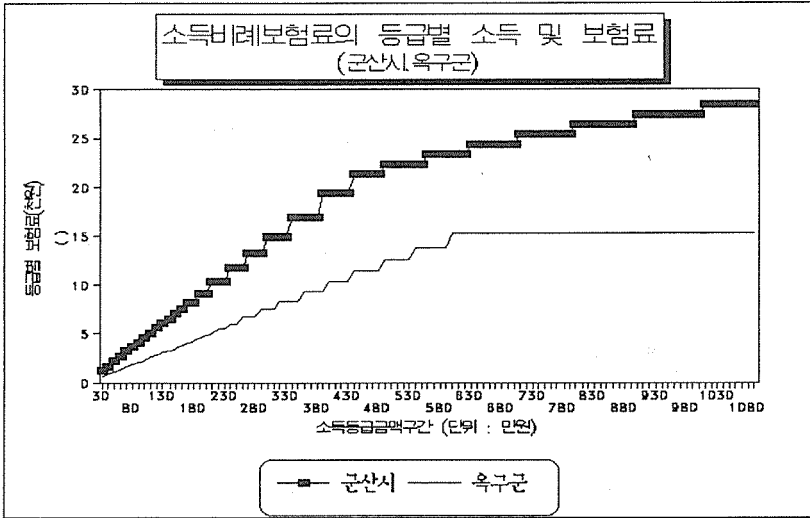
<附圖 7-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김제시·김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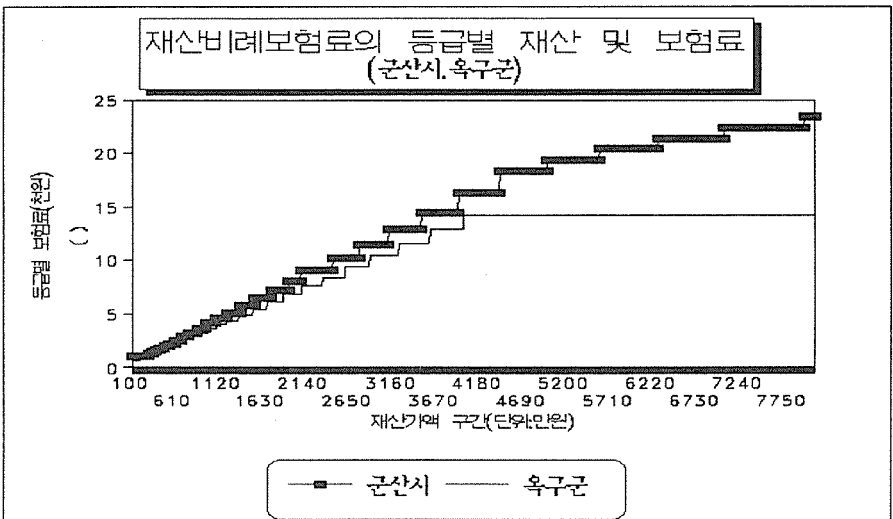
<附圖 7-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김제시·김제군)



<附圖 8-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군산시·옥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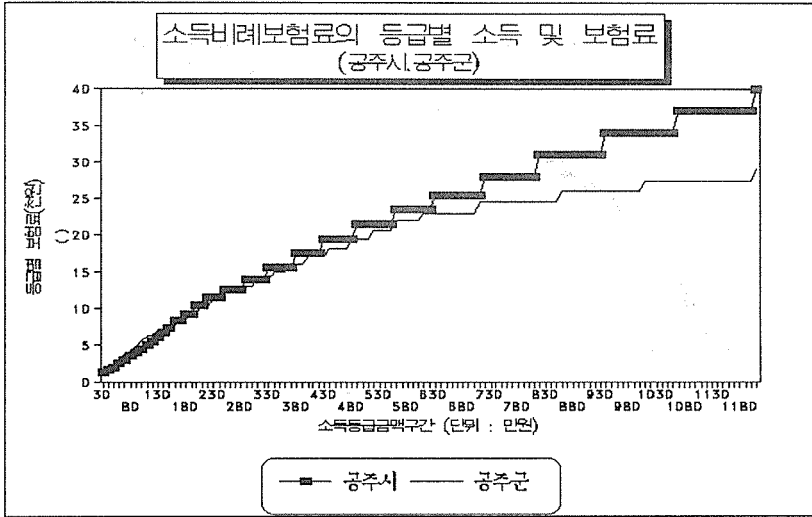


<附圖 8-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군산시·옥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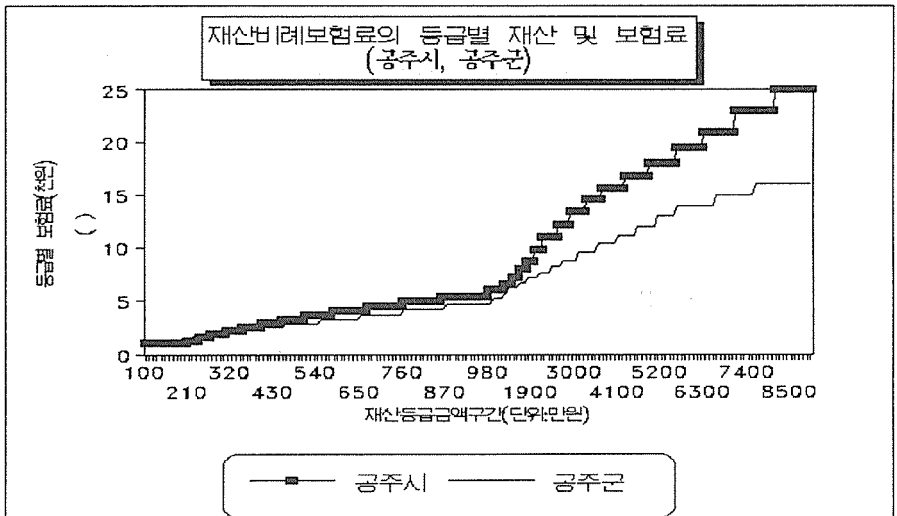


第 II 그룹 : 市組合과 郡組合의 保險料가 비슷한 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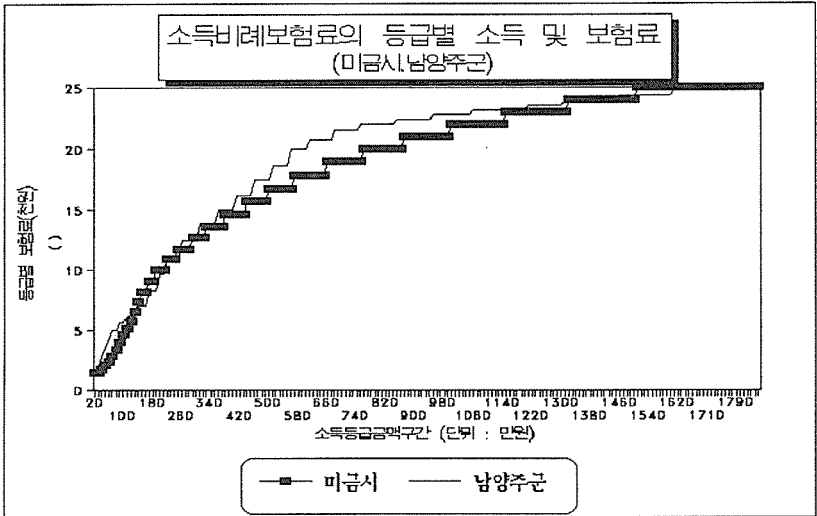
<附圖 9-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공주시·공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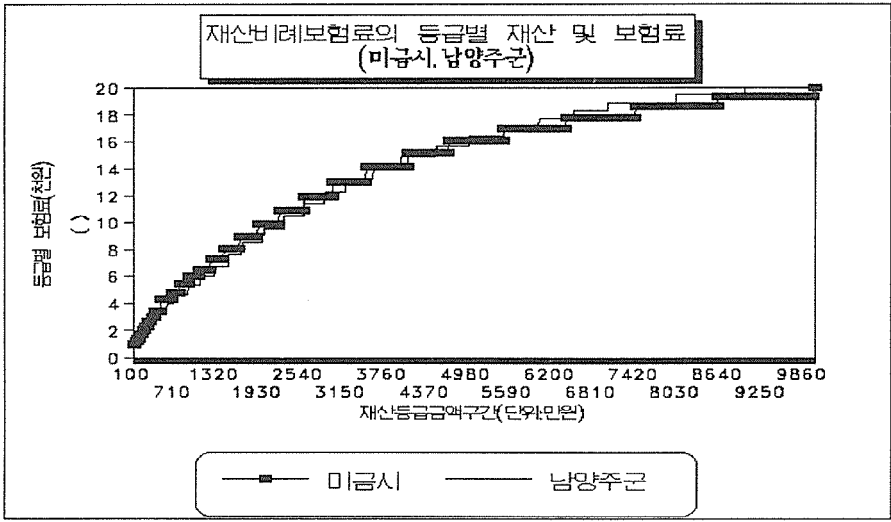
<附圖 9-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공주시·공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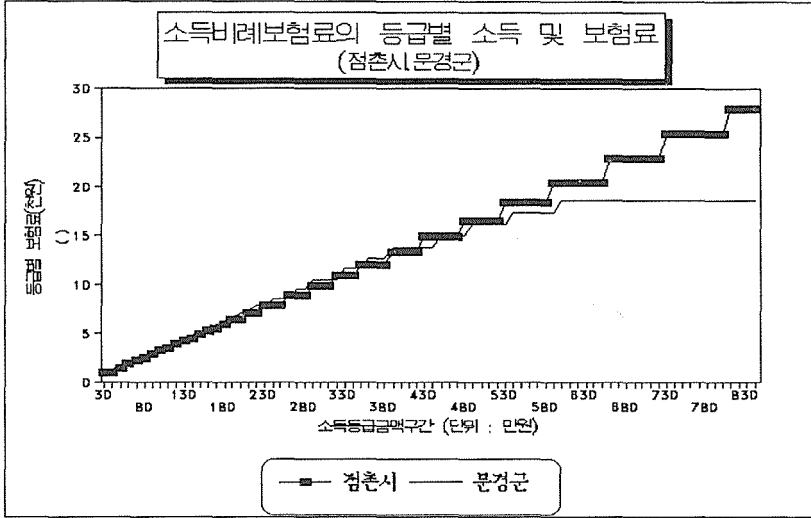
<附圖 10-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미금시·남양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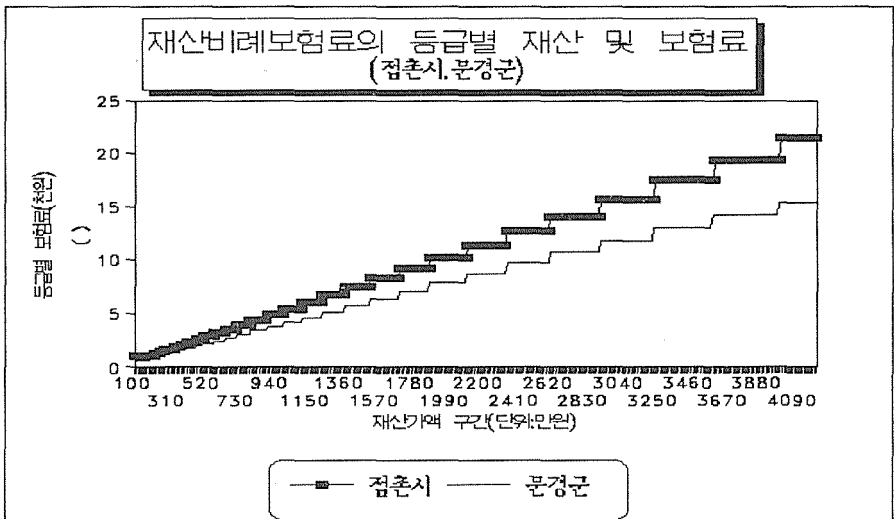
<附圖 10-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미금시·남양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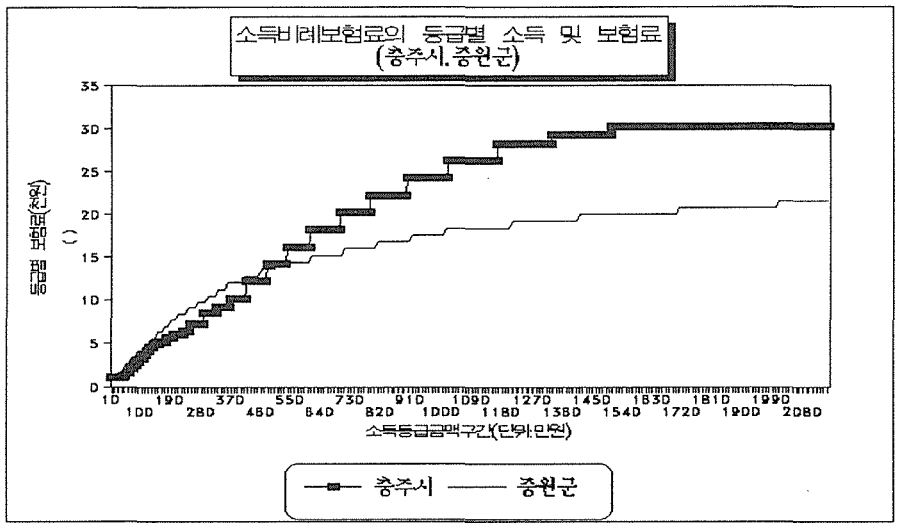
<附圖 11-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점촌시·문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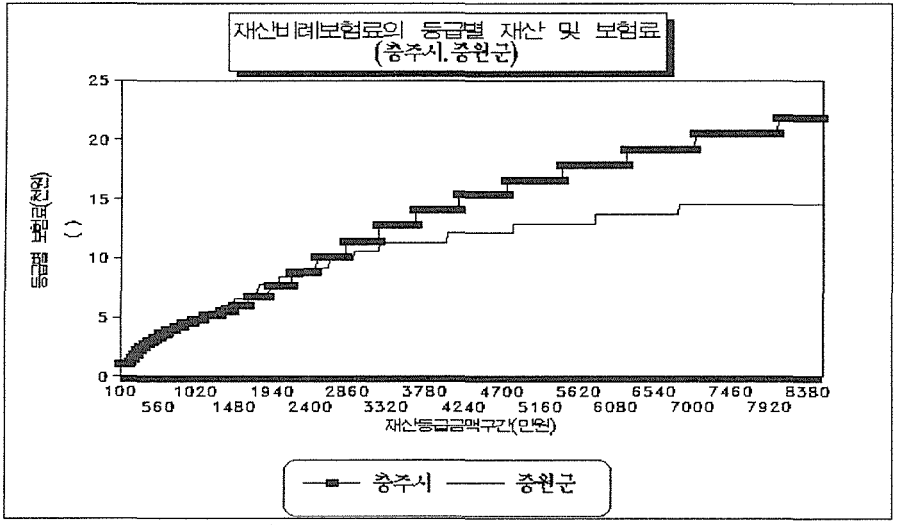
<附圖 11-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점촌시·문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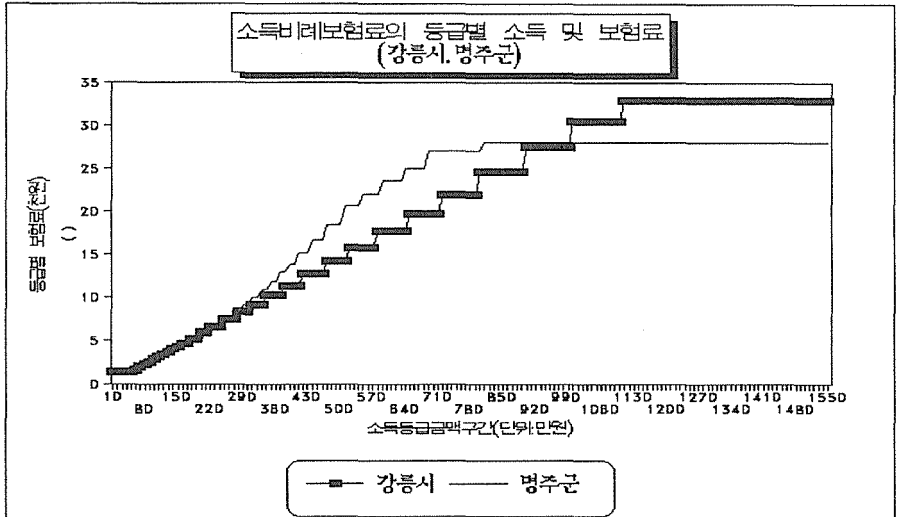
<附圖 12-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충주시·증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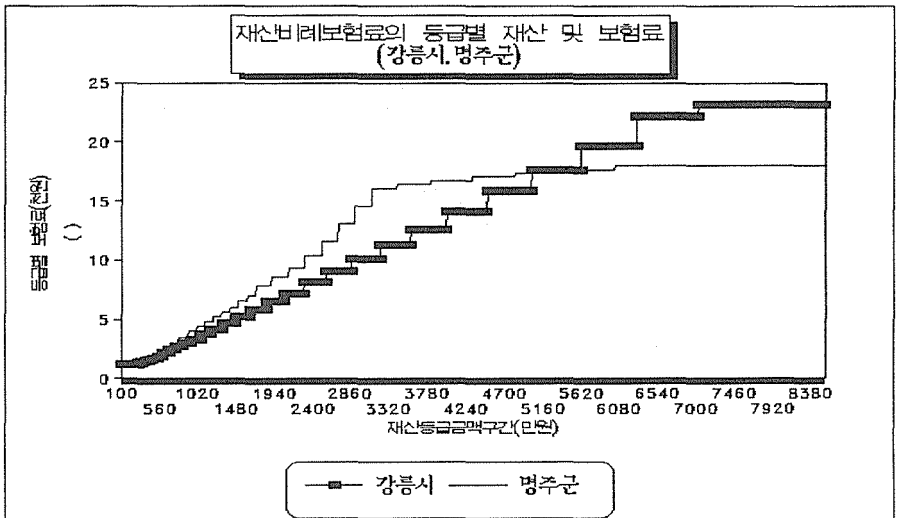
<附圖 12-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충주시·증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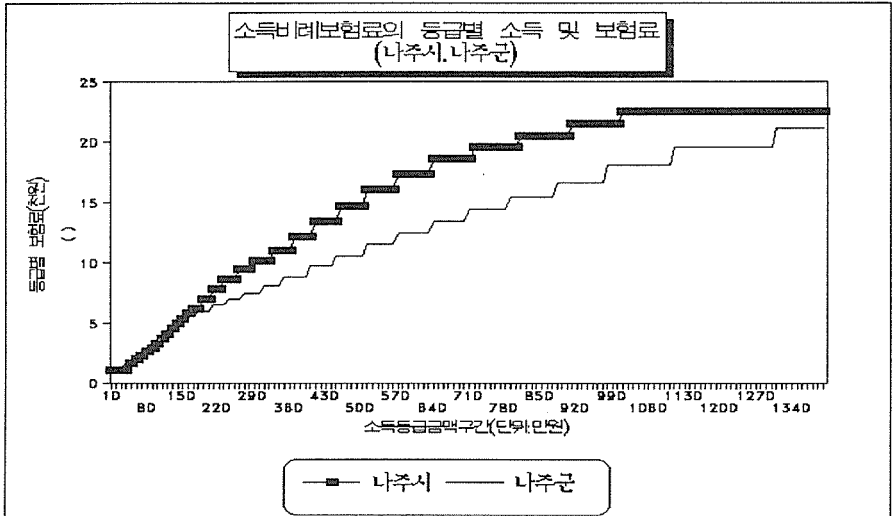
<附圖 13-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강릉시·명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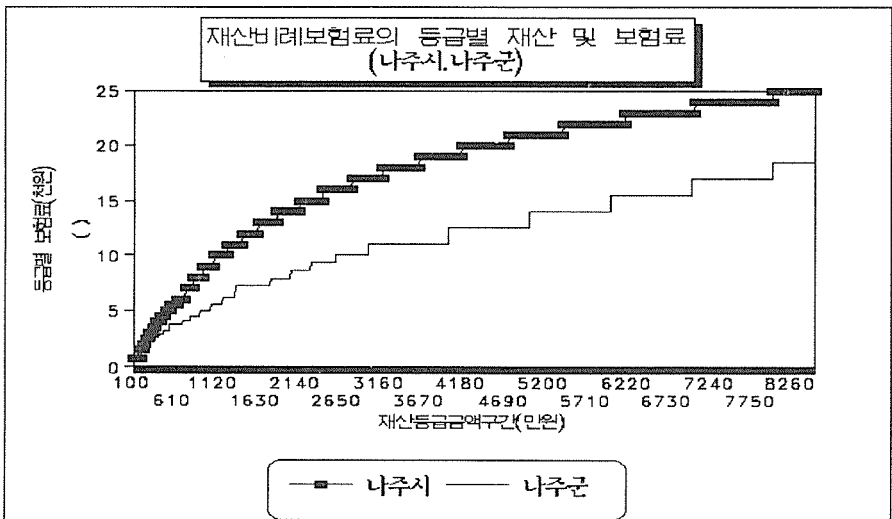
<附圖 13-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강릉시·명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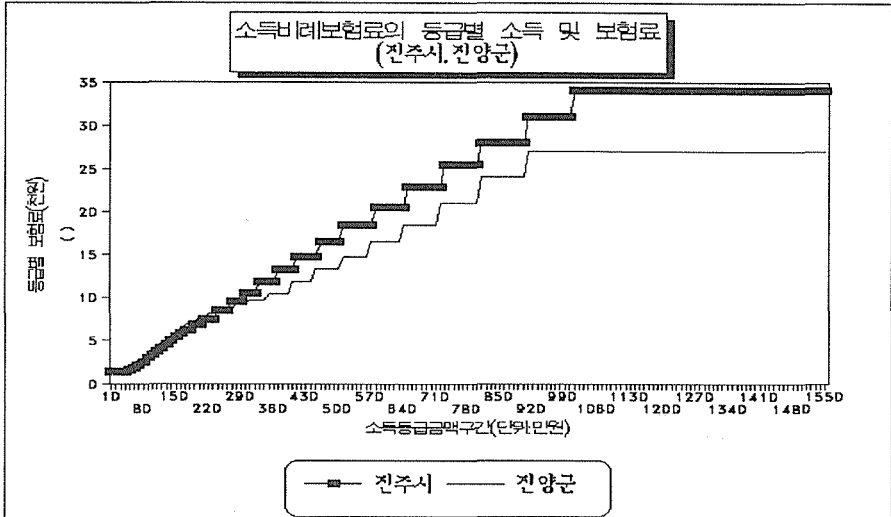
<附圖 14-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나주시·나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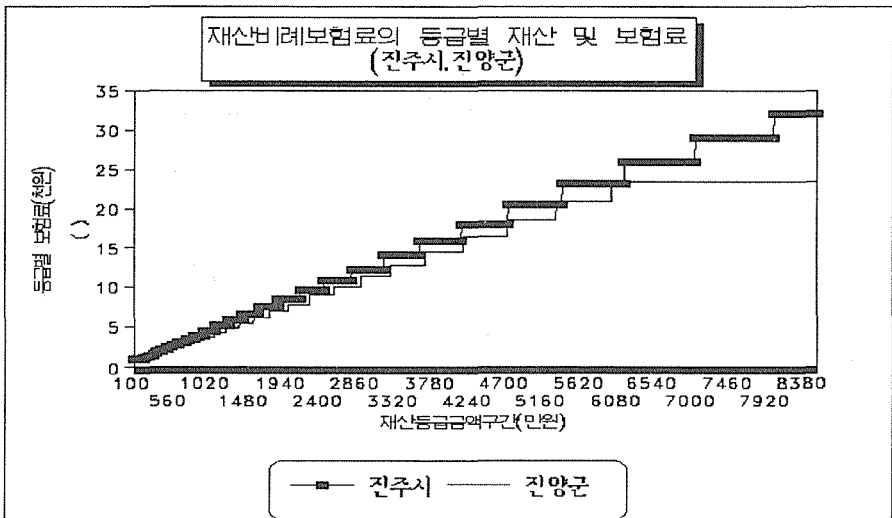
<附圖 14-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나주시·나주군)



<附圖 15-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진주시·진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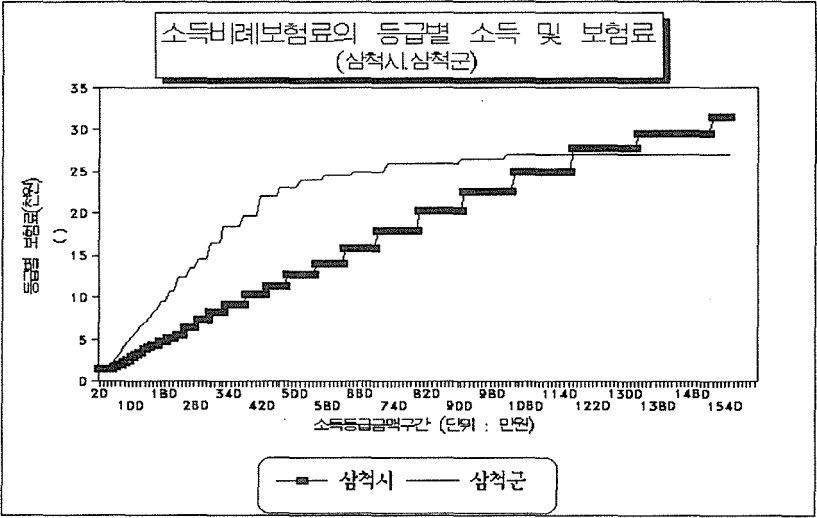


<附圖 15-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진주시·진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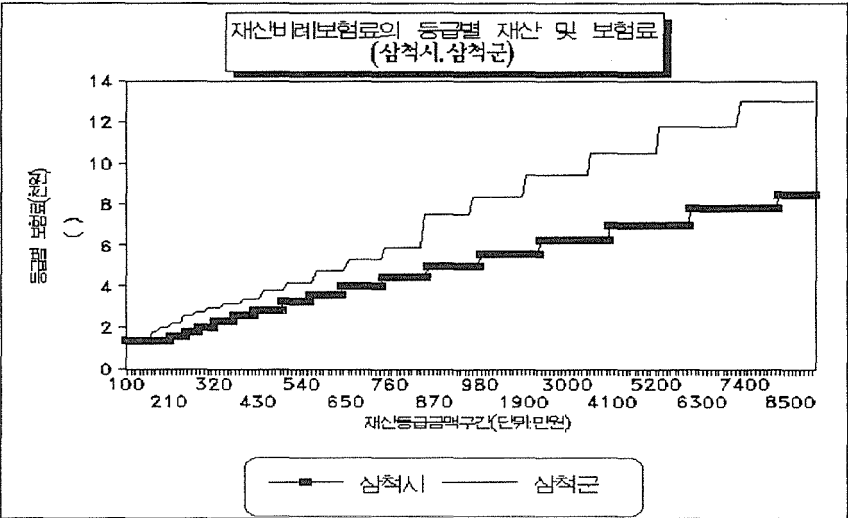


第Ⅲ그룹：市組合보다郡組合의 保險料가 높은 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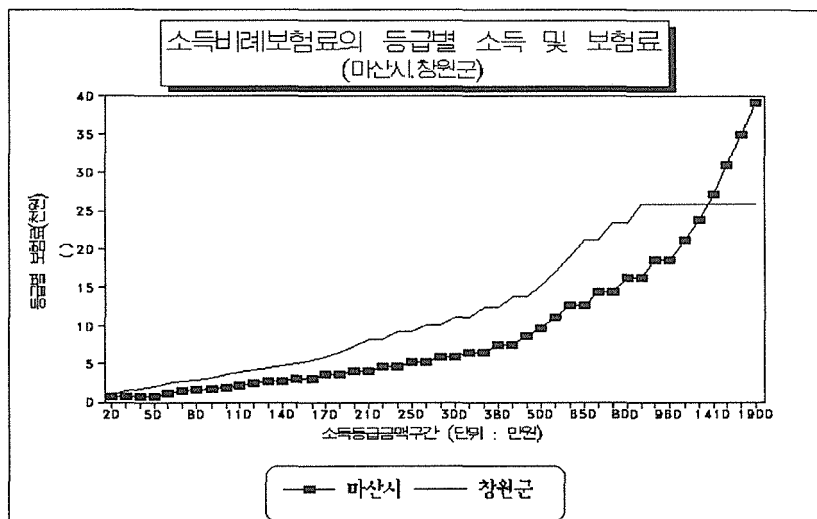
<附圖 16-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삼척시·삼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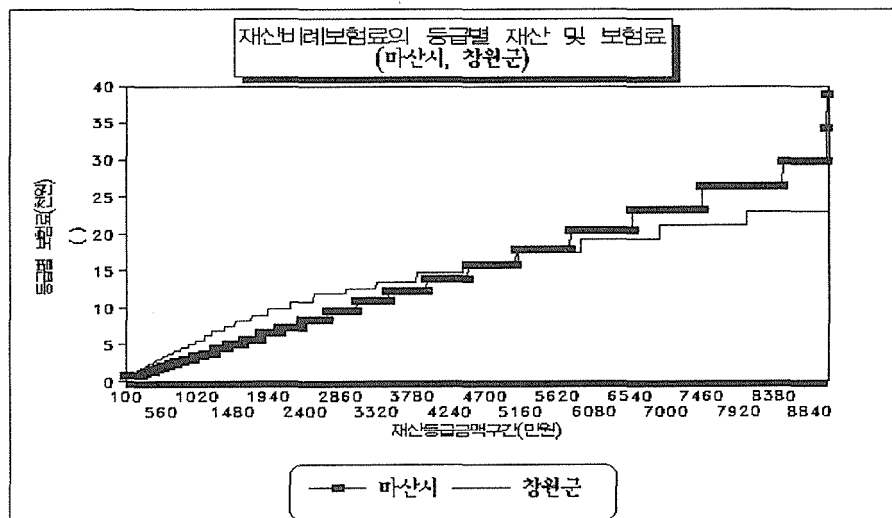
<附圖 16-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삼척시·삼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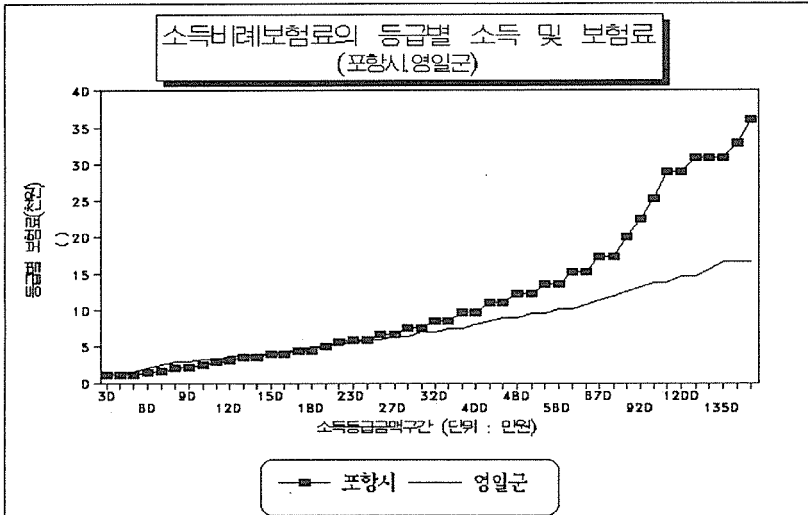
<附圖 17-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마산시·창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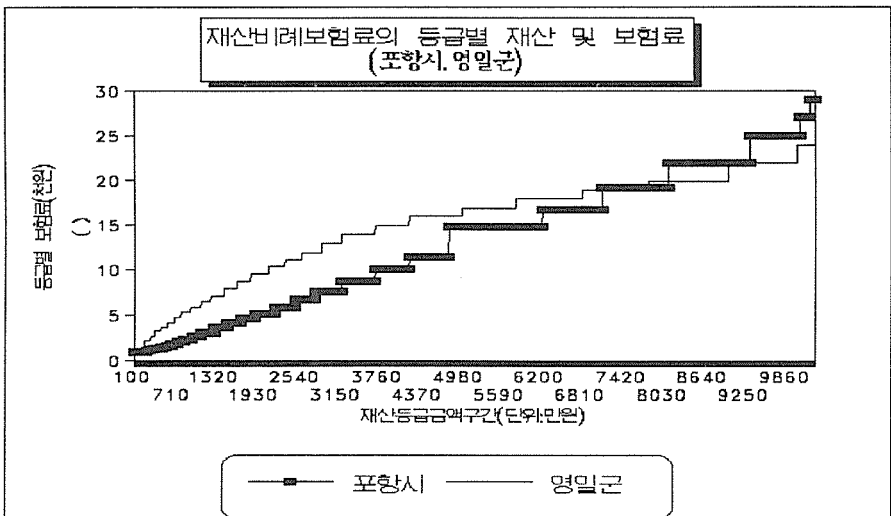
<附圖 17-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마산시·창원군)



<附圖 18-1> 所得比例保險料의 等級別 所得 및 保險料(포항시·영일군)



<附圖 18-2> 財産比例保險料의 等級別 財産 및 保險料(포항시·영일군)



7. 能力比例保險料의 1等級 및 30等級 保險料

<附表 I -6> 1等級 및 30等級의 等級區間別 保險料 : 1994年 7月 末
(單位 : 원)

지 역	소득비례보험료		재산비례보험료		지 역	소득비례보험료		재산비례보험료	
	1등급	30등급	1등급	30등급		1등급	30등급	1등급	30등급
미금시	1500	25000	1000	20000	나주군	1300	21100	1300	14500
남양주군	1500	25000	1000	20000	포항시	1100	35000	1000	29000
춘천시	1400	35000	700	24500	영일군	1000	16600	700	23900
춘천군	1000	27500	700	16500	경주시	800	31700	500	21400
원주시	1000	31000	700	25000	경주군	600	32800	500	20800
원주군	1500	27500	900	18500	김천시	800	32000	800	21000
강릉시	1400	32800	1200	23200	금릉군	900	23000	400	11000
명주군	1400	28000	900	18000	안동시	1000	32800	600	20800
삼척시	1500	31500	1400	23800	안동군	1000	25600	600	17200
삼척군	1500	27000	1200	19000	구미시	900	33500	800	30900
충주시	1200	30200	1000	21800	선산군	800	21000	500	16000
충원군	1100	21600	1100	14500	영주시	800	26700	400	16700
제천시	1400	32000	1000	22000	영풍군	700	14400	700	14400
제천군	1000	16800	800	13500	영천시	900	29000	800	19000
공주시	1400	40000	1000	25000	영천군	800	23000	500	12000
공주군	1900	31000	800	16000	상주시	1500	38800	800	19800
대천시	1500	35000	800	25000	상주군	700	17200	400	12800
보령군	1600	35400	1400	23500	점촌시	1000	28000	1000	21500
온양시	1000	35100	1000	26600	문경군	800	18600	600	15400
아산군	900	28000	400	16000	경산시	1000	20000	1000	15000
서산시	300	26500	800	20000	경산군	1500	18000	1000	15000
서산군	500	26000	900	24000	마산시	800	39200	800	38800
군산시	1200	28400	1000	23400	창원군	1000	26000	900	23000
옥구군	600	15300	600	14300	창원시	1100	34600	800	29900
정주시	1100	32900	1000	25900	진주시	1400	34000	900	32000
정읍군	800	27100	1100	16000	진양군	1000	27000	800	23400
남원시	1300	31600	1000	26000	충무시	1400	41800	1200	33000
남원군	500	19200	300	12300	통영군	1300	32000	1000	17000
김제시	1000	24000	800	17000	밀양시	1000	25000	700	14600
김제군	600	16400	600	11500	밀양군	1000	24500	700	14000
순천시	1100	29100	900	22900	장승포시	1400	34400	1200	28200
승주군	1000	22800	1000	11700	거제군	1500	31000	1100	26000
나주시	1100	22500	600	14600					

II. 基本保險料 改善方案

1. 基本保險料 廢止方案

기본보험료를 폐지하고 保險料 부족분을 능력비례보험료의 모든 등급에 일률적으로 가산하는 방안

<附表 II-1> 基本保險料 廢止 및 能力比例保險料 加算(공주시)

구 분 피보험자수	무자료세대	소득 또는 재산 보유세대	소득과 재산 보유세대
1인세대	- 2,600원(107세대)	+1,300원(903세대)	+5,200원(176세대)
2인세대	- 3,700원(55세대)	+ 200원(663세대)	+4,100원(206세대)
3인세대	- 4,800원(64세대)	- 900원(1,015세대)	+3,000원(393세대)
4인세대	- 5,900원(53세대)	-2,000원(1,353세대)	+1,900원(850세대)
5인세대	- 7,000원(26세대)	-3,100원(578세대)	+ 800원(551세대)
6인세대	- 8,100원(6세대)	-4,200원(177세대)	- 300원(217세대)
7인세대	- 9,200원(5세대)	-5,300원(68세대)	-1,400원(112세대)
8인세대	-10,300원(1세대)	-6,400원(24세대)	-2,500원(39세대)
9인세대		-7,500원(3세대)	-3,600원(14세대)
10인세대		-8,600원(3세대)	-4,700원(2세대)
11인세대			-5,800원(2세대)
계	317세대	4,787세대	2,562세대

註 : 1) 부호가 -인 경우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감소되는 경우이며, 부호가 +인 경우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임.

2) 현행 : 1,500원+1,100원×피보험자수

개선 : 소득, 재산비례보험료+3,900원

<附表 II-2> 基本保險料 廢止 및 能力比例保險料 加算(공주군)

구 분 피보험자수	무자료세대	소득 또는 재산 보유세대	소득과 재산 보유세대
1인세대	-2,800원(14세대)	+ 400원(883세대)	+3,600원(1,023세대)
2인세대	-3,900원(8세대)	- 700원(440세대)	+2,500원(1,732세대)
3인세대	-5,000원(세대)	-1,800원(473세대)	+1,400원(1,522세대)
4인세대	-6,100원(1세대)	-2,900원(644세대)	+ 300원(2,063세대)
5인세대	-7,200원(1세대)	-4,000원(260세대)	- 800원(1,636세대)
6인세대		-5,100원(69세대)	-1,900원(1,083세대)
7인세대		-6,200원(23세대)	-3,000원(516세대)
8인세대		-7,300원(5세대)	-4,100원(184세대)
9인세대		-8,400원(3세대)	-5,200원(69세대)
10인세대			-6,300원(19세대)
11인세대			-7,400원(4세대)
계:12,675	24세대	2,800세대	9,851세대

註 : 1) 부호가 -인 경우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감소되는 경우이며, 부호가 +인 경우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임.

2) 현행 : 1,700원+1,100원×피보험자수

개선 : 소득, 재산비례보험료+3,200원

2. 世帶當保險料를 廢止하고 能力比例保險料에 加算하는 方案

<附表 II-3> 世帶當保險料 廢止 및 能力比例保險料 加算(남원시)

무자료세대	소득 또는 재산보유세대	소득과 재산보유세대
-1,500원 (376세대)	-500원 (4,156세대)	+1,500원 (3,625세대)

註 : 1) 현행 : 1,500원+1,300원×피보험자수

개선 : 소득, 재산비례보험료+1,000원

<附表 II-4> 世帶當保險料 廢止 및 能力比例保險料 加算(공주시)

무자료세대	소득 또는 재산보유세대	소득과 재산보유세대
-1,500원 (318세대)	-400원 (4,788세대)	+700원 (2,562세대)

註 : 1) 현행 : 1,500원 + 1,100원 × 피보험자수
 개선 : 소득, 재산비례보험료 + 1,100원

<附表 II-5> 世帶當保險料 廢止 및 能力比例保險料 加算(공주군)

무자료세대	소득 또는 재산보유세대	소득과 재산보유세대
-1,700원 (24세대)	-700원 (2,825세대)	+300원 (9,855세대)

註 : 1) 현행 : 1,700원 + 1,100원 × 피보험자수
 개선 : 소득, 재산비례보험료 + 1,000원

3. 被保險者當保險料를 廢止

가. 保險料 부족분을 能力比例保險料에 加算하는 方案

<附表 II-6> 被保險者當 保險料 廢止案(1) (공주시)

구 분 피보험자수	무자료세대	소득 또는 재산 보유세대	소득과 재산 보유세대
1인세대	-1,100원(107세대)	+1,700원(903세대)	+4,500원(176세대)
2인세대	-2,200원(55세대)	+ 600원 (663세대)	+3,400원(206세대)
3인세대	-3,300원(64세대)	- 500원(1,015세대)	+2,300원(393세대)
4인세대	-4,400원(53세대)	-1,600원(1,353세대)	+1,200원(850세대)
5인세대	-5,500원(26세대)	-2,700원(578세대)	+ 100원(551세대)
6인세대	-6,600원(6세대)	-3,800원(177세대)	-1,000원(217세대)
7인세대	-7,700원(5세대)	-4,900원(68세대)	-2,100원(112세대)
8인세대	-8,800원(1세대)	-6,000원(24세대)	-3,200원(39세대)
9인세대		-7,100원(3세대)	-4,300원(14세대)
10인세대		-8,200원(3세대)	-5,400원(2세대)
11인세대			-6,500원(2세대)
계:7,666	317세대	4,787세대	2,562세대

註 : 1) 부호가 -인 경우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감소되는 경우이며, 부호가 +인 경우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임.

2) 현행 : 1,500원 + ,100원 × 피보험자수

개선 : 소득, 재산비례보험료 + 2,800원

<附表 II-7> 被保險者當 保險料 廢止案(1) (공주군)

구 분 피보험자수	무자료세대	소득 또는 재산 보유세대	소득과 재산 보유세대
1인세대	-1,100원(14세대)	+1,100원 (883세대)	+3,300원(1,023세대)
2인세대	-2,200원(8세대)	변함없음(440세대)	+2,200원(1,732세대)
3인세대	-3,300원(3세대)	-1,100원(473세대)	+1,100원(1,522세대)
4인세대	-4,400원(1세대)	-2,200원(644세대)	변함없음(2,063세대)
5인세대	-5,500원(1세대)	-3,300원(260세대)	-1,100원(1,083세대)
6인세대		-4,400원(69세대)	-2,200원(516세대)
7인세대		-5,500원(23세대)	-3,300원(184세대)
8인세대		-6,600원(5세대)	-4,400원(69세대)
9인세대		-7,700원(3세대)	-5,500원(19세대)
10인세대			-6,600원(4세대)
11인세대			-7,700원(1세대)
계:11,040	24세대	2,800세대	8,216세대

註 : 1) 부호가 -인 경우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감소되는 경우이며, 부호가 +인 경우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임.

2) 현행 : 1,700원+1,100원×피보험자수

개선 : 소득, 재산비례보험료+2,200원

나. 保險料 부족분을 世帶當保險料에 加算하는 方案

<附表 II-8> 被保險者當 保險料廢止案(2) (공주시)

구 분 피보험자수	보험료 증감
1인세대	+2,700원(1,186세대)
2인세대	+1,600원(924세대)
3인세대	+ 500원(1,472세대)
4인세대	- 600원(2,256세대)
5인세대	-1,700원(1,155세대)
6인세대	-2,800원(400세대)
7인세대	-3,900원(185세대)
8인세대	-5,000원(64세대)
9인세대	-6,100원(17세대)
10인세대	-7200원(5세대)
계	7,664세대

註 : 1) 피보험자당 보험료 폐지 후 세대당보험료에 가산

현재 : 1,500원+1,100원×피보험자수

피보험자당보험료폐지안 : 세대당보험료 5,300원 부과

<附表 II-9> 被保險者當 保險料廢止案(2) (삼척시)

구 분 피보험자수	보험료 증감
1인세대	+3,500원(977세대)
2인세대	+1,900원(669세대)
3인세대	+ 300원(990세대)
4인세대	-1,300원(1,291세대)
5인세대	-2,900원(595세대)
6인세대	-4,500원(223세대)
7인세대	-6,100원(72세대)
8인세대	-7,700원(23세대)
9인세대	-9,300원(3세대)
10인세대	-10,900원(6세대)
계	4,849세대

註 : 1) 피보험자당 보험료 폐지 후 세대당보험료에 가산
 현재: 1,900원+1,600원×피보험자수
 피보험자당 보험료폐지안: 세대당 보험료 7,000원 부과

<附表 II-10> 被保險者當 保險料廢止案(2) (공주군)

구 분 피보험자수	보험료 증감
1인세대	+2,800원(1,920세대)
2인세대	+1,700원(2,180세대)
3인세대	+ 600원(1,995세대)
4인세대	- 500원(2,708세대)
5인세대	-1,600원(1,897세대)
6인세대	-2,700원(1,176세대)
7인세대	-3,800원(539세대)
8인세대	-4,900원(189세대)
9인세대	-6,000원(72세대)
10인세대	-7,100원(19세대)
11인세대	-8,200원(4세대)
계	12,699세대

註 : 1) 피보험자당 보험료 폐지 후 세대당보험료에 가산
 현재: 1,700원+1,100원×피보험자수
 피보험자당보험료 폐지안: 세대당 보험료 5,300원 부과

Ⅲ. 世帶員數別 保險料

<附表 Ⅲ-1> 世帶員數別 保險料(공주시)

(單位 : 원)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당 월보험료	기본보험료	능력비례보험료
1	1,186(15.5%)	7,473	2,600	4,873
2	924(12.1%)	10,201	3,800	6,501
3	1,472(19.2%)	12,554	5,000	7,554
4	2,256(29.4%)	16,101	6,200	9,902
5	1,155(15.1%)	19,089	7,400	11,690
6	400(5.2%)	22,462	8,600	13,862
7	185(2.4%)	25,182	9,800	15,382
8	64(0.8%)	31,707	11,000	20,708
9	17(0.2%)	28,594	12,200	16,394
10	5(0.1%)	29,922	13,400	16,522

<附表 Ⅲ-2> 世帶員數別 保險料(공주군)

(單位 : 원)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당 월보험료	기본보험료	능력비례보험료
1	1,944(15.8%)	8,130	2,600	5,330
2	2,210(17.1%)	12,346	3,900	8,446
3	2,031(15.7%)	14,612	5,000	9,612
4	2,746(21.3%)	16,516	6,100	10,416
5	1,923(14.9%)	18,956	7,200	11,756
6	1,200(9.3%)	21,393	8,300	13,093
7	553(4.3%)	23,429	9,400	14,092
8	193(1.5%)	25,426	10,500	14,926
9	75(0.6%)	28,374	11,600	16,774
10	28(0.2%)	30,971	12,700	18,271

<附表 Ⅲ-3> 世帶員數別 保險料(남원군)

(單位 : 원)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당 월보험료	기본보험료	능력비례보험료
1	1,570(18.2%)	6,244	2,800	3,444
2	1,627(18.9%)	10,349	4,100	6,249
3	1,373(15.9%)	12,724	5,400	7,324
4	1,537(17.8%)	14,748	6,700	8,048
5	1,191(13.8%)	16,828	8,000	8,828
6	765(8.9%)	19,028	9,300	10,728
7	355(4.1%)	21,313	10,600	10,713
8	146(1.7%)	23,260	11,900	11,360
9	40(0.5%)	23,887	13,200	10,687
10	23(0.3%)	29,143	14,500	14,643

附 錄

附錄 A

日本 國民健康保險의 保險料와 國民健康保險稅

附錄 B

獨逸의 農業者 疾病保險

附錄 A

日本 國民健康保險의 保險料와 國民健康保險稅

1. 國民健康保險財政의 構造

國民健康保險事業에 필요한 비용은, 保險給與에 필요한 經費, 보건시설에 필요한 經費,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적 經費의 3가지로 大別된다. 이러한 費用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保險料(稅), 국가가 부담하는 國庫負擔(補助)金, 都道府縣의 補助金, 市町村의 補助金등에 의해 充당된다.

國民健康保險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서, 被用者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와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은 차이가 없으나, 國民健康保險은 피용자보험에서의 사업주 부담 保險料가 없는 점, 피보험자에 저소득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경영주체가 市町村이므로 保險者間 재정조정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의 이유로 피용자보험과 비교하여 국고부담의 비율이 높다.

國民健康保險 비용의 대부분은, 保險給與 특히 療養給與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 療養의 급여에 관한 비용부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수익자부담:	30%(일부부담)
보험자부담:	25%(보험료)
보험자부담:	5%(재정교부금)
보험자부담:	40%(국고부담)

따라서 療養 급여비에 관해서는 臨時財政調整 交付金を 제외하면 보험자 부담액 중 약 64%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6%는 保險料(稅)로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며 都道府縣이나 市町村의 보조금이 있는 보험자의 경우는 保險料(稅) 부분이 그만큼 적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국민건강조합의 요양급여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정촌의 경우와 달리 32/100이다(法 第73條). 이처럼 국민건강사업은 國庫負擔과 保險料(稅)가 주요 財源으로 운영되며, 市町村에 대한 국고부담금은 療養給與費의 실적에 대해 40%가 교부된다. 그러므로 시정촌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서 국고부담(補助)금 및 都道府縣 보조금, 市町村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保險料(稅)로서 확보해야 하며, 이것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는 국고 부담금의 액수를 減額할 수 있게 되어 있다(地方稅法 第71條참조).

(地方稅法)

第69條 국가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 대해 國民健康保險 사무의 집행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第70條 국가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市町村에 대해, 療養 급여 및 特定 療養費, 요양비 및 高額療養費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 노인보건의료비 據出金の 납부에 필요한 비용의 40/100을 부담한다.

第71條 市町村이 확보해야 하는 수입을 부담하게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前條의 규정에 따라 當該 市町村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減額할 수 있다.

第72條 국가는 國民健康保險의 財政을 調整하기 위해, 政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대해 財政交付金を 交付한다.

2. 國民健康保險의 保險料와 國民健康保險稅

사회보험의 保險料는 원칙적으로 所得 또는 부담능력에 맞게 부과되고, 그 총액은 전체 지불에 필요한 액수가 되어야 하며, 保險料 算定에는 위험률 기타 보험기술적 요소가 감안된다.

國民健康保險에서도 保險料는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고지출금을 제외한 國保事業의 財源은 保險料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市町村은 保險料 또는 國民健康保險稅를 세대주로부터 징수하고, 國保組合은 保險料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다(地方稅法 第76條 참조).

(地方稅法)

第76條 보험자는 국민건강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세대주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保險料를 징수한다. 단, 地方稅法의 규정에 의해 國民健康保險稅를 부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國保事業(요양 급여, 요양비 지급, 助産·葬祭에 관한 給與, 육아수당금 기타 임의급여, 보건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부담금 등 국가의 지출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保險料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는 그 재원확충을 위해 保險料를 징수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市町村의 경우는 구역내의 세대주가, 國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이 保險料의 徵收義務를 진다.

단, 보험자가 市町村인 경우에는 保險料를 대신하여 目的稅인 국민건강 保險稅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市町村은 保險料로서 징수할 것인가 國民健康保險稅로 징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두 가지를 併用할 수는 없다.

1989년 현재 國民健康保險稅로 保險料를 징수하고 있는 시정촌은 2,958개로 전체의 약 91%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시정촌이 國民健康保險稅방식을 택하고 있다(表 A-1 참조).

이처럼 완전히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2종류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는 다른 제도에서는 예를 찾기가 어렵다. 保險料와 保險稅의 차이를 설명하면 <表 A-2>와 같다.

<表 A-1> 保險料와 國民健康保險稅를 課하고 있는 保險者數
(單位 : 개, %)

구 분	보험자수
보험료	304 (9.1%)
국민건강보험세	2,958 (90.9%)
계	3,326 (100.0%)

資料 : 厚生省保險局調査課編, 『國民健康保險實態調査報告』, 1989.

<表 A-2> 保險料와 保險稅의 차이

구 분	보 험 료	보 험 세
법률규정	보험자는 法 第76條의 規定에 의해 保險료를 徵수함.	1951년 目的稅로서 創設. 保險徵收 측면에서, 稅로 하는 것이 의무관념도 尙상되어 徵수가 용이하하며, 徵收실적도 尙상될 것이라는 豫상에서 도입됨.
徵수의 근거	國保法 및 地方自治法, 그리고 이에 근거를 둔 條例에 依함.	保險세는 市町村만이 적용되는 데, 그 적용은 市町村의 選擇에 맡김.
徵수수속	地方自治法, 同法 施行令 및 이에 근거를 둔 조례에 依함.	지방세법 및 이것에 근거를 둔 조례에 依함.
최고부과 限度액	1991년도 44만엔이 限度임.	지방세법 제706조부터 730조까지의 規定에 依해, 일반세와 마찬가지로 徵수함.
徵수권 및 환수청구권의 소멸시효	법 第110조 規定에 依거 2년임.	지방세법 第16조(徵수권) 및 第18조의 3에 依거 5년임.
徵수권의 優先순위	國稅 및 地方세의 다음.	원칙으로 國家의 徵수금과 同 순위이며, 他 채권 또는 公과금에 優先함.

가. 國民健康保險稅

1) 國民健康保險稅의 性格

國民健康保險稅는 목적세로서, 채택여부는 시정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또한 國民健康保險稅는 國民健康保險稅 條例가 제정되어 課稅客體, 課稅標準, 稅率 기타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國民健康保險稅는 본래 保險料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지만, 課稅할 때에는 應益원칙을 상당 정도 고려하여, 과세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써 목적세의 性格을 반영시키고 있다. 또 목적세이므로 稅收入은 國民健康保險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收支에 剩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다른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法 제10조에 「市町村은 國民健康保險에 관한 수입 또는 지출에 관하여 政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課稅主體

國民健康保險稅는 보험자인 시정촌이 당해 연도에 필요로 하는 國保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피보험자로부터 稅를 징수하는 것이다(地方稅法 第703條의 4참조).

(地方稅法)

第703條의 4(國民健康保險稅) 國民健康保險을 실시하는 시정촌은, 國民健康保險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國民健康保險의 피보험자인 세대주에 대하여 國民健康保險稅를 부과할 수 있다.

國民健康保險稅의 課稅主體는 國保事業을 실시하는 市町村이다. 國保조합은 課稅權이 없으므로 國民健康保險稅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特別區는 地方稅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 규정이 準用되고, 또 지방자치법 제28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全部事務組合은 地方稅法 제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町村으로 간주되므로 당연히 課稅權이 있다.

國保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市町村에 실시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서 市町村이 단독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의 조합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조합이 설립되면 이 조합에 의해 공동처리되는 事務는 관계 시정촌의 權能에서 제외된다.

3) 納稅義務者

國民健康保險稅의 납세의무자(부과된 세금을 과세권자에게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國保의 피보험자인 세대주이다.

개인의 市町村民稅의 납세의무자는 賦課日 현재 당해 시정촌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며, 固定資産稅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의 소유자이다.

이처럼 市町村民稅나 固定資産稅가 개인과세주의의 원칙에 의한 것과 비교하여, 國民健康保險稅는 世帶課稅主義에 의하고 있다. 이것은 國保가 노인이나 자녀 등 所得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실시하는 점, 자격 취득 신고 등 각종의 신고의무, 급여의 청구의무 등을 세대주에 주고 있는 점 등으로부터, 일반적으로 所得의 귀속자인 세대주가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 세대주가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내에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주를 피보험자인 세대주로 간주하여 國民健康保險稅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國民健康保險稅額의 算定方法

가) 標準課稅總額

國民健康保險稅는, 市町村民稅의 所得割과 같은 準據稅率(地方稅法에서 정하는 과세 표준액의 구분 및 당해 구분별의 금액에 맞추어, 順次

적용되어야 하는 표준세율에 準해서 당해 시정촌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과는 달리, 任意稅率(법률상 세율을 정하지 않고, 시정촌이 임의로 조례에 의해 정하는 것)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地方稅法상 標準賦課總額을 정하고 있다(地方稅法 第703條 4참조).

(地方稅法)

第703條 4(國民健康保險稅) 제2항 國民健康保險稅 중 國民健康保險法 제8조의 2에 규정하는 피보험자(이하 퇴직피보험자)이외의 國民健康保險의 피보험자에 부과되는 國民健康保險稅의 표준과세총액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 ① 당해년도 初日에,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國民健康保險法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및 특정요양비, 요양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 총액의 예상액으로부터 당해 요양급여에 관한 일부부담금의 총액 예상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② 당해년도분의 노인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釀出金の 납부에 필요한 비용에서 국고 부담금 예상액을 공제한 금액

國民健康保險稅의 표준부과총액은, 당해년도 初日에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國民健康保險法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급여 및 특정요양비, 요양비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 총액의 예상액으로부터 당해 요양의 급여에 관한 일부부담금의 총액 예상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년도분의 노인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釀出金の 납부에 필요한 비용에서 국고 부담금 예상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國保사업 본래의 경비이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비 지불예상액의 총액을 과세총액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의 지불예상액은 國保재정의 중심이 되며, 절대 필요경비이므로, 매년도 예산 편성방침에서 추계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추계방법도 하나의 예이므로 쏠 시정촌에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며, 당해 시정촌의 수진율, 노인점유율, 의료기관수, 질병구조 등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로 과거의 실적치를 충분히 감안하여 그 시정촌에 가장 적합한 추계방법에 의해 적정한 예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標準賦課總額의 內譯

표준부과총액은, 응익원칙과 응능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地方稅法 제703조의 4참조).

(地方稅法)

제703조의 4(國民健康保險稅) 제3항 표준과세총액은 다음 표의 上欄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 중의 하나를 택하되, 同表의 上欄에 게제된 금액의 표준과세총액에 대한 표준비율은, 각각 同表의 中欄에 게제된 所得割 총액, 資産割 총액, 피보험자 균등할 총액 및 세대당 평등할 총액의 구분에 따라 각각, 同表의 下欄에 게제된 비율에 의한다.

소득할총액	50/100
자산할총액	10/100
피보험자균등할총액	35/100
세대별 평등할총액	15/100
소득할총액	50/100
피보험자균등할총액	35/100
세대별 평등할총액	15/100
소득할총액	50/100
피보험자균등할총액	50/100

國民健康保險稅는 일반세와 같이 먼저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다음에 납세의무자별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일정률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國保사업이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를 救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응능원칙, 응익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地方稅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세가지 방법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시정촌의 조례에 규정하게 되어 있다. 첫째, 所得割額·資産割額·피보험자 균등할·세대별 平等割額의 합산액에 의한 방법(4방식)은 町村型, 둘째, 所得割額·피보험자 균등할·세

대별 평등할의 합산액에 의한 방법(3방식)은 중소도시형 셋째, 所得割·피보험자 균등할의 합산액에 의한 방법(2방식)은 도시형이라고 할 수 있고, 시정촌의 실정에 따라서 어느 것이든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서 과세총액을 산정하고, 그 방식에 맞는 개개의 과세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표준비율인 100분의 50을 시정촌의 所得구성, 世帶構成比등의 실태에 의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地方稅法에 없는 방식 예를 들어 所得割額 · 資産割額 · 피보험자 균등할의 합산액에 의한 방식이나, 응능할액 또는 응익할액이나 所得割額, 피보험자 균등액을 모두 없애는 방법 등 표준비율을 무의미하게 하는 방법 등은 違法이라 하겠다.

<表 A-3> 保險料(稅) 賦課方式別 保險者數

(單位 : 개, %)

부과방식	보험자수
4방식	3,021(92.6%)
3방식	197(6.0%)
2방식	41(1.3%)
기타	3(0.1%)
계	3,262(100.0%)

資料: 厚生省保險局調査課編, 『國民健康保險實態調査報告』, 1989.

다) 納稅義務者에 대한 課稅額

國民健康保險稅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액은, 당해 시정촌 과세총액의 산정방식의 구분에 따라, 세대주 또는 그 세대에 속하는 피보험자에 대해 산정한 所得割額·資産割額·피보험자 均等割額·세대주 平等割額의 합산액이다.

國民健康保險稅는, 世帶單位로 납세의무자인 세대주에 일괄부과하지만, 과세액의 산정에는 세대주의 所得뿐 아니라 피보험자인 세대원의 所得이나 자산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대주 및 피보험자 개개인의 所得割 · 資

産割・피보험자 균등할을 산정하여 여기에 세대별 평등할을 합산한 합계액이 과세액이 된다.

이 경우, 擬制世帯에 대해서도 所得割額·資産割額·피보험자 균등할이 산정되는 데, 條例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액을 減額부과한다. 또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均等割額 또는 세대별 平等割額이 減額부과된다.

國民健康保險法에서는 다른 목적세와 같이 응능원칙의 적용에 일정한 한도를 둘 필요가 있으므로, 최고한도액의 범위(1991년도는 44만엔이 한도)를 地方稅法에 규정하고 이것에 따라 시정촌의 條例로 그 액수를 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保險料상한을 두고 있다.

라) 所得割額의 算定

國民健康保險稅의 과세액 중 所得割額의 산정은, 1964년 주민세의 과세방식이 本文方式으로 통일되었을 때도 그대로 남아 현재 세 가지 방식이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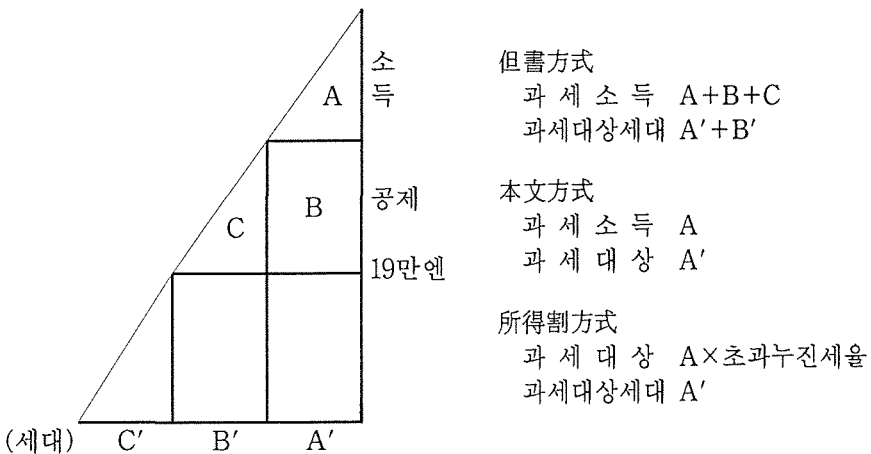
- ① 但書방식…… 1961년부터 1963년까지 市町村民稅의 所得割의 부과방식으로 채용된 「단서방식」(舊地方稅法 제292조 제4항 단서의 과세총所得 금액에 의해 산정됨).
- ② 本文방식…… 1961년부터 1963년까지 市町村民稅의 所得割의 부과방식으로 채용된 「본문방식」(地方稅法 제314조 2 제1항의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으로부터 각종 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의해 산정됨).
- ③ 所得割방식…… 市町村民稅의 所得割額에 의한 방식.

이상 역사적 경과로 세 가지 방식이 시행되고 있으나, (1)의 「단서방식」에 의해 國民健康保險稅의 所得割額을 산정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때에는, (2)의 「본문방식」 또는 (3)의 「所得割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地方稅法 제703조 4 제5항 참조).

(地方稅法)

제703조 4 제5항 前項의 所得割額은, 제3항의 所得割 총액을 제31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총소득금액(총소득 금액 중에 급여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부터 당해 급여소득에 의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2만엔을 넘을 때에는 2만엔)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및 산림소득 금액의 합산액으로부터 제314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된 후의 총 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제13항에서 「기초공제후의 총소득금액」이라고 함)에 按分하여 산정한다.

所得割額의 산정에 「단서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다고 일컬어지는 國保에서는, 「본문방식」 또는 「所得割방식」을 채택하면 所得割額을 과세하는 세대가 극히 적게 되는 반면, 대다수는 응익할 부분만 부담하게 되어 다른 사회보험의 保險料 체계와 균형을 잃게 되는 점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市町村民稅가 「本文방식」으로 통일된 현재에도 國民健康保險稅에서는 「但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所得割의 算定은 세 가지 과세방식을 기준으로 당해 시정촌의 실정에 따라 각각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현재 所得割의 산정방식을 시정촌별로 <表 A-4>에서 보면, 대부분의 시정촌이 所得割額의 산정에 舊但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A-4> 所得割의 算定基礎 方式別 保險者數

		(單位 : 개, %)
구	분	보 험 자 수
舊但書방식		3,152 (96.6)
本文방식		29 (0.9)
시정촌민세의 所得割額		34 (1.0)
시정촌민세액 또는 도도부현세액과 시정촌민세액의 합계액		40 (1.2)
기타		7 (0.2)
계		3,262 (100.0)

資料: 厚生省保險局調査課編, 『國民健康保險實態調査報告』, 1989.

일반적으로 「但書方式」은 町村部에, 「本文方式」은 중소도시에, 「所得割方式」은 대도시에 적용되고 있다. 所得割의 算定은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년도 賦課日이 속하는 연도의 前年度 중의 소득에 대해 算定한 총소득금액이다.

(1) 「但書方式」과 「本文方式」과의 과세소득의 차이

但書方式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본문방식과 다르다.

①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급여특별공제를 실시한다.

地方稅法 제314조 2 제1항에 규정한 총소득금액 중에 급여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급여소득의 수입금액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급여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또 당해 수입금액의 100분의 5(최고 2만엔)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

로 한다.

② 靑色專從者 급여액등의 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國民健康保險稅가 세대주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市町村民稅에서 靑色專從者 급여액 및 事業專從者 공제액은 사업주의 필요경비로서 소득으로부터 공제하지 않고, 따라서 事業專從者의 급여소득에도 算入하지 않는다.

③ 雜損失의 移越控除는 실시하지 않는다.

국민건강 保險稅의 성격에서 市町村民稅로 인정되고 있는 잡손실의 이월공제는 하지 않고, 이 금액을 공제하기 前의 금액에 의한다.

(2) 「但書方式」, 「本文方式」, 「所得割方式」의 차이점

市町村民稅에서 비과세 대상인 장애인, 노인 및 과부로서 일정소득 이하의 대상자(地方稅法 제295조)에 대해서는, 國民健康保險稅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但書方式」 및 「本文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시정촌에 서는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1968년부터 農家가 肉用牛를 가축시장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시정촌민세에서는 매각에 관계된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國民健康保險稅의 산정에 있어서는 총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단서방식」 또는 「본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시정촌에서는 이러한 소득금액을 총소득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마) 資産割額의 算定

國民健康保險稅의 과세액 중, 資産割額は 應能원칙에서의 所得割額의 보완적인 역할로 설계되어 있으며(응익할액 50중 10에 지나지 않음), 특히 농어촌인 시정촌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도시부에 있어서는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資産割額は 채택하지 않는 도시가 많은 실정

이다(地方稅法 제703조의 4 참조).

(地方稅法)

제703조의 4 (國民健康保險稅) 제9항 제4항의 資産割額은 제3항의 資産割 총액을 고정자산세액 또는 고정자산세액 중 토지 및 가옥에 관계되는 부분의 액수로 按分하여 산정한다.

資産割額의 산정에 있어서는 ① 고정자산세액에 의한 산정방법과, ② 고정자산세액 중 토지 및 가옥의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의한 산정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시정촌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규정한다.

資産割의 산정기초별 보험자수를 보면, 총 3,262시정촌 중 약88%에 해당하는 2,856개의 시정촌이 ②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表 A-5> 資産割의 算定基礎別 保險者數

(單位 : 개. %)

구 분	보험자수
고정자산세액	402(12.4)
고정자산세액 중 토지·가옥에 해당하는 금액	2,856(87.6)
기타	4
계	3,262(100.0)

資料: 厚生省保險局調査課編, 『國民健康保險實態調査報告』, 1989

(1) 固定資産稅額에 의한 算定方法

해당 시정촌의 資産割 總額을 피보험자의 고정자산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얻은 率(일반적으로 稅率이라고 함)을, 피보험자 개개인의 고정자산세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2) 固定資産稅額 중, 土地 및 家屋에 해당하는 部分의 稅額에 의한 方法

해당 시정촌의 資産割 總額을 피보험자의 토지 및 가옥에 대한 고정자산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얻어진 율을 피보험자 개개인의 토지 및 가옥에 대한 고정자산세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frac{\text{자산할 총액}}{\text{피보험자의 고정자산세액 (토지 및 가옥에 해당되는 부분의 고정 자산세액)}} = \text{자산할의 안분율 (조례 準則上的 세율)}$$

$$\text{고정자산세액(토지 및 가옥의 고정자산세액)} \times \text{자산할의 按分率 (조례 準則上的 세율)} = \text{자산할액}$$

바) 被保險者 均等割의 算定

國民健康保險稅 중 피보험자 均等割額은 응익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즉 國保의 수익자는 개개 피보험자이므로 피보험자가 많은 세대가 피보험자가 적은 세대보다 受益이 많은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이에 맞는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사) 世帶別 平等割額의 算定

國民健康保險稅 중 세대별 平等割額은 응익원칙인 피보험자 均等割額의 보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1세대당 被保險者數가 많은 (가족구성이 많은) 소도시나 町村部에 채용되고 있다. 세대당 平等割額은 피보험자균등할 만을 채택할 때에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被保險者數가 많은 세대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점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세대구성이 적은 시정촌에 있어서는 세대별 平等割額의 존재이유가 희박하기때문에, 과세방식 중 2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 保險料

1) 市町村

시정촌이 國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保險料를 부과하는 법률상의 근거는 國民健康保險法 제76조(保險料의 징수), 제77조(保險料의 감면 및 징수유예), 제79조(독촉 및 연체금의 징수)등이다.

국민건강 保險稅의 경우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地方稅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保險料의 경우는 해당 시정촌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등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兩者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다른 점이다.

(가) 保險料의 賦課額과 最高 限度額

國民健康保險稅와 달리, 保險料의 부과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또는 「피보험자」별 산정한 所得 割額 등에도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최고 한도액도 44만엔을 초과하는 액수라도 조례에 규정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나) 保險料率

시정촌이 保險料率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도도부현 지사의 협의를 필요로 하며, 구체적인 保險料率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정촌장은 이를 告示해야만 한다.

(다) 保險料의 月賦課額 算定

保險料의 경우에는, 출생, 사망, 전출입 등을 포함하여, 동일 세대에 속하는 被保險者數의 증감에 관해서, 월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參 考 文 獻

- 社會保險實務研究所,『國民健康保險基礎講座』,創巳堂,1977.
- 厚生省保險局,『國保擔當者ハンドブック』,社會保險出版社,1976.
- 厚生省保險局調查課,『國民健康保險實態調查報告』,1989.
- 厚生省保險局,厚生省年金局,社會保險廳,『社會保險六法』,1989.

附錄 B

獨逸의 農業者 疾病保險

1. 概要

獨逸에서는 1911년 라이히 社會保險法이 제정되어, 현 체제와 같이 일반노동자, 직원(연금수급자, 학생실업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한 일반제도와 자영농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자 疾病保險을 실시하게 되었다.

公的疾病保險의 대상자는 被用者,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원 등이며, 1972년부터 농업경영자 및 그 가족종사원, 1975년부터는 장애인 및 학생 등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제도로서의 疾病保險은 일반노동자(블루칼라), 年收 61,200마르크 이하(1992년 1월 1일 기준)의 직원(화이트 칼라), 학생, 특정의 실습생, 실업자, 장애인 복지공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연금수급자, 특정의 여자 직업훈련생 및 자영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자疾病保險은, 자영농민, 함께 일하는 가족, 노령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으로 年收 61,200마르크 이상의 고액 소득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목사 등은 強制 適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1988년 2월 현재 일반제도의 적용자는 피보험자 본인이 3,683만명, 농업자 疾病保險 약 70만명이며, 여기에 피부양자수 약 1,950만명을 포함하면, 公的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전국민(약 5,600만명)의 약 92%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약 8%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보험이외의

방법에 의해 公의기관 또는 사회급여실시기관에 의해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전국민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疾病保險은 다수의 질병금고(Krankenkasse)에 의해 각각 자주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1990년 현재 질병금고는 8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數는 地區疾病金庫 262개, 企業疾病金庫 678개, 同業組合疾病金庫 151개, 海員질병금고 1개, 광업조합원 금고 1개, 노동자 보충금고 8개, 직원보충금고 7개, 농업질병금고 19개 등이다.

2. 强制加入者

疾病保險에 强制가입할 의무가 있는 者는 다음과 같다.

- ① 일정 年收 이하의 僱用者
- ② 연금수급자 및 퇴직한 農林業 경영자
- ③ 특정의 자영업자
- ④ 農林業경영자 및 가족종사자
- ⑤ 실업자
- ⑥ 재활을 받고 있는 자
- ⑦ 장애인복지공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가. 일정 年收 이하의 被傭者

被傭者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취업하는 자로, 職人, 家事사용인, 海員, 보조자 및 견습생을 포함한다. 職人에는 공공기업직원, 사무직원, 점원 등 상업적 활동을 하는 직원, 劇團員, 음악가, 교육·복지·의료에 종사하는 직원등도 포함된다. 단, 직원, 노동자 모두 疾病保險은 通常의 年間소득이 노동자 연금보험에서 年間임금에 대해 적용되는 保險料 산정보수 한도액의 100분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연간소득이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임의적용 대상이 된다. 이 상한액은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되며, 1992년 1월부터 1년간은 年收 61,200마르크였다. 또, 종래 일정소득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임의가입 제도는, 1989년 부터 疾病保險 構造改革法의 시행에 따라, 일정소득 이상의 노동자에게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 疾病保險의 적용률은 85%를 약간 밑돌게 되었다.

나. 年金受給者 및 退職한 農林業 經營者

獨逸은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역세대와 다른 회계로, 각 金庫가 연금 수급자 疾病保險(Krankenversicherung der Rentner, KVdR)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자 연금보험, 직원연금보험, 수공업자 보험, 鑛山종업원 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자, 그리고 농업자 老齡扶助의 노령연금, 早期노령연금, 農地讓渡연금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연금수급자 疾病保險에 가입의무를 가진다. 연금수급자로서 疾病保險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保險料 부담은 일반 피용자 등과는 달리 受給연금에서 원천징수한다.

다. 特定の 自營業者

특정의 自營業者는 家內공업자, 自營의 교사·교육자·음악가, 예능인으로서 그 사업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개업허가를 받고 독립의 조산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산·보육에 종사하는 간호부, 보모 등이다. 단, 이 경우에도 職員의 경우와 같이 연간소득이 노동자 연금보험에서 연간보수에 대해 적용되는 保險料산정 報酬限度額의 100분의 75(1992년 1월 1일부터 61,200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라. 農林業 經營者 및 家族從事者

농림업 경영자란 그 경영이윤에 의해 생활하지만, 副次的 수입이 規定額(1989년의 경우 年 18,000마르크)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농림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또 그 가족종사원이란 3촌 이내의 친척, 2촌 이내의 姻戚, 養子, 배우자, 18세에 달하였지만 수련생으로서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경영자에 대해 이와 같은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농업피용자는 農業疾病金庫가 아니라 一般疾病金庫의 피보험자가 된다.

마. 失業者

실업자는 실업보험금 또는 실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者이며,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자로서 經過수당의 수급자도 적용대상이 된다.

3. 加入義務 免除者

他法에 의해 질병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公的疾病保險에의 강제가입의무를 법률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혹은 신청에 의해 면제받는다.

- 1) 겸업 또는 부업을 하는 자
- 2) 공무원 및 공무원에 準하는 자
- 3) 근로학생
- 4) 대부분의 자영업자
- 5) 특정의 농림업 경영자

농업경영자로서 강제보험과 같은 민간疾病保險에 가입하고 있는 者는, 그 경영자산액이 45,000마르크 또는 1964년 경영자산액이 6만 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강제가입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이 경우 농업자 노령보장에 근거한 노령연금이나 農地讓渡年金을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을 신청하고 있는 자, 또는

65세에 도달하여 강제가입의무가 생긴 者는, 각출금에 대한 補助를 관할 농업질병금고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6) 특정의 연금수급자

4. 任意加入者

3의 가입의무 면제자는 公的 疾病保險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다음의 해당자도 임의가입 할 수 있다.

- 1) 일정소득 이상의 被傭者
- 2) 被保險者의 유족 또는 이혼한 배우자
- 3) 被保險者의 자녀로서 가족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5 . 費用負擔

가. 保險料 負擔

疾病保險의 財源은 대부분 保險料에 의해 충당된다. 질병금고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며, 지출상황에 따라 법정최고율의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保險料率을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保險料는 일반제도에서는 강제가입, 임의가입 모두 勞使 절반부담이며, 保險料率은 질병금고에 따라 다른데, 1991년 保險料率은 평균 12.2%이다. 月收 일정액 이하의 피용자의 保險料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한다. 연금수급자의 保險料는 연금에서 납부되는 데, 연금보험기관에서 반액을 보조한다. 1975년부터 강제가입자로 된 일반학생의 保險料는 연방 교육진흥법에 의해 장학금액의 5%(1988년 월액 25마르크. 단, 10마르크의 국고보조가 있음) 정액이며, 실업자의 保險料는 노동사무소가 전액부담한다.

한편, 農業者 疾病保險의 保險料는 保險料 등급에 따라 가입자가 단독

으로 부담하는데, 같은 지역의 地區 질병금고의 평균 最高保險料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노령자도 노령수당 등의 수입에서 保險料를 부담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國庫負擔으로 충당한다.

연금수급자는 종래는 원칙적으로 비용의 80%를 연금보험의 보험자가 부담하고, 남은 20%를 질병금고가 부담하였다. 이 경우 연금보험자 부담금의 算出은, 1969년부터 1977년까지는 당해년도에 예상되는 연금급여 총액에 10.98%를 곱하였는데, 1977년부터 이 비율은 11.0%가 되었다. 당초는 이 재원으로 연금수급자의 질병금고 비용의 80%를 충당하고, 나머지 20%를 일반 질병금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에 의해 1987년에는 필요한 비용의 42%밖에 충당하지 못하였으며, 남은 58%는 현역세대 일반피보험자의 連帶據出金(연대保險料率 3.4%)을 財源으로 하고 있다.

연금수급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에서 保險料 보조로서 연금액의 11.8%를 보조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 본인의 실질적 保險料 부담은 3% 정도가 되고 있다. 단, 연금수급자 중 연금수급 전에 근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疾病保險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임의가입자가 되어, 保險料를 전액부담한다.

나. 國庫負擔

독일에서의 疾病保險의 재원은 一般疾病保險의 경우, 대부분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保險料와 연금수급자 및 失業者分の 移越 保險料이다.

원칙적으로 국고부담은 없으며, 각 질병금고에서 법정급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액을 保險料로 징수하고, 독자적으로 財源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에 대해 國庫負擔을 하고 있다. 學生疾病保險의 保險料는, 연방교육진흥법에 의한 장학금의 5%(1988년 월 25마르크) 定額인데, 이 중 10마르크는 국고보조가 실시되어 학생 1인당 실제 月 保險料

料은 15마르크이다.

또, 出産手當金에 대해서는 모성보건법의 내용을 疾病保險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질병금고가 출산수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방정부로부터 1건당 400마르크의 보조가 행하여진다. 이 밖에 鑛山종업자 疾病保險이나 장애인 疾病保險에서도, 財源의 일부에 대해 국고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農業者疾病保險제도에 있어서는 노령은퇴자는 保險料부담이 없지만 노령은퇴자가 연금수급자 疾病保險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전액 국고부담으로 충당된다. 그 금액은 1972년 1억 7,600만 마르크였는데 매년 증가하여 1975년에는 6억 마르크에 달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足立 正樹, 『各國の社會保障』, 法律文化社, 1993.

厚生省保險局企劃課, 『歐美諸國の醫療保障』, 社會保險法規研究會, 1992.

海外社會保障動向研究會, 『海外社會保障動向』, ぎょうせい, 1989.

健康保險組合聯合會, 『社會保障年鑑』, 1992.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 賦課體系 改善方案 研究

1994年 12月 日 印刷

값 5,000원

1994年 12月 日 發行

著 者 金 基 玉 外

發行人 延 河 清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355-8003~7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相志文化社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著者 略歷〉

金 基 玉

漢陽大學校 法政大學 法學科 卒業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保健學 碩士

日本 東京大學校 保健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魯 仁 喆

延世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美國 New York University 經濟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社會研究部長

現 內務部 地方自治團體 分爭調整委員會(中央委員會) 委員

柳 美 女

光云大學校 理科學 電子計算學科 卒業

光云大學校 電算大學院 理學 碩士 (電子計算學 專攻)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研究員
